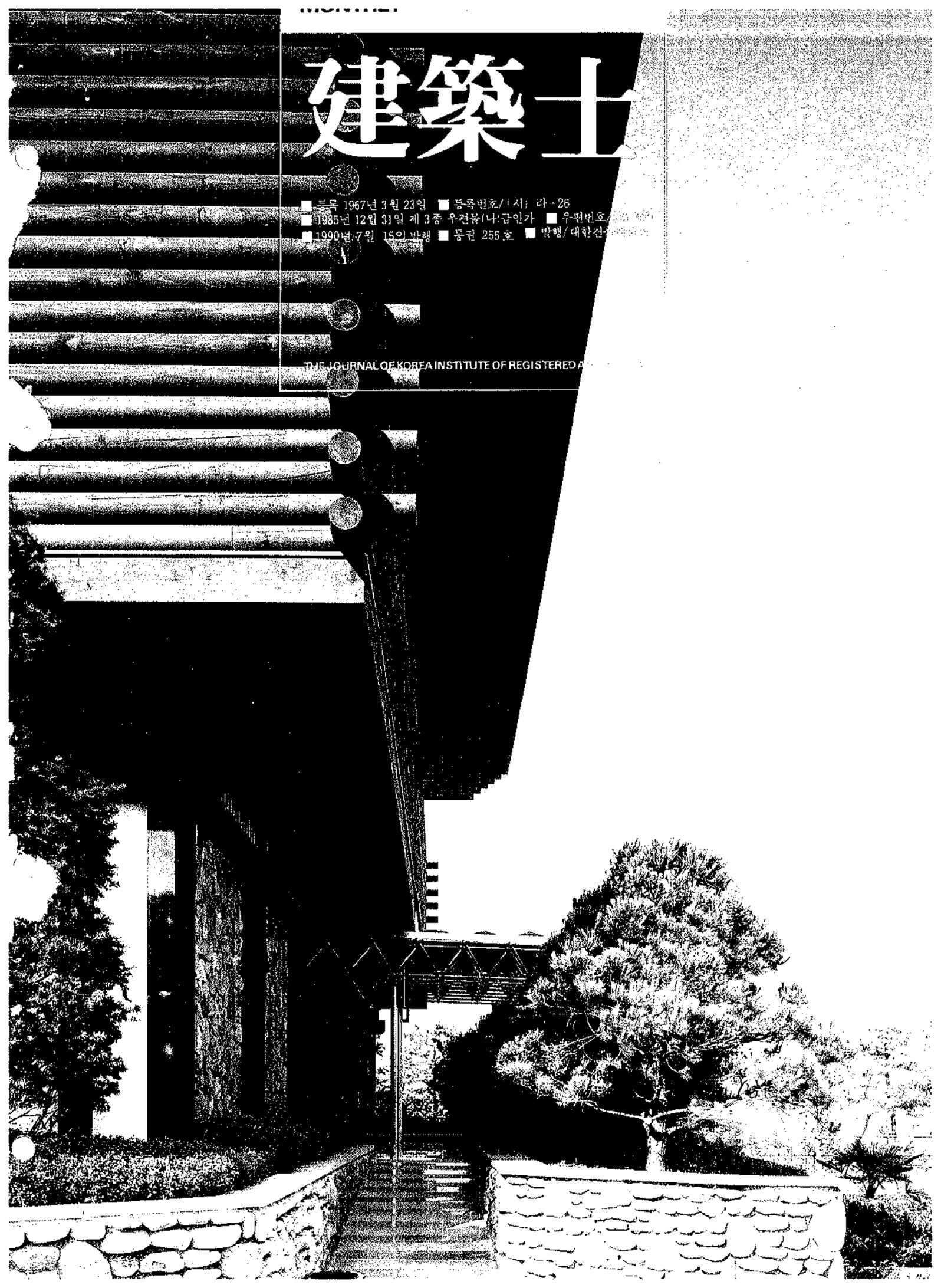


#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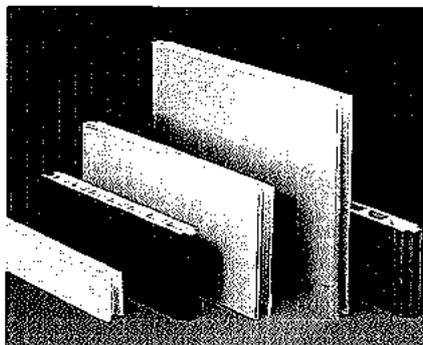
■ 등록 1967년 3월 23일 ■ 등록번호/1차: 라-26  
■ 1985년 12월 31일 제 3종 우편물(나)급인가 ■ 우편번호/300 000  
■ 1990년 7월 15일 발행 ■ 동권 255호 ■ 발행/대한건축사협회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판 시멘트를 수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치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체입니다.

- 경량성** / M<sup>2</sup>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내구성** /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천막·아·캐다·도루번의 차음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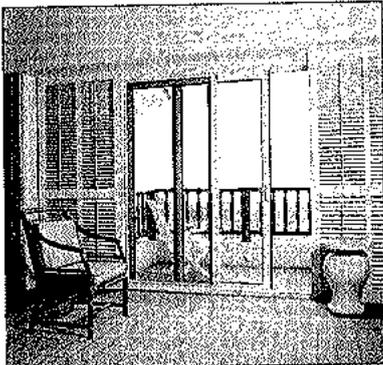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 명품창문 이견창호와 세계수준의 제주신라호텔이 만났습니다

제주도 중문에 본격 리조트호텔로 문을 연 제주신라  
세계적 수준의 제주신라호텔 330개 객실 창문으로  
이견창호 Royal Lift Sliding Series가 선택된 이유—

세계 10대 호텔로서 신라호텔의 명예가  
제주신라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호텔측이 창문 하나의 선택에 보여준  
세심함은 컸다.  
평상시 강한 바람은 물론,  
여름에 특히 태풍이 많은 제주해안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과연 어떤 창문이 적합할까?  
'밀폐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창문'—  
이견창호 특유의 장점이 호텔측이 요구하는  
기능에 그대로 일치되어 뛰어난 기능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주는 창문으로서  
멋진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실례 : 심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뛰어난 기능으로 건물의 품격을 더해주는 이견창호

**디자인·소재에서**/기존 창호와 전혀 다른 개념의 소재 결합과 칼라의 조합으로  
건물의 다양한 요구에 알맞게 주문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방음·단열에서**/임팩터로 정밀 설계되고 밀폐성높은 가스켓을 사용하여기 때문에  
방음 단열 효과가 특히 뛰어납니다.  
**환기·개폐에서**/특수 기어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부드러우며 환기만을 위한  
특수 개폐가 가능, 환기가 편리하게 이루어지므로 쾌적한 실내가 유지됩니다.  
**안전·수명에서**/특수 유리와 고강도 소재 사용, 특수 배수 시스템에 의해  
수밀성과 내부식성, 내풍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태풍, 폭우등의 악천후에서도  
변형되지 않으며 독특한 잠금장치로 인해 도난, 침입의 우려가 없습니다.  
**시공에서**/공장 완제품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현장 작업이 간단하며 건축공법에 의한  
깨끗한 마감 처리로 정기적인 보수 필요없이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견 시스템 원도우

■ 상설전시장 안내 위치 :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 : 540-2071~3 FAX : 540-2080  
\* 일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이견창호**

●이견산업주식회사 ●이견자원개발주식회사 ●EAGON FOREST PRODUCT INC.

■ 인슈그라스울파넬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함은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성을 극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인자불이음의 진동음 완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 성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 1급불연 단열파넬 탄생!



# GLASS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소재가 1급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하였으므로 기존단열파넬의 가장 큰 문제점인 화재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인슈그라스울파넬 방화실험장면)



주식회사 **연합인슈**



본사및공장 :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TEL : (02)745-0687, 이천 : (0336)32-4635~6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 (02)555-6891, FAX : 553-1651  
부산사무소 : (051)462-9554 · 대구사무소 : (053)53-4543  
광주사무소 : (062)524 9779 · 창원사무소 : (0551)85-5944



# 신문지 한장에 자동차 한대씩— 삼성타워파킹

국내최초로 초고속형, 텐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타워파킹 개발!

10년전 국내에 입체주차장을 처음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삼성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대도시의 주차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공간이용의 극대화 실현
2. 다양한 기종
3. 컴퓨터로 제어되는 완전주차
4. 국내최고의 기술과 실적

#### 취급기종

- 수직순환방식 : 초고속형, 텐테이블  
내장형, 이중탑재형
- 엘리베이터방식  
• 다중순환방식
- 2,3단주차설비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 수직순환방식

대형체인에 차를 싣는 상자(Cage)를  
매달아 순환 이동시키면서 입출고  
하는 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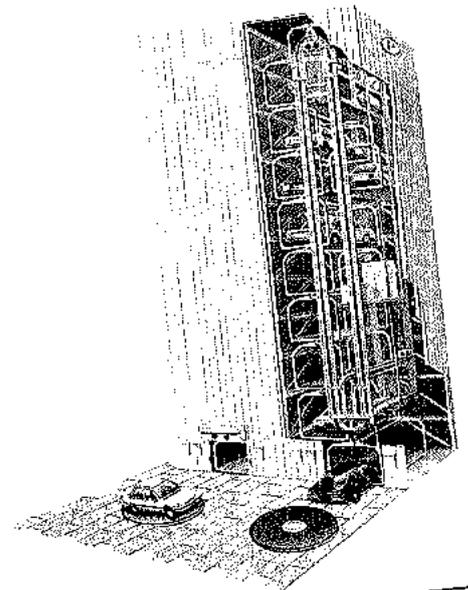
1. 초고속형 : 입,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2. 텐테이블 내장형 : 전, 후, 좌, 우로  
입출고 가능

3. 이중탑재형 : 프레임 하나에 2대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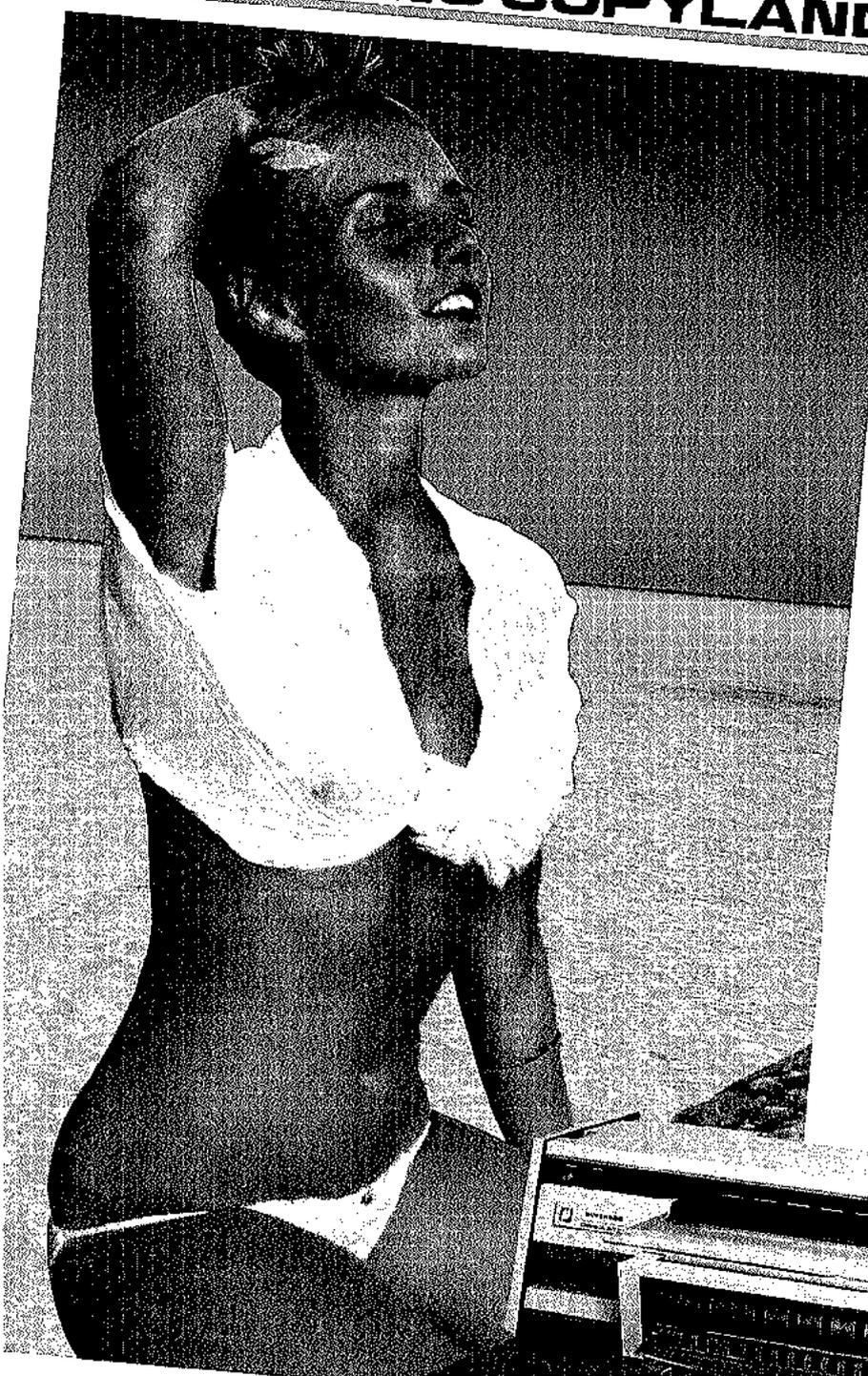
#### ■ 엘리베이터 방식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고속으로 오르내리면서  
좌우의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고하는 방식 (횡식, 종식)



三星立體駐車設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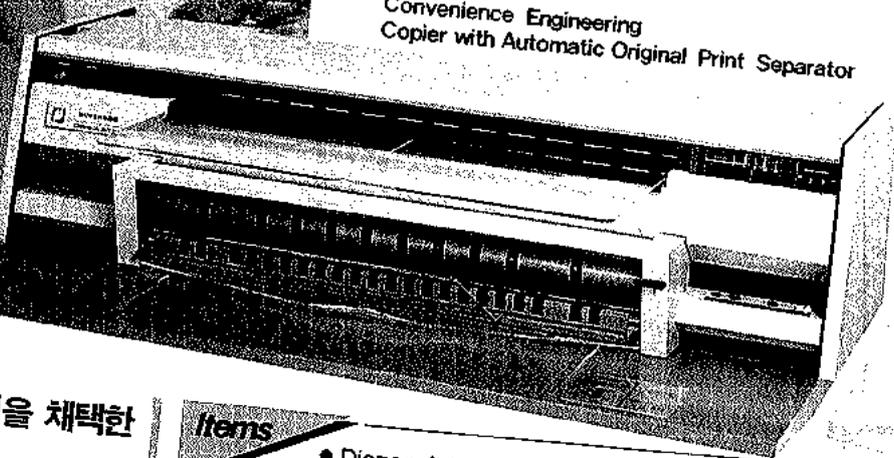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 좋은 설계를 위하여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청사진 복사기 pd 11801  
암모니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Convenience Engineering  
Copier with Automatic Original Print Separ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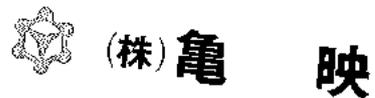


AMMONIA가 필요없는,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AMMONIA의 결정체입니다.

AMMONIA PD 118은 종전의 AMMONIA를 사용하던  
분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독특한 System인 1R, 2B, P  
방식과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건식 청사진복사기  
(복사폭 680mm)

이 청사진 복사기의 최대 난점이었던 AMMONIA를  
지우고 대기시간이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스위치  
로 작동되는 COPINICA PD 118은 어느 업종,  
소에서나 효율적인 작업을 약속합니다.

- Items**
- Dazoprinter
  - Wide-width Plain Paper Copier • Copy Paper
  - PD Copier • Film Sepia • Tracing Paper
  - Sensitive Paper (blue, black line, PD, etc.)
  - ALL REPROGRAPHICS EQUIP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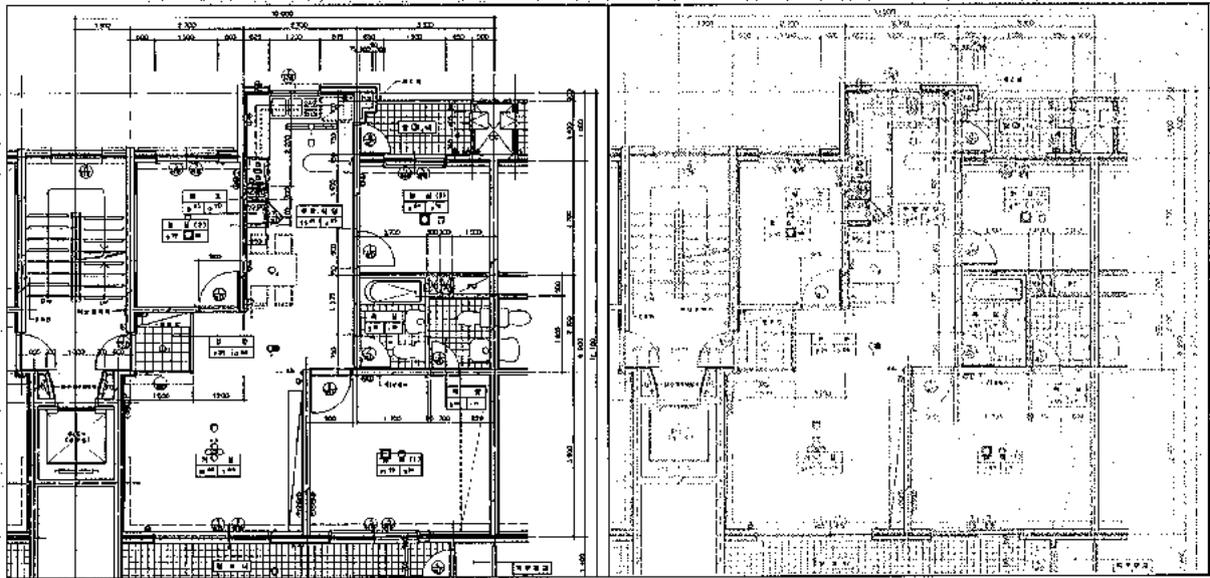


The Pros in Reprographics in Korea.

인천직할시 북구 효성동 608-2 ☎ (032) 92-4167/8 • 서울영업소 ☎ (02) 266-7416~8 • 울산영업소 ☎ (0522) 5-6620, 33-5045  
 ☎ (051) 556-8118~9 • 마산영업소 ☎ (0551) 41-3851, 44-3851 • 대리점: • 강서삼중비즈니스 (02) 694-8194 • 부산현대측기 (051) 245-8566/7  
 ☎ (02) 419-0050 • 수원송화상사 (0331) 36-3798 • 인천삼일사 (032) 862-3961 • 대전신영상사 (042) 626-5230 • 대한지프사 (02) 588-0772~3

(XEROX 2510도면)

(청사진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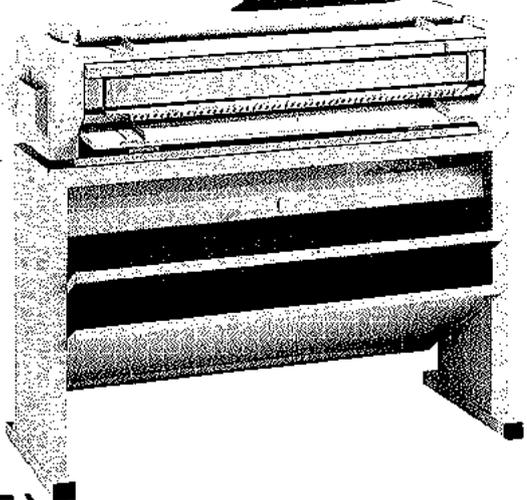
# 아직도 번거롭게 청사진기를 쓰십니까?

도면복사의 혁신, XEROX 2510탄생

## XEROX 2510만의 특징

- 선명한 화질** 도면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선명하게 재현하고, 보통용지는 물론 트레이싱지 필름지등 어떠한 용지에도 선명한 복사가 가능하며, 번외색이 없어 서류보관이 용이합니다.
- A $\phi$ 까지 복사가능** 기존 청사진기에서는 불가능한 A $\phi$ 까지 복사가 가능해 어떤 크기의 도면도 단1번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획기적인 저가실현** 기존의 대형도면복사기와 비교할 수 없는 획기적인 저가를 실현하였습니다.
- 간편한 조작** 별도의 Operator없이 초보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윈터치 버튼식 조작 및 사용시 냄새가 전혀 없고 주변이 청결하여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실현했습니다.
- 컴팩트타입** 사무실 이데에 놓아도 알맞은 컴팩트 타입설계이므로 최소공간에서 최대의 작업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별도로 복사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 완벽한 서비스** 7인의 제록스 맨으로 불리는 코리아 제록스만의 A/S시스템은 신속하고 완벽한 서비스로 항상 최상의 기기상태를 보장해 드립니다.

신제품



**코리아 제록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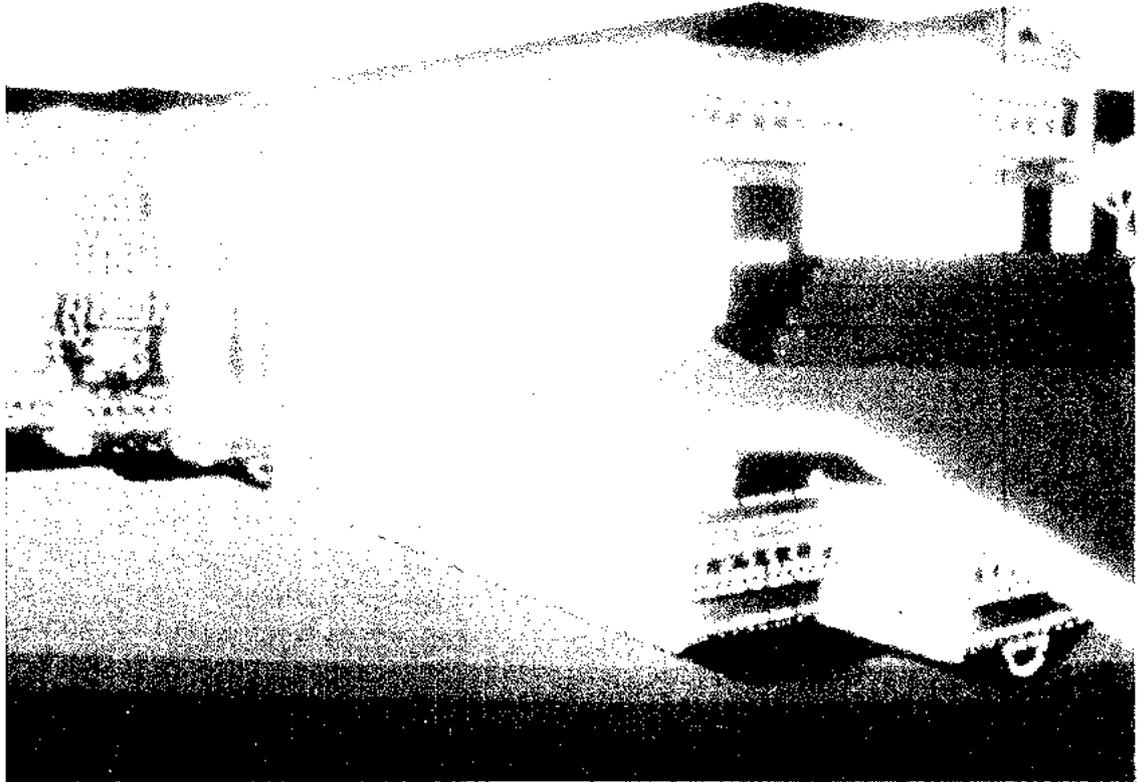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20 TEL 777-5739

전국영업망

- |               |               |               |               |              |               |               |               |               |
|---------------|---------------|---------------|---------------|--------------|---------------|---------------|---------------|---------------|
| ■ 서울지역        | 중양 : 275-8691 | 영동 : 542-5643 | ■ 경기지역        | ■ 강원지역       | ■ 충청지역        | ■ 영남지역        | ■ 호남지역        |               |
| 중부 : 754-7821 | 서부 : 809-4637 | 감남 : 542-5643 | 인천 : 426-9337 | 춘천 : 51-3870 | 대전 : 253-5571 | 부산 : 463-2531 | 울산 : 72-3331  | 광주 : 365-3500 |
| 종로 : 737-6896 | 동부 : 232-1551 | 남부 : 782-1442 | 수원 : 45-1821  | 강릉 : 44-3870 | 청주 : 55-5860  | 마산 : 55-7845  | 대구 : 423-0117 | 전주 : 72-0551  |



# 완벽 지원, 완벽한 CAD 썬알파-플러스



썬파워386과  
ARRIS의 만남.

## 썬알파-플러스 TURNKEY-SYSTEM의 특징

### ● HARDWARE FEATURE

풍부한 기술력을 보장하는 서통의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과  
업선하여 권장하는 각종 주변기기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라도  
초고속으로 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썬시스템이며, 완벽한 A/S를  
통하여 User를 최대한으로 지원합니다.

### ● CAD SYSTEM FEATURE

- 최고의 건축전용 CAD인 ARRIS를 채택, 2D/3D 그래픽 등 모든 CAD작업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썬시스템입니다.
- 범 DRAFT 전용의 2D 썬시스템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3D 및 그래픽을 완벽하게 지원하여 전통 문화의 유물인 건축물 창작에 노력하시는 건축사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 완벽한 CAD의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효율성, 다양한 기술 개발 등에 적합한 썬시스템입니다.

### ● 지원분야

썬알파-플러스는 MS-DOS로 지원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패케지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 범 DRAFT 전용 S/W

Auto CAD, VERSA CAD, MICRO CAD,  
Micro Station

#### D/A (Design Analysis)

구조, 기계, 전기 등의 각종 계산용 S/W + 기획 설계

#### W/P (Word Processor)

각종 시방서, 보고서 등 문서작성용 S/W

## ARRIS의 특징

- 건축 디자이너를 위한 건축 전문 CAD S/W PACKAGE
- 과거 MAIN FRAME급 CAD의 성능을 PC에서 실현
- 건축 SCHEMATIC DESIGN 단계에서 실시 설계까지 일체식 SEQUENCE로 지원
- XENIX O/S사용으로 기존 PC CAD의 DOS한계 극복
- 화면 MENU 방식으로 손쉬운 조작
- ISOMETRIC, 조감도, 내외부, 투시도 등 완벽한 3-D기능과 시간별 광원지원으로 완벽한 음영 CHECK 기능 보유(일조권)
- 건축자료의 DATA BASE화로 인력에 의한 기술 누수 방지
- 2D, 3D도면에 임·단면기호, 방위표시, 가구, 자동차, 나무 등 SYMBOL 지원
- 1,600만 칼라 제공 및 신속한 칼라변화
- 컴퓨터에 의한 대고객 프리젠테이션으로 효과의 극대화 및 신뢰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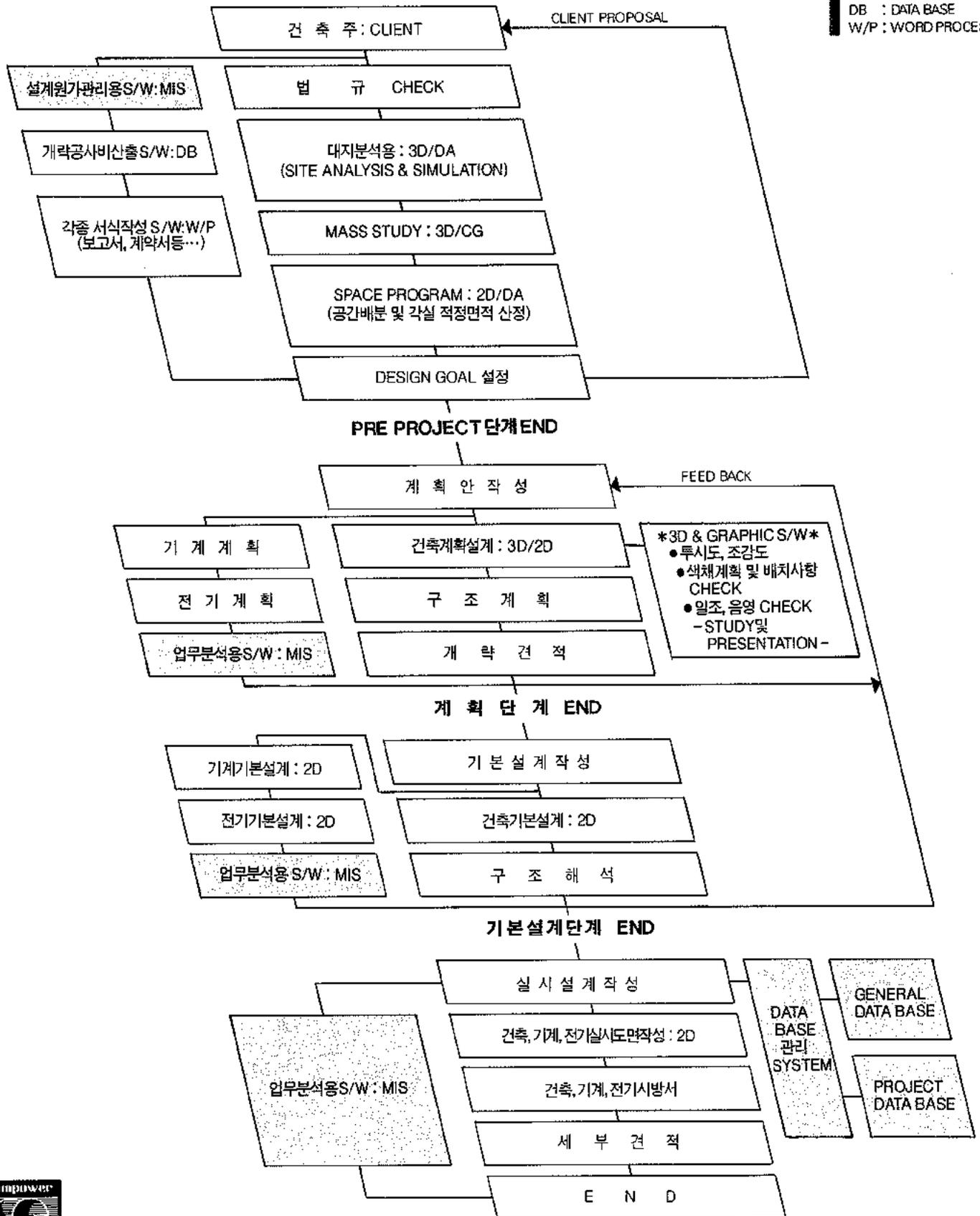


- 국내실정에 알맞는 Detail Library 및 건축자료 표준화를 위한 기법제공 예정
- 초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의 완벽한 교육지원

# 건축설계 전산화 SYSTEM MODEL

이 MODEL은 건축설계 전산화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제시이며, 썬 알파-플러스는 이중 CAD부분을 지원합니다.

- CAD [ 2D :  
3D/CG : ]
- DA, DB :  
W/P :
- 경영정보 :
- 2D : 2차원 (평·입·단면도등)  
3D : 3차원 (투시도등)  
CG : COMPUTER GRAPHIC  
DA : DESIGN ANALYSIS  
DB : DATA BASE  
W/P : WORD PROCESSOR



## 차례/1990년 7월호 통권 제255호

會員作品	안택스사옥/崔東奎+金裕三	12
	해강 고려청자 미술관/柳春秀	14
	명신빌딩/金琪碩	18
	제주 파라다이스서귀포호텔/金 浩	22
	아고빌딩/安化印	26
	광명시민회관/禹時庸	30
나의 스케치	에메랄드 가족호텔 계획안/宋在昇	33
時 論	그린벨트지역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鄭求殷	34
誌上中繼	건축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	36
研 究	亭子建築의 實例와 현대적인 응용요소/張順鏞	42
	일본의 박람회와 건축/金文德	48
	새로운 채광수법으로서의 아트리움(5)/金正泰	58
建築紀行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裴元太	66
	만주의 가작크론/朱命錄	74
설계경기	서울 가양지구 시영아파트 현상설계	79
자 료	建築法 전면개정(안)	86
	1990년 5월분 도서신고현황	94
新入會員		98
協會消息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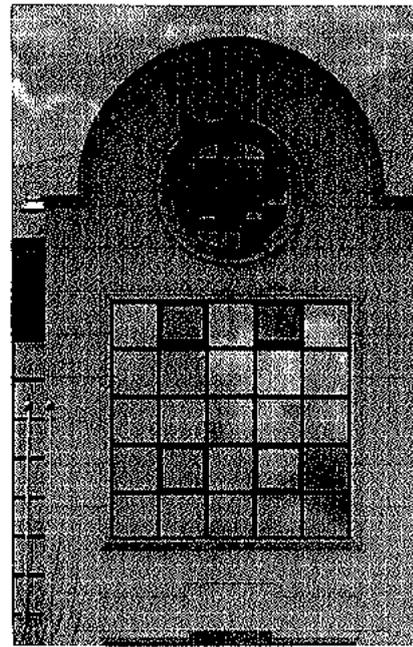
發行人: 宋基德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禹南龍  
 委員: 董政根, 朴舒弘, 吳澤吉, 金基哲,  
 趙聖烈, 崔正一, 鄭正治, 朴研心,  
 崔命喆, 金周喆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렉스: KIRAA 33550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D.C.: 69/72(054-2):0612(519)  
 印刷人: 全允珪/洸文精版社

Publisher: Song, Kee-Duk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Woo, Nam-Yong  
 Member: Dong, Jeong-Keun/ Park, Seo-Hong/ Oh, Teak-ki  
 /Kim, Kee-Chul/ Cho, Sung-Yul/ Choi, Jeong-Il/  
 Jeong, Jung-Chil/ Park, Yeon-Sim/ Choi, Myung-  
 Chul/ Kim, Joo-Cheo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1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172(054-2):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 Moon Printing Co.)

표지: 해강 고려청자 미술관  
 (설계: 柳春秀)

# CONTENTS Vol. 255, JULY 1990

<b>WORKS</b>	<i>Yantex Co. Building/Choi, Dong-Kyu &amp; Kim, You-Sam</i>	12
	<i>Haekang Ancient Korean Pottery Art Museum/Ryu, Choon-Soo</i>	14
	<i>Myung-Shin Building/Kim, Ki-Seok</i>	18
	<i>Cheju Paradise Sogwipo Hotel/Kim, Ho</i>	22
	<i>Argo Building/An, Hwa-In</i>	26
	<i>Kwangmyung City Residency Hall/Woo, Sea-Young</i>	30
<b>MY SKETCH</b>	<i>Emerald Family Hotel Planning/Song, Jae-Seong</i>	33
<b>CONTRIBUTION</b>	<i>Green-Belt Must Regulate/Chung, Koo-Eun</i>	34
<b>SYMPOSIUM</b>	<i>Direction of Architecture Law Amendment</i>	36
<b>REPORT</b>	<i>Example of Harbour Architecture and It's Contemporary Application</i>	
	<i>/Jang, Soon-Yong</i>	42
	<i>Exposition &amp; Architecture in Japanese/Kim, Moon-Duck</i>	48
	<i>Atrium as Emerging Daylighting System(5)/Kim, Jeong-Tai</i>	58
<b>ARCHITECTURE TRAVEL</b>		
	<i>Tours of Mesopotamia Architecture/Bae, Won-Tai</i>	66
	<i>Travels of Kajack Village in China/Joo, Myong-Rok</i>	74
<b>COMPETITION FOR KAYANG DISTRICT MUNICIPAL APT.</b>		79
<b>MATERIALS</b>		86
<b>NEWLY ADMITTED MEMBER</b>		98
<b>KIRA NEWS</b>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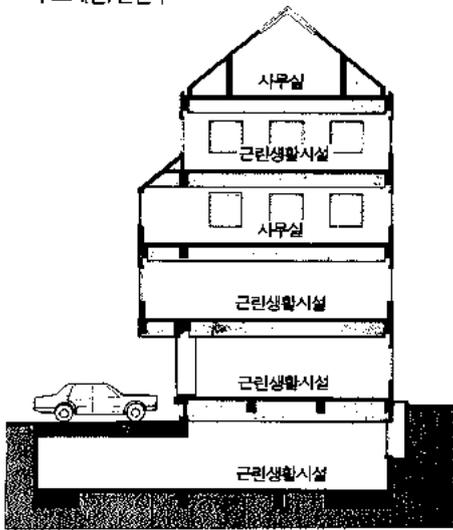
### 전국시도지사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6, 581-5715~8 ·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소 / 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영선3가781, 634-2143 · 강동분소 / 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성동분소 / 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 종로분소 / 종로구청진동201-1, 738-5416 · 마포분소 / 마포구 상산동275-1, 333-5251 ·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50-12, 423-9158 · 중구분소 / 중구로2가49-11, 279-1415 · 용산분소 / 용산구원효로1가29-22, 712-7647 · 서초분소 / 서초구서초1동1623-1, 587-9760 · 은평분소 / 은평구북면동79-32, 352-6720 · 동작분소 / 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소 / 강남구논현동241-6, 511-8515 · 노원분소 / 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 양천분소 / 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중랑분소 / 중랑구북1동171-12, 973-4921 · 성북분소 / 성북구삼선5가410, 923-4401 ·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17가(부산대파트) (051) 246-6284~5 ■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서구범어동3가1-8, (053) 72-5141~2 ■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2가1동558-1, (032) 424-0146, 5100(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 521-0025 (FAX) 521-0026 ■ 대전직할시지부 / 대전시중구대동437-1, (042) 254-2441 ■ 경기도지사부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124-5, (0331) 47-6129~30 · 작할분소 / 경기도수원시서매산로37가-8, (0331) 42-6490, 7072 ·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719-9, (0343) 2-2688, 2-0012 · 부천분소 / 부천시원미동74-6, (032) 63-3144 · 성남분소 / 성남시신원동5512, 10342 12-5445 · 의정부분소 / 의정부시의정부동182, (035) 12-1083 · 송탄분소 / 송탄시신장동21, (0333) 4-6153 · 고양분소 / 고양군원당읍유교리38할터16곳, (0344) 163-8902 ·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409-2, (0346) 63-8112 · 아산분소 / 아산군아산읍종리216-8, (0336) 12-3396 · 광명분소 / 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 안산분소 / 안산시고장동531-5, 82-2820 ■ 강원도지사부 / 강원도춘천시육천동39-5, (0361) 54-2442 · 원주분소 / 원주시인산동206, 10371 42-3257 · 강릉분소 / 강릉시성내동6-14 (0391) 12-2262 · 속초분소 / 속초시동명동466-33, (0392) 13-3081 ·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55-43, 0397 12-3106 ·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동1리960-12, (0372) 143-2659 ■ 충청북도지사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7가116-168, (0431) 56-2752, 53-7342 · 충주분소 / 충주시역전동673-1, (0441) 12-3082 · 제천분소 / 제천시외량동8-8, 10443 12-6253 · 옥천분소 / 옥천군옥천읍삼양동222-206, (0475) 132-9997 ■ 충청남도지사부 / 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흥동473-1, (042) 256-4088 · 천안분소 / 천안시문화동160-1, 4, 10417 12-4551 ·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 132-2853 ·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남리703-1, (0463) 12-2217 · 대천분소 / 대천시대천동197-10, (0452) 134-3367 ■ 전라북도지사부 / 전라북도진주시노송동635-5(대덕빌딩508), (0652) 87-6007 · 이리분소 / 이리시남풍동7가77-22, (0653) 152-3304 · 군산분소 / 군산시중양로1가10-11, (0654) 12-4060 · 남원분소 / 남원시하정동106-2, (0671) 12-6002 ■ 전라남도지사부 / 전라남도서구화정동703-23(추선회관) (062) 364-7567, 33-9944 · 목포분소 / 목포시대안1동1, (0631) 43-3348 · 순천분소 / 순천시정전동51-11, 0661 13-2457 · 여수분소 / 여수시편문동443번지, 0662 164-7023 ■ 경상북도지사부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7(285번지), (053) 425-4904 · 포항분소 / 포항시죽동43-22, (0562) 44-6029 · 경주분소 / 경주시노동동42-2(0561) 13-3638 · 구미분소 / 구미시원평동964-264, (0546) 152-6351 · 안동분소 / 안동시서부동157-4, (0571) 12-5703 · 김천분소 / 김천시평화동280-1, (0547) 12-2541 · 영주분소 / 영주시효천2동295-2, (0572) 12-4566 · 김천분소 / 김천시중앙동280-3, (0581) 12-2706 · 상주분소 / 상주시남성동36-23, (0582) 12-4306 ■ 경상남도지사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가3-47, (0551) 46-4530~1 ·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 174-8836 · 진주분소 / 진주시본성동7-20, (0591) 12-6403 · 창원분소 / 창원시서호동163-18, 0557 143-3577, 2-7420 · 김해분소 / 김해시부림동24B-10L, (0594) 12-6114 · 밀양분소 / 밀양시삼문동184-108, (0527) 153-2110 ·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 12-7090 ·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다방리522-4, (0523) 84-3050 · 거제분소 / 거제군신원읍고원리139-2, (0558) 1635-3432 · 삼천포분소 / 삼천포시동읍동91-6(0593) 133-3591 ■ 제주지사부 / 제주도제주시2도1289-6, (064) 22-3248, 52-3248 ·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동299-6, 1064 132-7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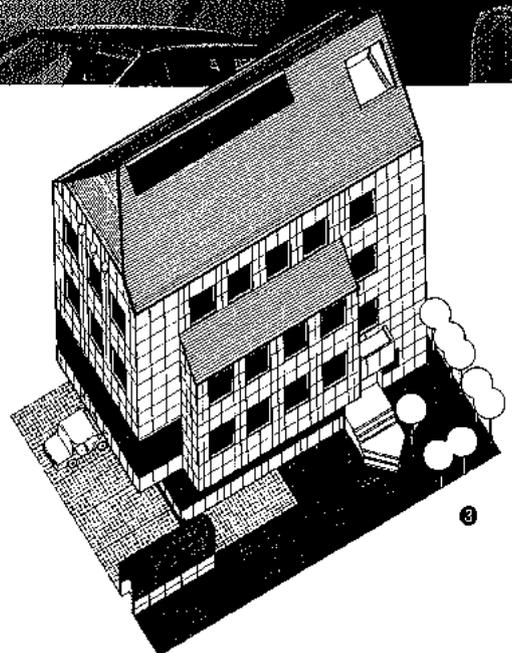
# 얀텍스 사옥

## Yantex Co.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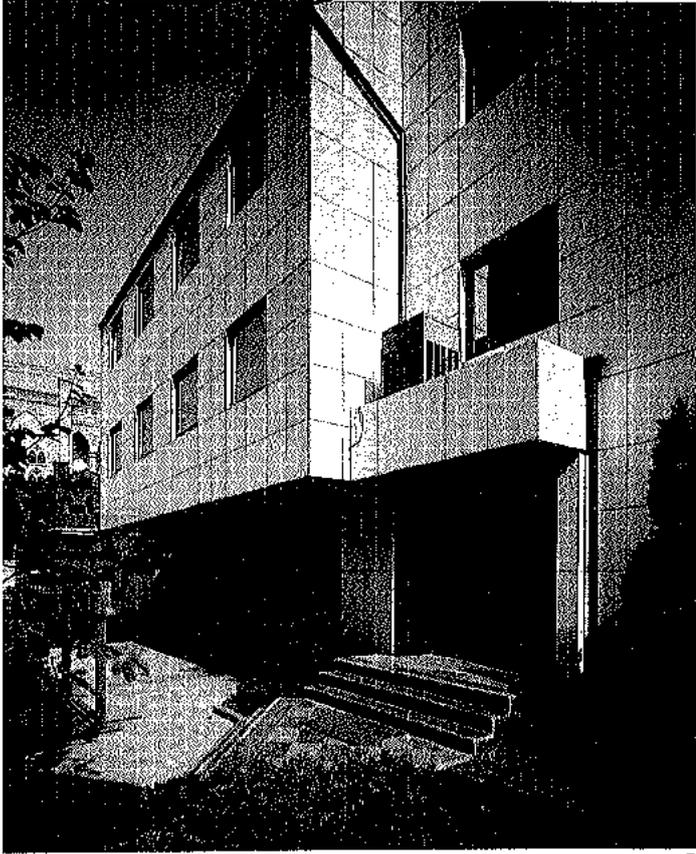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7-4  
 대지면적/421.8㎡  
 건축면적/209.31㎡  
 용적률/210.08%  
 건폐율/49.62%  
 연면적/1,200.13㎡  
 지역·지구/주거지역·주차장정비지구  
 최고높이/18.5m  
 지상충연면적/886.14㎡  
 조경면적/44.18㎡  
 주차대수/8대  
 구조계산/인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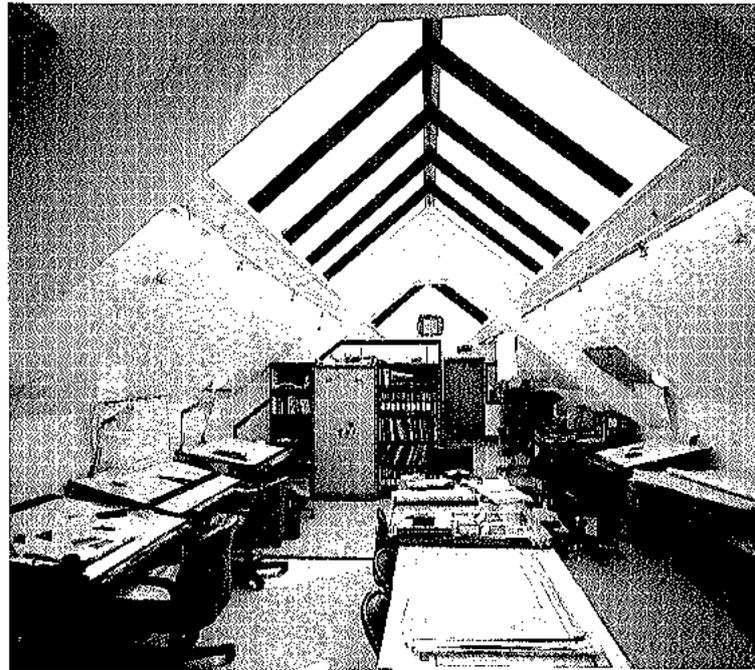
- ① 전경
- ② 단면도
- ③ 역소노메트릭
- ④ 전면 주출입구축상세
- ⑤ 5층 사무실 내부
- ⑥ 2~4층 평면도
- ⑦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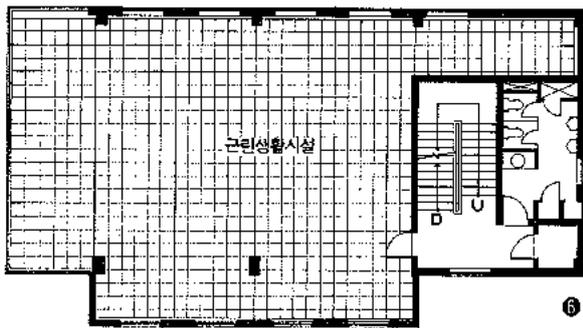
崔東奎+金裕三/종합건축사사무소 서인  
 Designed by Choi, Dong-Kyu & Kim, You-S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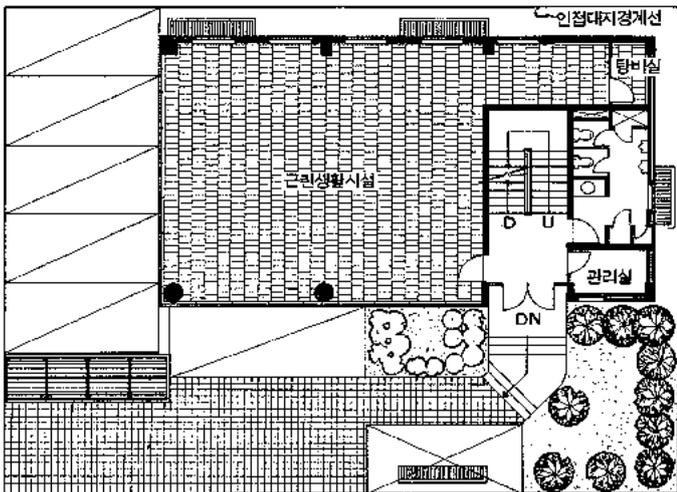
4



5



6



7

■ 설계소묘

대지 120평, 강남 대로의 뒷길에 면한 부지이다. 대부분 강남지역의 모든 대지가 큰 길가에 건물이 들어서서 너무 당연하지만 후면의 소로에 면한 대지들도 모조리 상업 건물화 되어가는 것이 강남의 추세이다. 게다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땅값으로 인해 강남 대부분의 대지가 파해쳐지고,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본 건물에 이웃한 건물 두 채가 본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다 지어졌다. 한국건축, 보편적인 건물의 특징을 든다면 그 무서운 Speed가 아닐까? (소위 총알택시라는 것이 있다. 총알택시 운전자들 대부분이 죽어버렸고, 한사람이 살았다. 다리를 다쳐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살았다.) 나는 그 Speed를 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Speed속에 잠재워지고, 무시 되어가는 건축미학이 조금 아쉽게 생각될 뿐이다.

건축주는 무역회사(섬유) 경영자로서 미적인 안목에 이미 눈여겨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건물이 조금은 미학적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한 찾게 해주는 것, 나는 나쁘게 생각지 않는다. 내가 짓게되면 나도 당연히 그러할 것이므로 ...

앞의 연립주택과의 피나는 싸움. (진정)소위 동네에 들어오는 입장세를 단단히 물고서도, 그쪽에 변한 창문에는 모조리 안대를 대야하는 수난을 겪고 말았는데 어차피 떨어졌었다면, 가리개를 Design의 대상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알미늄 업자의 작품이 Parade 한다. 즉, 건축가의 상상과 주의가 미치지 않는 곳에,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건축가가 사회의 제반 현상에 얼마나 민감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다.

붉은색의 소화전 BOX, 불뚱없는 비상구 등표시, 천편일률적인 강화도아의 손잡이, 아무렇게나 써붙인 표지판 등등 건축가는 Jack of All Trades가 되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작은것이 전체를 망친다. 컵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라. 그것이 전체를 변화 시키는 것을 ...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나는 떠난다.

# 해강 고려청자 미술관

## Haekang Ancient Korean Pottery Art Museum



대지위치/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수광리 330-1

대지면적/2,801㎡

건축면적/758.45㎡

연면적/17,23.53㎡

건폐율/27.08%

용적률/41.96%

규모/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삼목 통나무 및 호박돌 반질쌓기

###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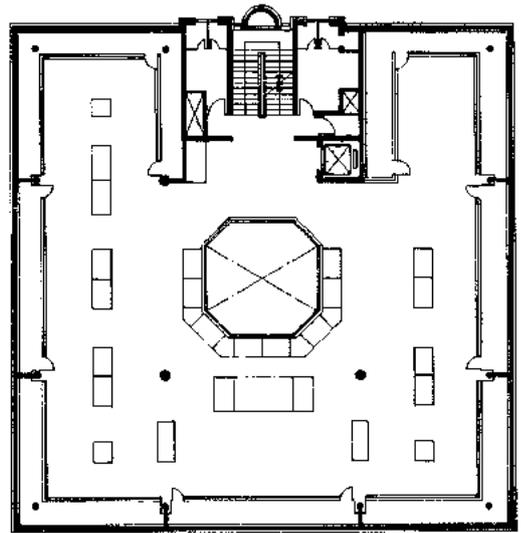
간결한 정방형의 건물형태에서 2층의 전시실과 지붕을 캔틸레버로 처리하였다. 2층 전시실의 상부둘레를 경사진 천창으로 채광함으로써 얻어지는 처마의 깊이는 처마선의 물당치리 및 2층 외벽의 미송목재 사용과 함께 건물의 외관에 수평선을 강조하며, 지붕 등 건물상부의 비례 및 형태가 강조된 전통적 건축어휘를 새로운 시각에서 표현하려 한 것이다. 본래 2층 외벽을 건축주가 직접 빚어낸 반질 옹기판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등과 등의 문제점으로 미송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출입구 도어 핸드레일과 내부 전기 콘센트 등은 청자로 구원 만든 건축주축의 작품이 사용되었으며, 1층 외벽의 반질 호박돌쌓기 및 목재처리, 자연채광이 불필요한 전시실 내부를 한식 창호의 고풍을 활용함으로써 얻어진 외관의 디테일과 함께 미술관의 성격과 조화될 수 있으리라 본다.

정방형 평면의 내부는 지하층의 관리·연구시설과 1, 2층의 전시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전시실 중앙은 1, 2층간을 오픈하여 지붕 상부의 천창을 통한 채광으로 내부공간의 구심적 역할과 함께 상호공간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층의 한식 고풍과 2층 외벽둘레의 천창을 통해 자연광을 간접적으로 도입하려 하였다. 스페이스 프레임을 사용한 지붕은 내부에서 구조를 노출하여 전통성이 강한 내부 전시물과 함께 대비시키는 가운데, 다양한 인공조명의 가능성 및 내부공간의 변화를 꾀하려 시도된 것이나, 대부분 천창으로 마감된 채 중앙 천창하부의 크립클 글래스를 통해 비치는 희미한 음영으로 표현되는데 그치고 말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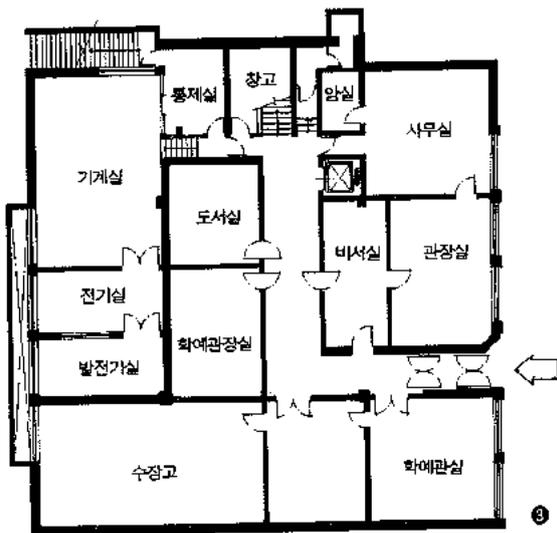
柳春秀/(주)종합건축사사무소 異空  
by Ryu, Choon-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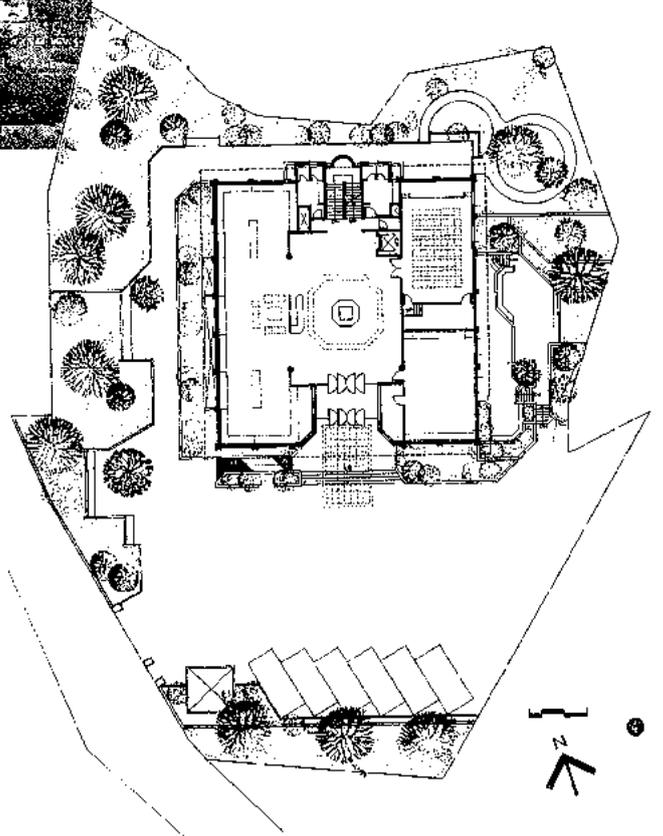
- ① 전경
- ② 측면에서 주출입구쪽으로 본 모습
- ③ 지하층 평면도
- ④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⑤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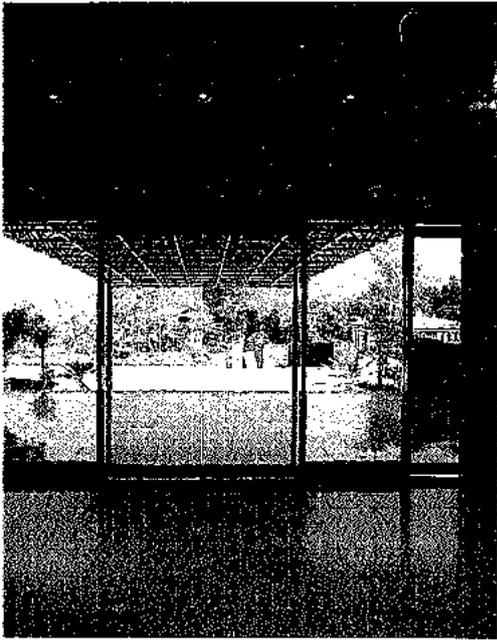
⑤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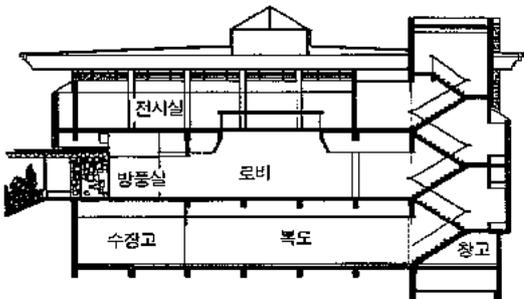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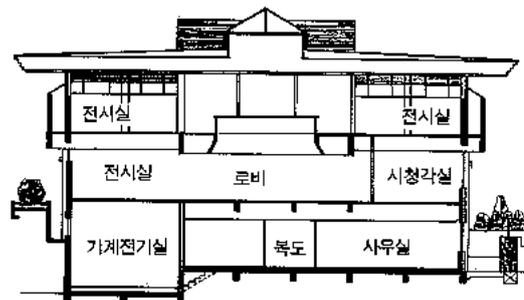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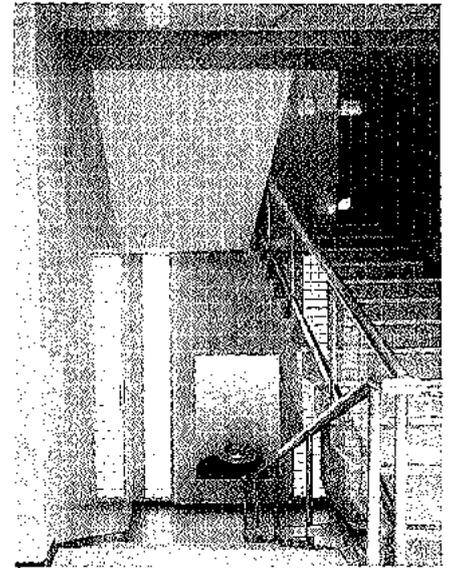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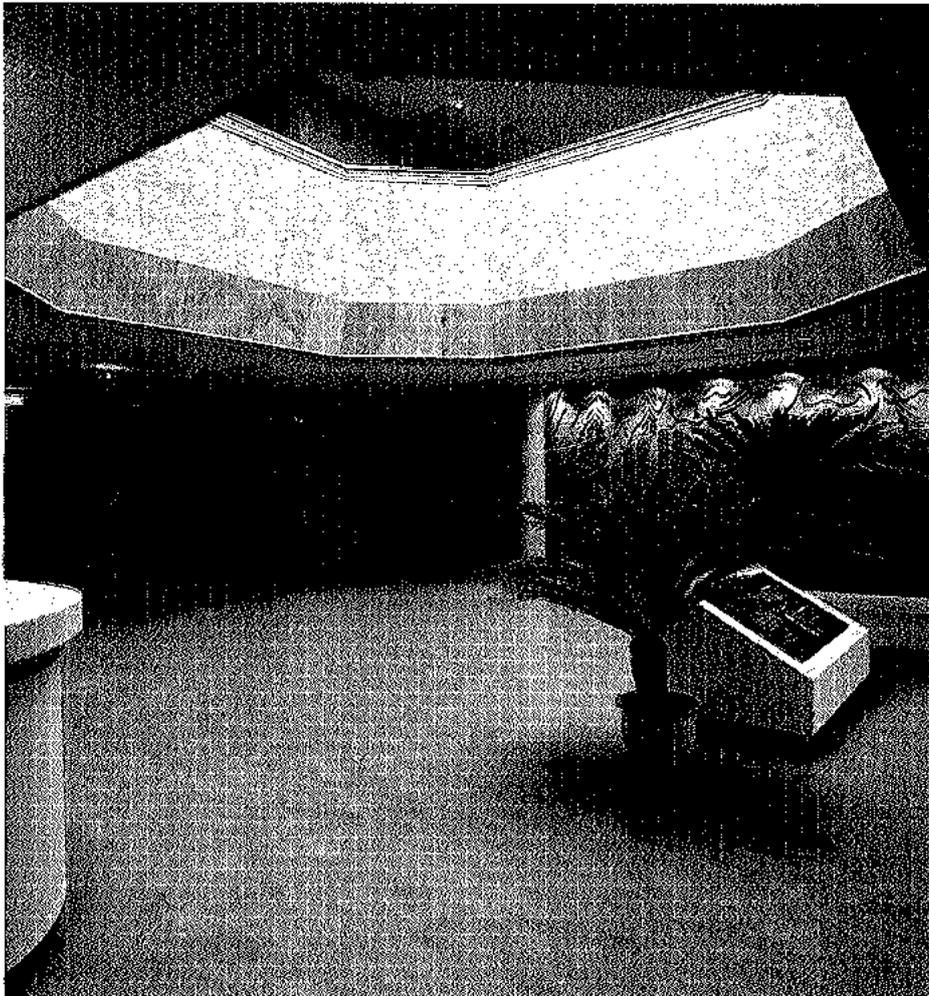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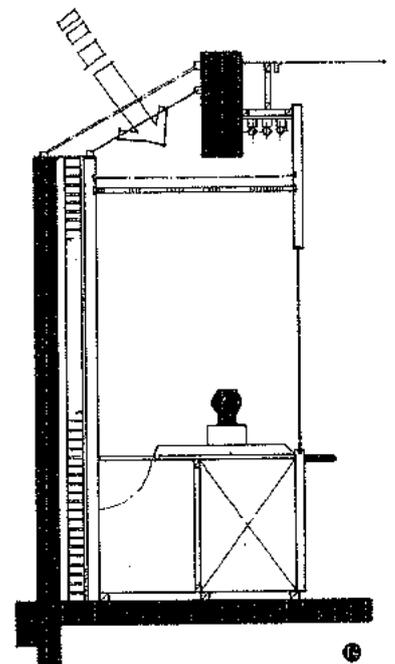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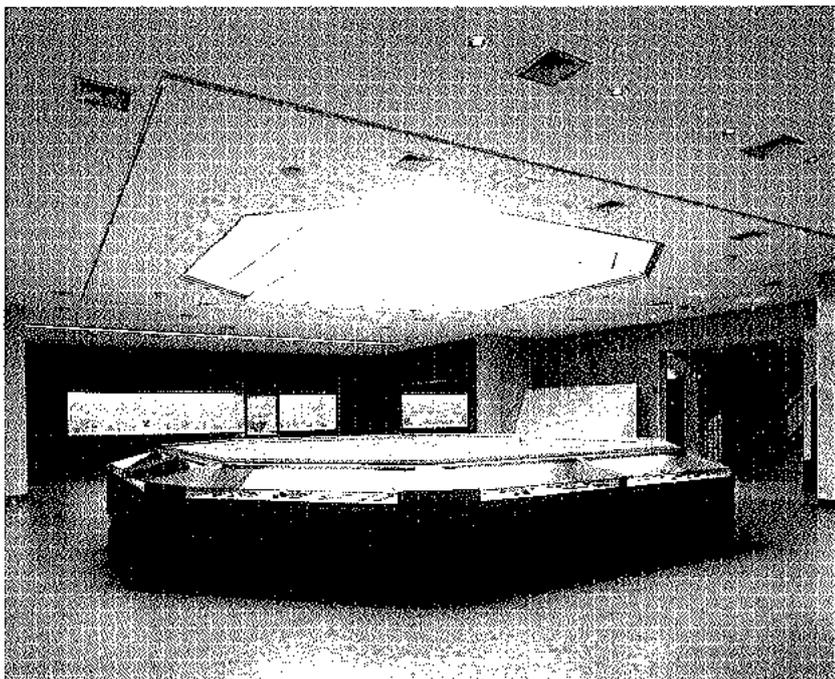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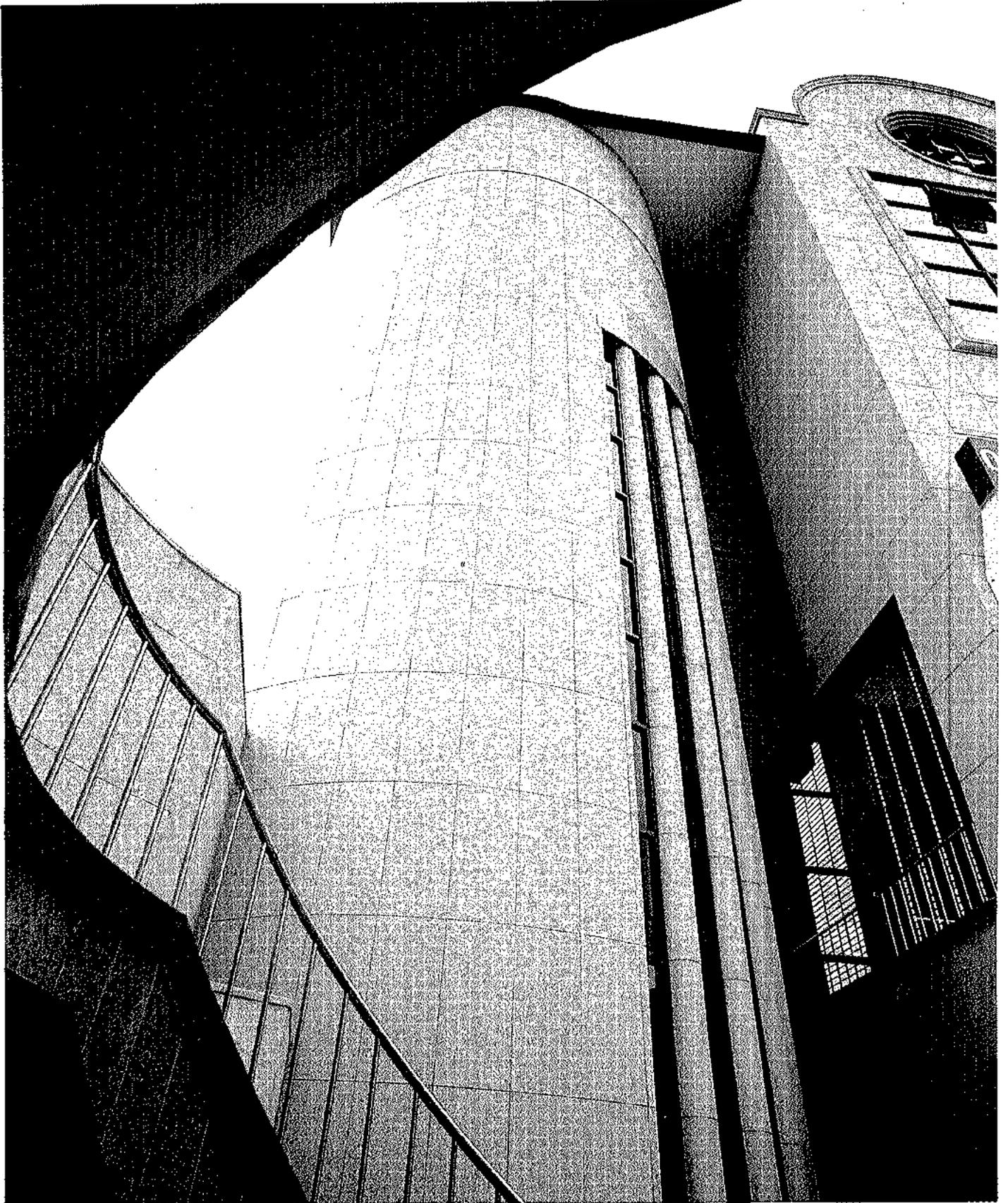


- ⑥ 로비에서 본 어프로치
- ⑦ 외벽상세
- ⑧ 배면전경
- ⑨ 종단면도
- ⑩ 횡단면도
- ⑪ 1층로비 전경
- ⑫ 2층 전시실
- ⑬ 내부 계단홀
- ⑭ 전시장 쇼케이스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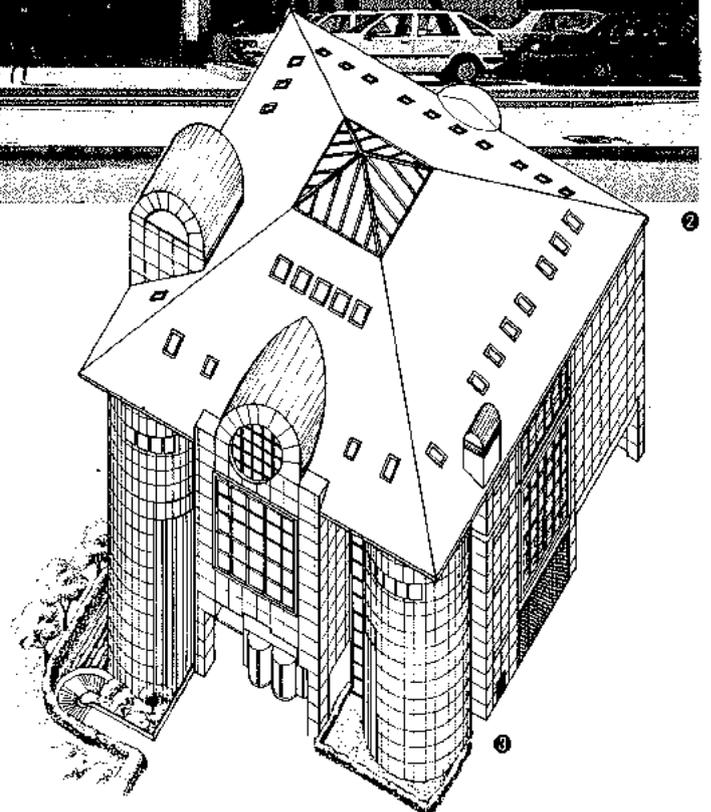
# 명신빌딩

*Myung-Shin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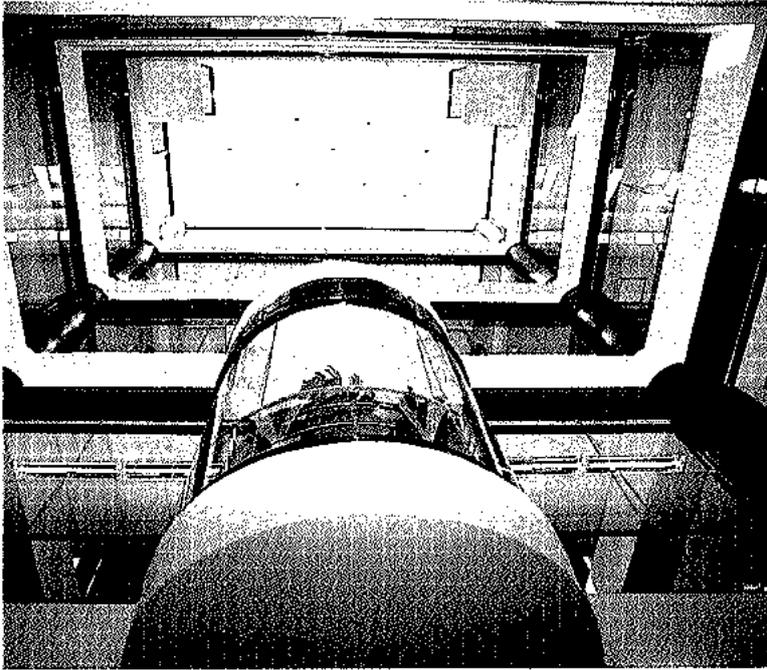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7  
 대지면적/1,475.1㎡  
 건축면적/127㎡  
 건폐율/48.19%  
 용적률/203.28%  
 연면적/5,347.71㎡  
 규모/지하 2층, 지상 4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지하 2층 22대, 지상층 8대



金琪碩/종합건축사사무소 아람광장  
 Designed by Kim, Ki-Seok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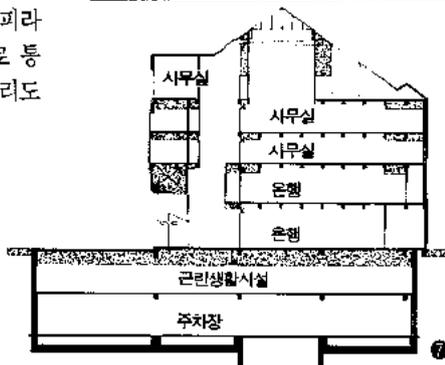
6

### ■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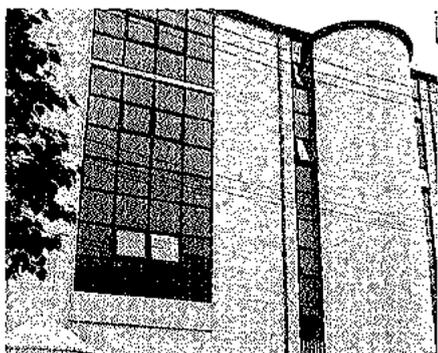
이 건물은 1층이나 2층을 은행지점으로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사사옥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기능의 중간형 업무용 건물이다. 이러한 유형의 건물은 흔히 있는 것이고 썩 그럴 듯하게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어서 건축주가 몇가지 단순한 계획원천을 설정하여 독자적 해법을 마련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런 건물은 은행전용 출입구와 오피스 출입구로 분리되는데, 이것을 단일화하여 중심축을 강화하고 일단 로비라는 포켓(마당)에 통합된 농선이 중심축을 그대로 따라가면 오피스 존(Zone)으로 분리되게 되어있다. 이런 접근성과 긴장감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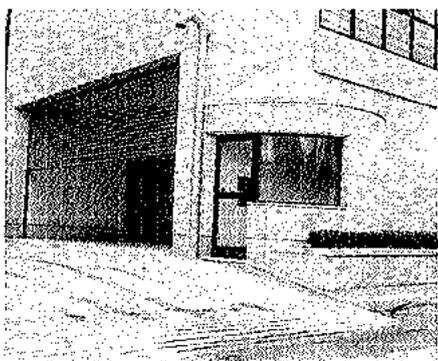
건물의 정면은 자연히 대칭형이 되고 실린더안에 들어 있는 계단이 좌우에서 강한 접근감을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전체의 평면을 가장 안정된 도형인 정방형으로 하고 이를 피라밋형의 상층부에 결합함으로써 저층 건물의 인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도형의 완결성은 강한 에너지를 느끼게 해준다. 자세히 살펴보면 원통과 정육면체·피라밋과 격자상호 등의 기하학적 구성의 맛을 살려 마감은 화강석으로 통일하고 은회색 아스팔트싱글을 사용함으로써 담백한 순수성을 살리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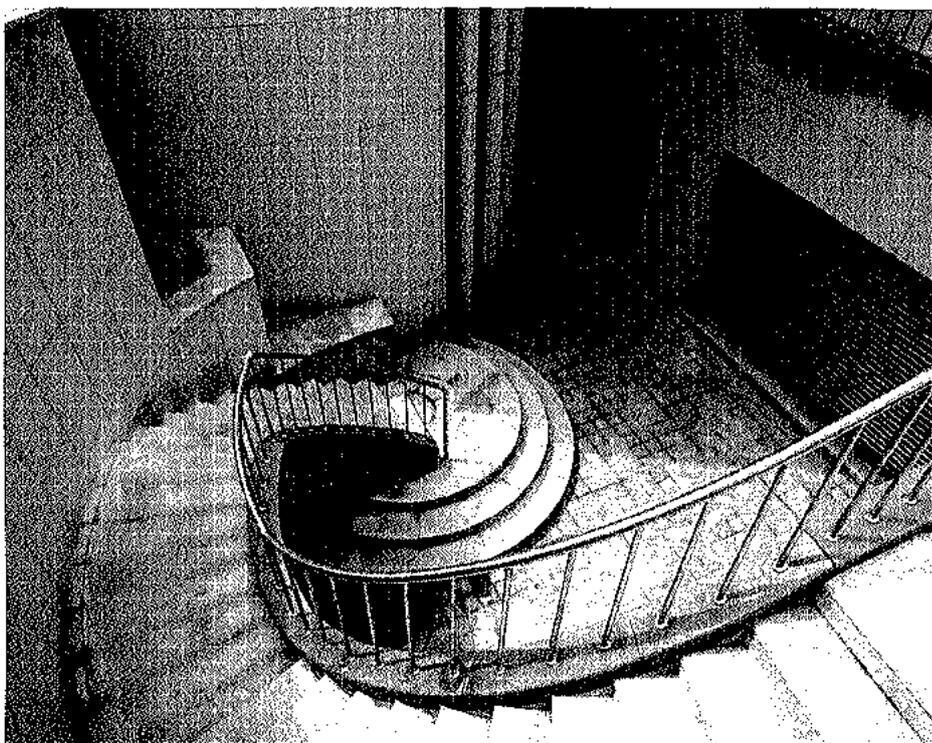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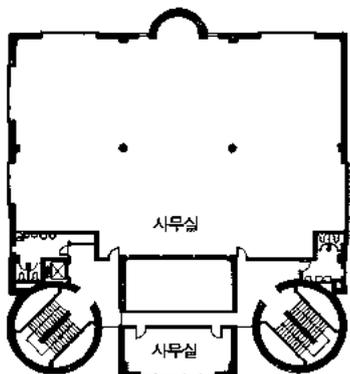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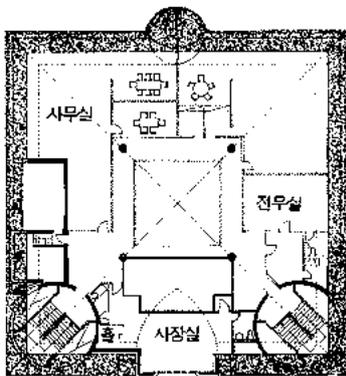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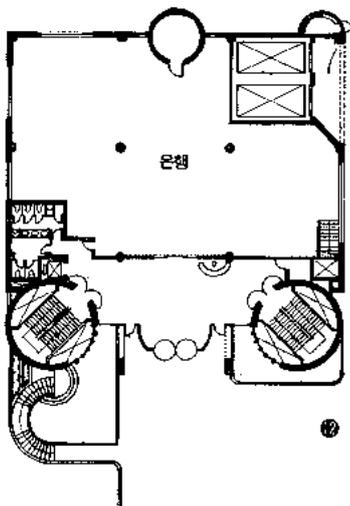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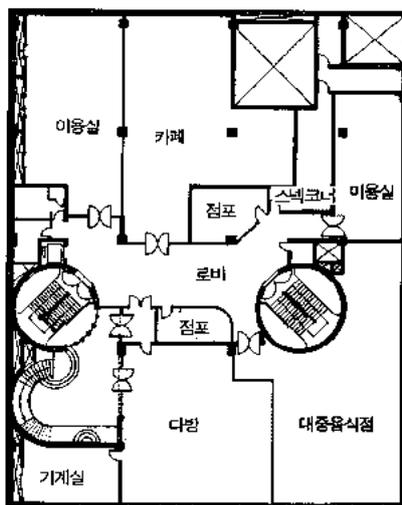
③



④



⑤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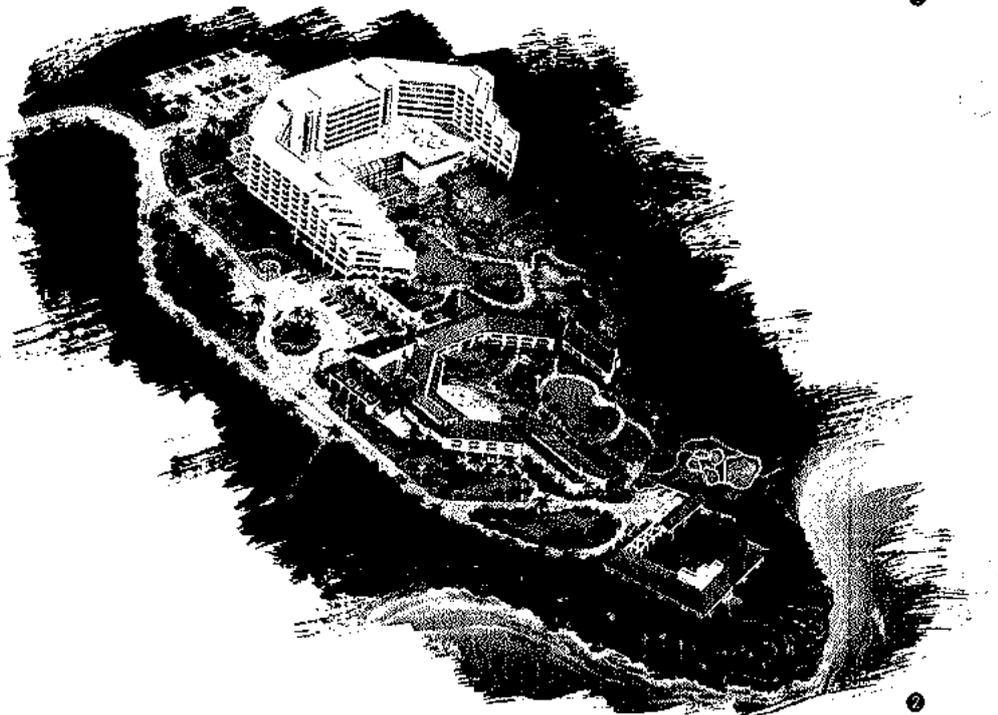
- ① 아트리아에서 본 외벽상세
- ② 전경
- ③ 엑소노메트릭
- ④ 보이드된 로비 상층부
- ⑤ 외벽상세
- ⑥ 내부 계단실 측벽상세
- ⑦ 단면도
- ⑧ 배면 외벽상세
- ⑨ 지하주차장 출입구측 상세
- ⑩ 아트리아 계단
- ⑪ 3, 4층 평면도
- ⑫ 1층 평면도
- ⑬ 5층 평면도
- ⑭ 지하 1층 평면도

# 제주 파라다이스서귀포호텔

## *Cheju Paradise Sogwipo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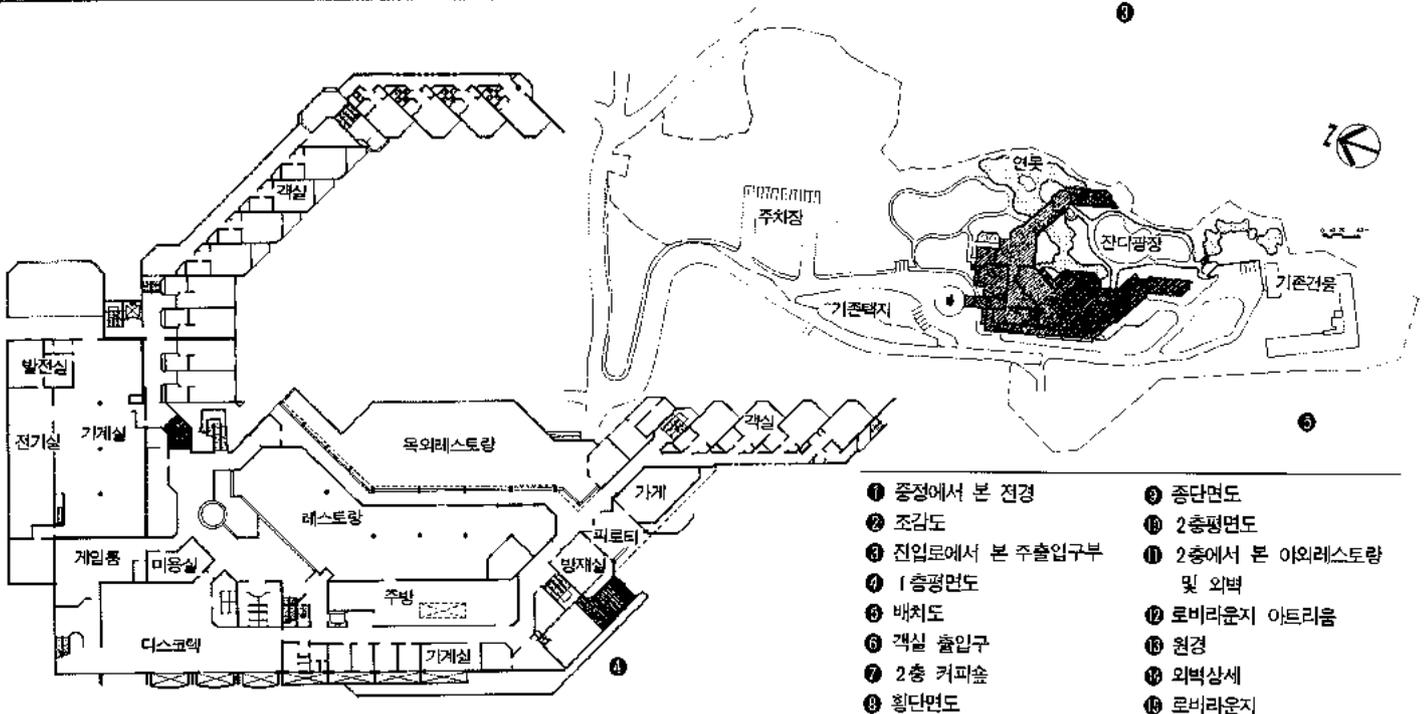
대지위치/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511  
 지역/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40,700㎡  
 건축면적/4,052㎡  
 연면적/10,826㎡  
 건폐율/9.9%  
 용적률/20.8%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객실규모/62실  
 구조/철근콘크리트 리멘조  
 외장/회백바르기 및 상주석 붙이기 토수형 이태리언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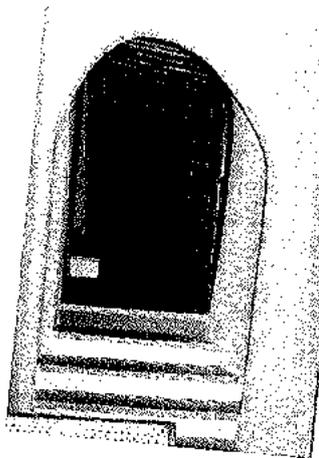
金 浩/(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o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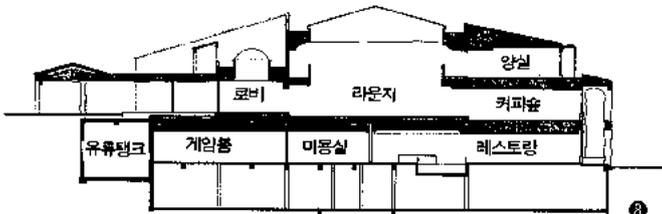


- |                 |                       |
|-----------------|-----------------------|
| 1 중정에서 본 전경     | 9 종단면도                |
| 2 조감도           | 10 2층평면도              |
| 3 진입로에서 본 주출입구부 | 11 2층에서 본 아외레스토랑 및 외벽 |
| 4 1층평면도         | 12 로비라운지 아트리즘         |
| 5 배치도           | 13 원경                 |
| 6 객실 출입구        | 14 외벽상세               |
| 7 2층 커피숍        | 15 로비라운지              |
| 8 횡단면도          |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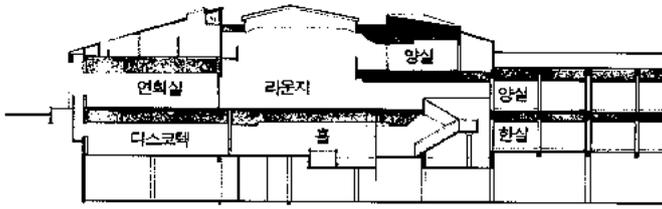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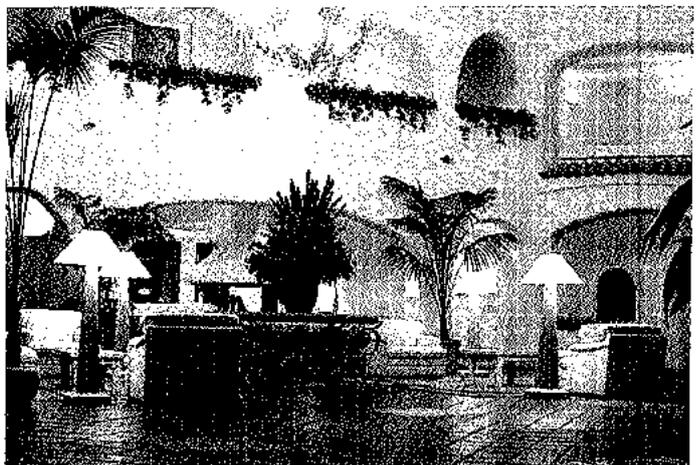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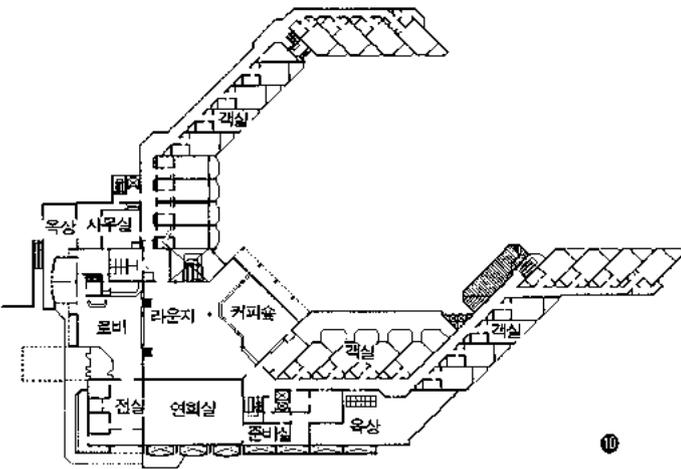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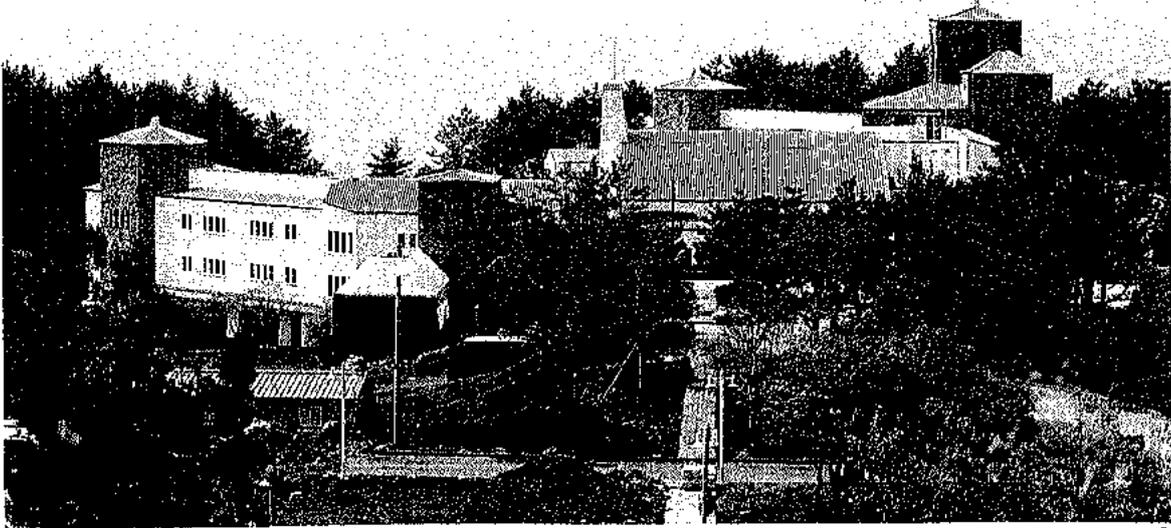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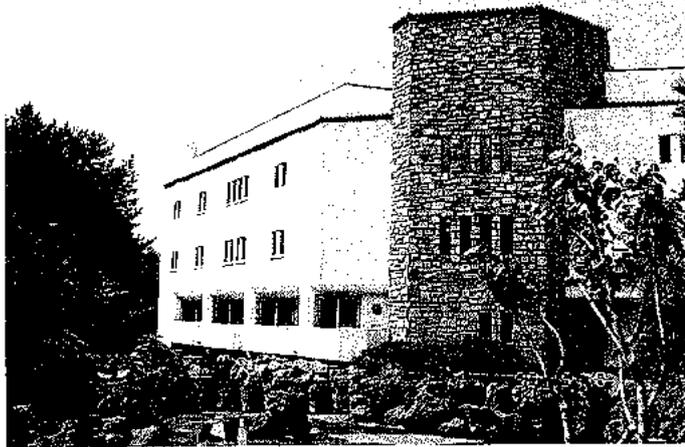
⑥



⑩



18



19



20

###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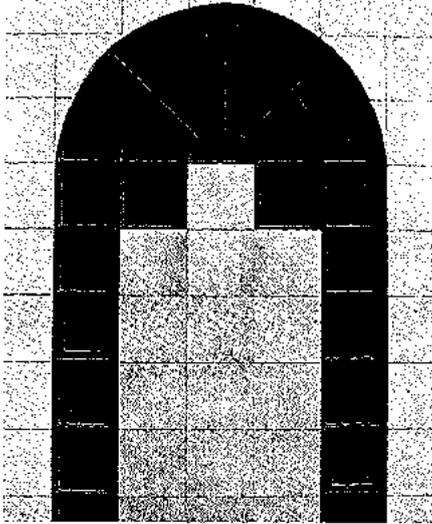
Resort Hotel의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본 대지에 자연경관을 보호 하면서 낭만적이며 아늑한 Resort Hotel의 성격을 강하게 부여하여 별 장식 Hotel공간을 제공하는데 설계의 주안점을 두었다.

배치 및 건물조형계획은 중앙에 Public Zone을 두고 동서쪽에 Wing Type으로 객실을 배치하며 북쪽에 위치한 한라산의 Sky Line을 해변으로 연계시키기 위하여 저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층고 또한 최소화시켰다. Resort Hotel의 성격을 순수하게 표출시키기 위하여 갖고 있는 모든 여건을 그대로 제공하고자 했고, 기존 허니문 하우스와 연결되는 산책로, 강렬한 태양과 기와끝이 연출하는 음영까지도 조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한라산을 끌어들이는 듯한 주현관에 들어서면 프론트데스크와 Lobby Lounge가 전개되고, 커피숍, 연회장이 바로 이어지며 한층을 내려서면 1층으로서 디스코텍과 레스토랑 및 내정으로 유도된다. 3층은 로비라운지 상부를 끼고 객실이 배치되어 있어 내부 분위기의 다양함을 느낄수 있게 한다. 객실은 Resort Hotel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망을 최대한 배려하여 모든 객실과 자연경관을 접하게 하였고, 건축의 마감처리를 거친 회백과 거친 목재, 고전적인 장식 등으로 조화시켜, 마치 낡은 듯한 고가를 연상시키면서도 새로움과 친근감이 공존토록 배려되었다. 외부공간의 내부영입을 시도한 이탈리아 식 옥외 레스토랑, 가든파티를 할 수 있는 잔디광장과 옥외 Pool등은 서정성을 더해주고, 특히 옥외 Pool과 서귀포 앞 바다와의 시각적 연결 시도는 옥외 공간의 착시현상을 유도하였으며 내정과 지붕선을 넘어서 보이는 한라산의 조경은 아름다운 한쪽의 풍경화로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추억으로 기억 될 것이다.

# 아고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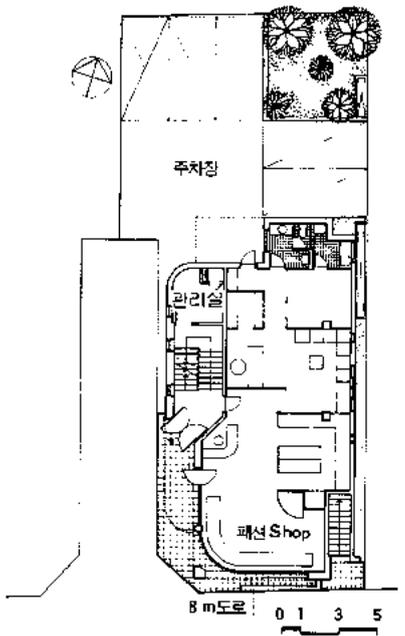
## Argo Building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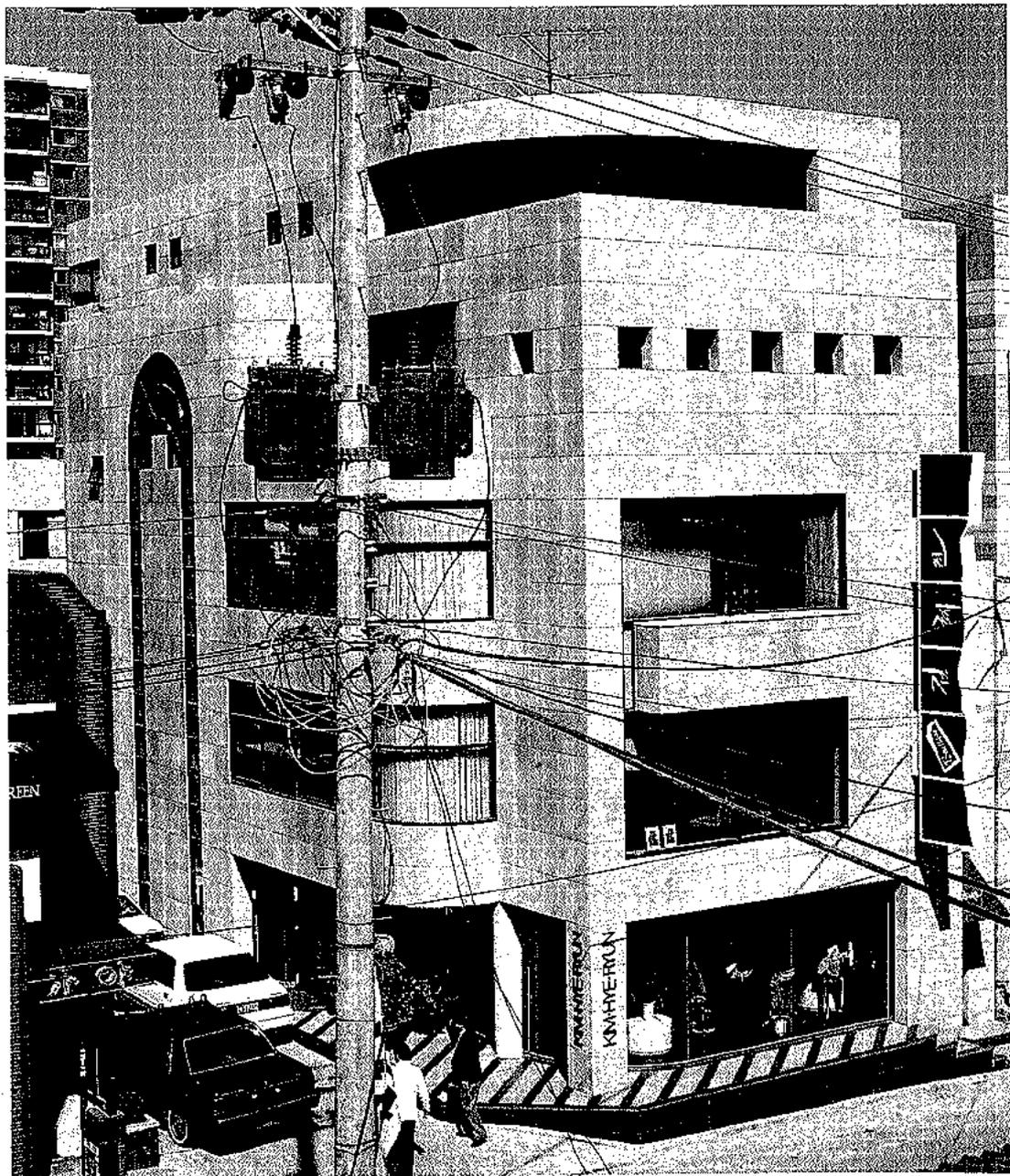
### ■ 설계소묘

아고빌딩은 압구정 대로에서 한 블록 들어간 8m 도로변으로서, 전면쪽에 비해 길이가 세배 정도 긴 좁고 깊은 대지이다. 전면이 좁은 점을 감안하여 주출입구는 전면에서 후퇴하여 측면의 4m 도로와 45° 방향으로 진입한다. 1층 및 지하층은 여성의류점의 매장과 부속시설로 되어 있으며 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2층은 도예품전시장, 3층은 임대사무실, 4~5층은 전면이 Open된 전용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평면의 구성에는 남북으로 긴 주공간의 중간 옆에 계단과 화장실의 부공간이 붙어 있는 형태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소규모 임대건물에서 흔히 요구되는 단순한 기능들—1층 쇼케이스의 넓이, 평면의 융통성, 가용면적의 극대화, 건물관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무리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공간과 부공간의 기능적 구분이 외부형태로 표현된 매스의 분절은 8m밖에 안되는 좁은 도로에서 5층 높이의 매스가 갖는 중압감을 해소하고 변화있는 형태구성의 기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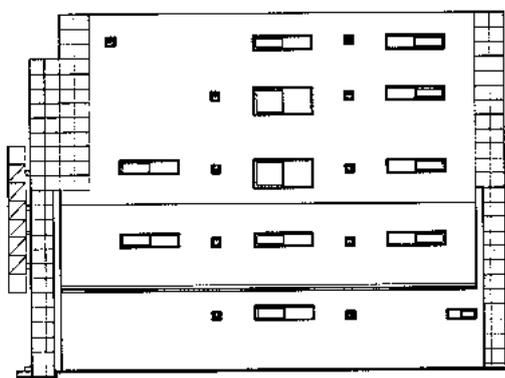
인접건물과의 조화와 골목의 특성을 살리기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주변환경을 지니고 있으나, 이 건물이 앞으로의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골목의 변화를 눈여겨보려 한다.

- 1 코너 외벽상세
- 4 전경
- 2 계단실
- 5 동측입면도
- 3 배치 및 1층평면도
- 6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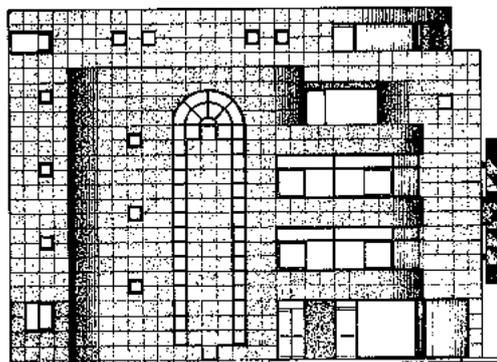


대저위치/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6  
 대지면적/352㎡  
 건축면적/171.78㎡  
 연면적/899.78㎡  
 건폐율/48.8%  
 용적률/193.61%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회강석 버너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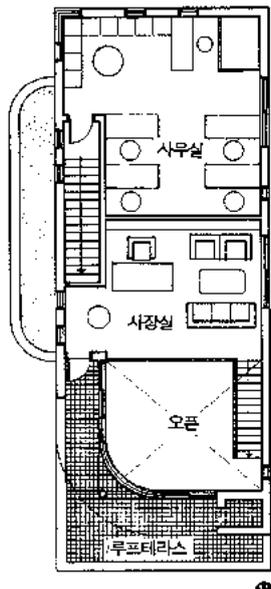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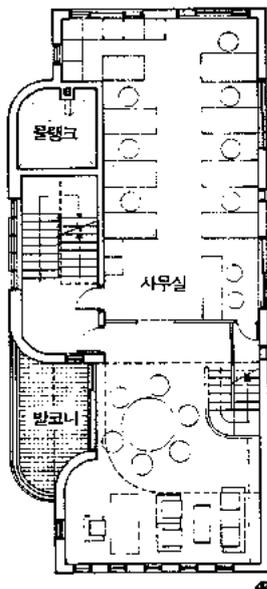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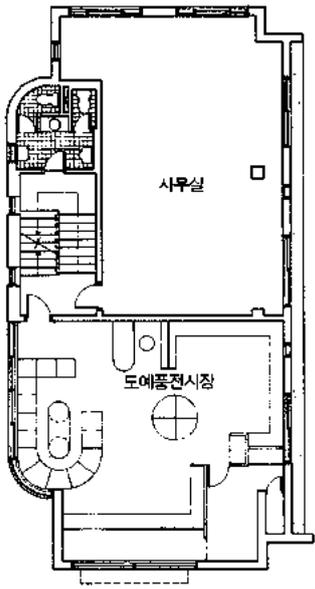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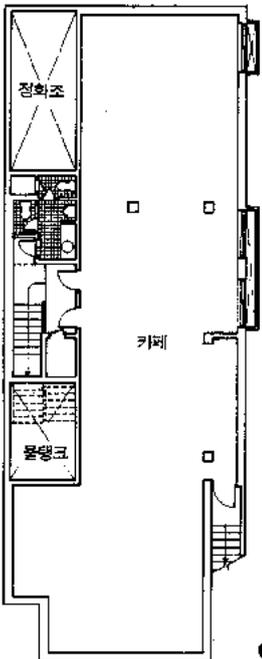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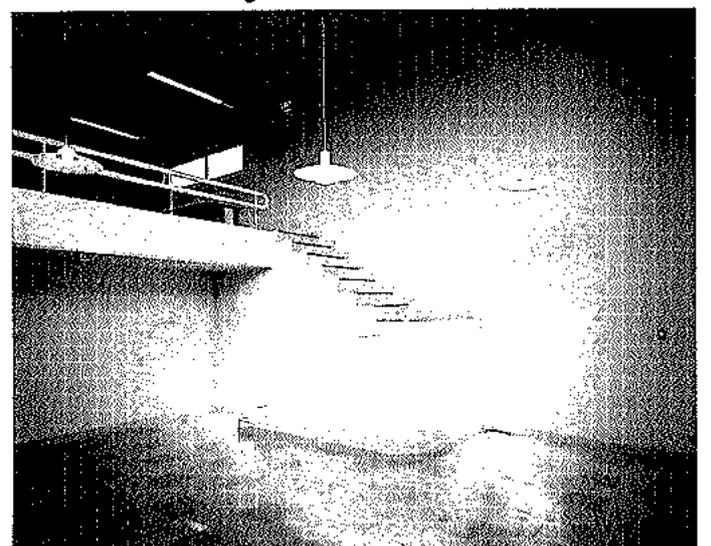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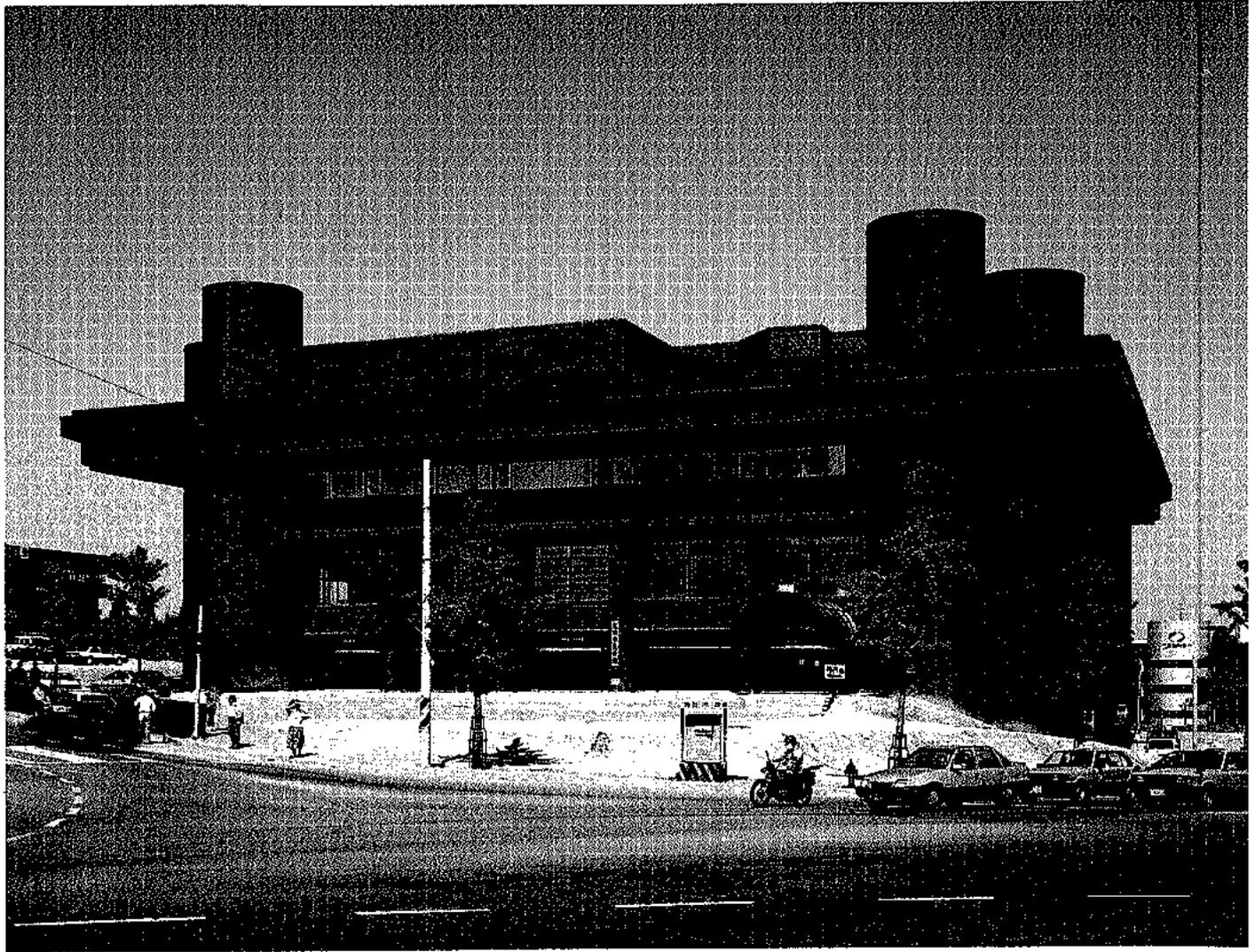


- ⑦ 4층의 오픈된 사무실용 공간
- ⑧ 지하층평면도
- ⑨ 2층 평면도
- ⑩ 4층 평면도
- ⑪ 5층 평면도
- ⑫ 1층매장 외벽상세
- ⑬ 측면외벽상세
- ⑭ 1층 패션쇼
- ⑮ 4층에서의 5층연결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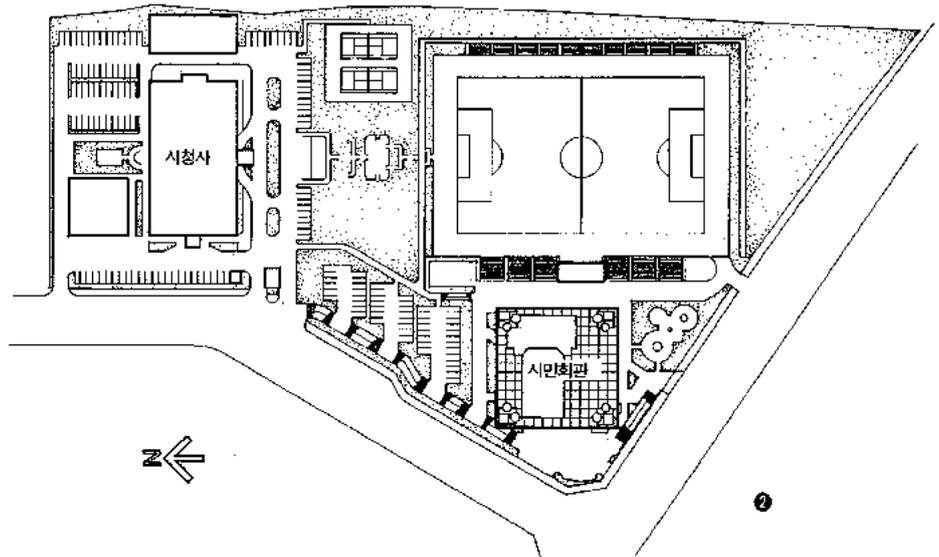
# 광명시민회관

*Kwangmyung City Residency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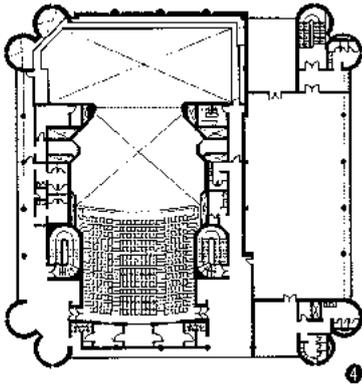
1

대지위치/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산 39  
 대지면적/40,220㎡  
 건축면적/2,460㎡  
 연면적/5,837㎡  
 용도/700석 규모의 공연장,  
 도서관 및 다목적강당  
 전시실 및 연금매점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적벽돌, 발색알루미늄창호+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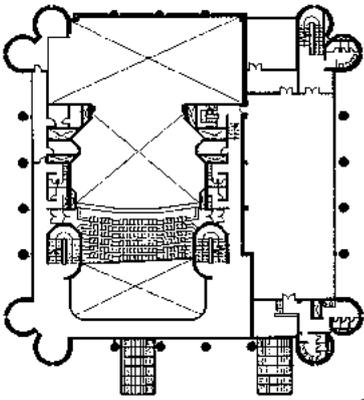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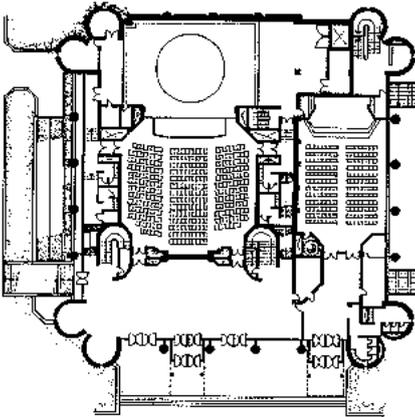
禹時庸/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Designed by Woo, Sea-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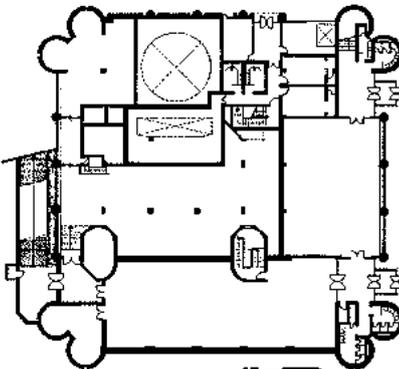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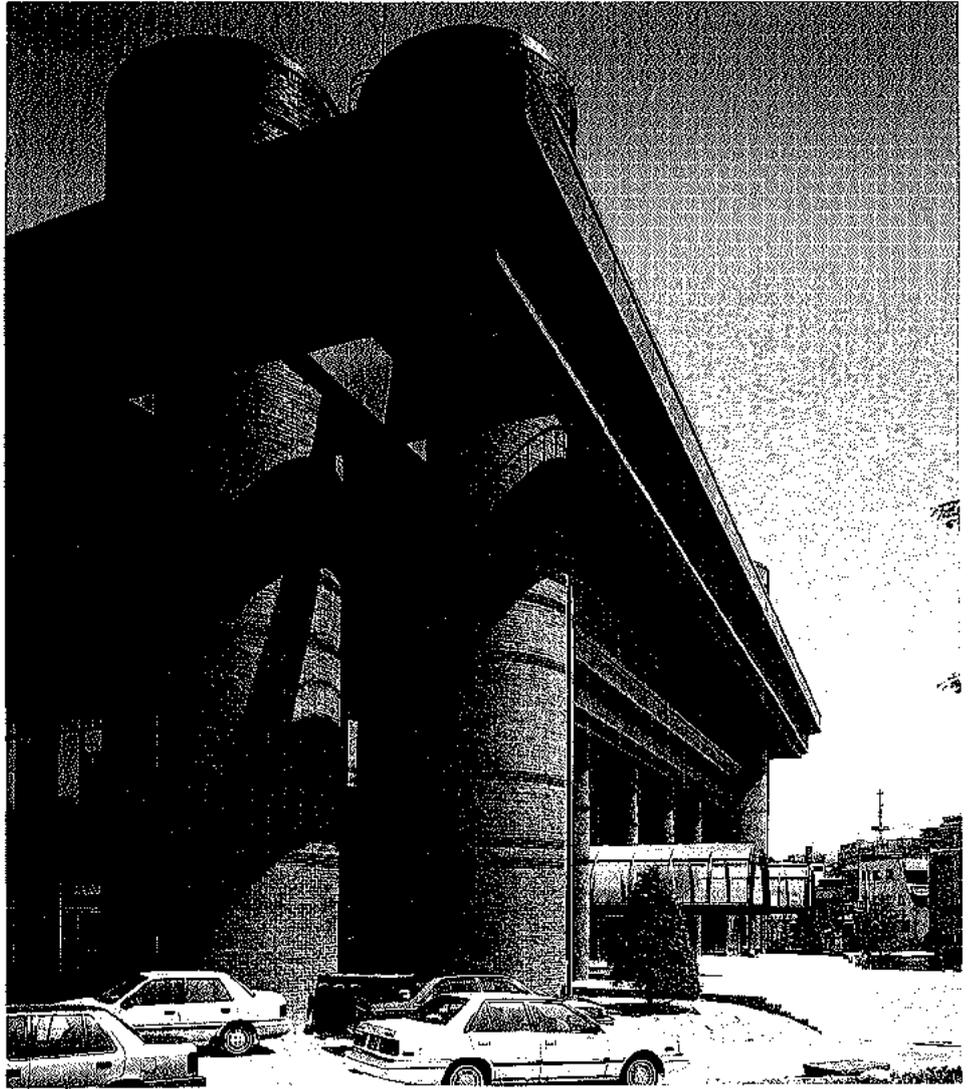
5



6



7



8

### ■ 설계소문

시민회관의 신축대지는 시청사가 있는 단지내의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당초에 시청사 마스텐프랜시 시민광장으로 계획된 곳이었으나, 시민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시민을 위한 관람, 집회시설이 없는 광명시의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제 시대에 걸맞는 다목적 홀로서의 이용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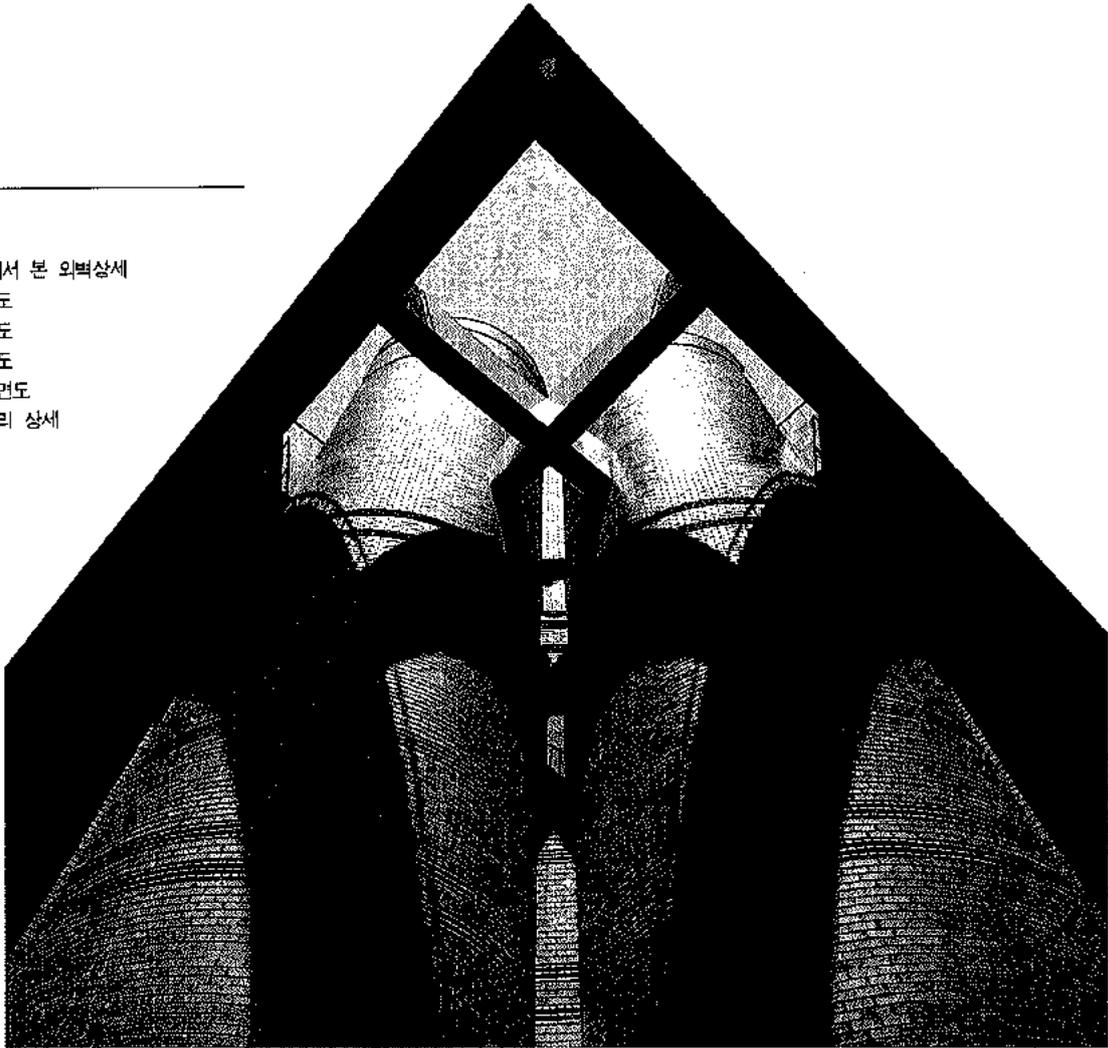
대지내의 시민회관은 본건물, 전면광장, 남측 소공원, 주차장 및 녹지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민회관은 시청사와 운동장이 어우러는 주축에 나란히 배치되어 전체 단지내의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시민회관은 기능적인 면에서 대공연장, 소공연장, 도서관, 전시실, 연금매점으로 구분된다. 건물전면 광장측에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출입구를 두고 남측 소공원측에는 도서관, 연금매점, 전시실의 출입구를 두어 지반의 높이 차이에 의한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시켜 복잡한 기능을 가진 건물이 가져올 수 있는 이용상의 혼잡을 피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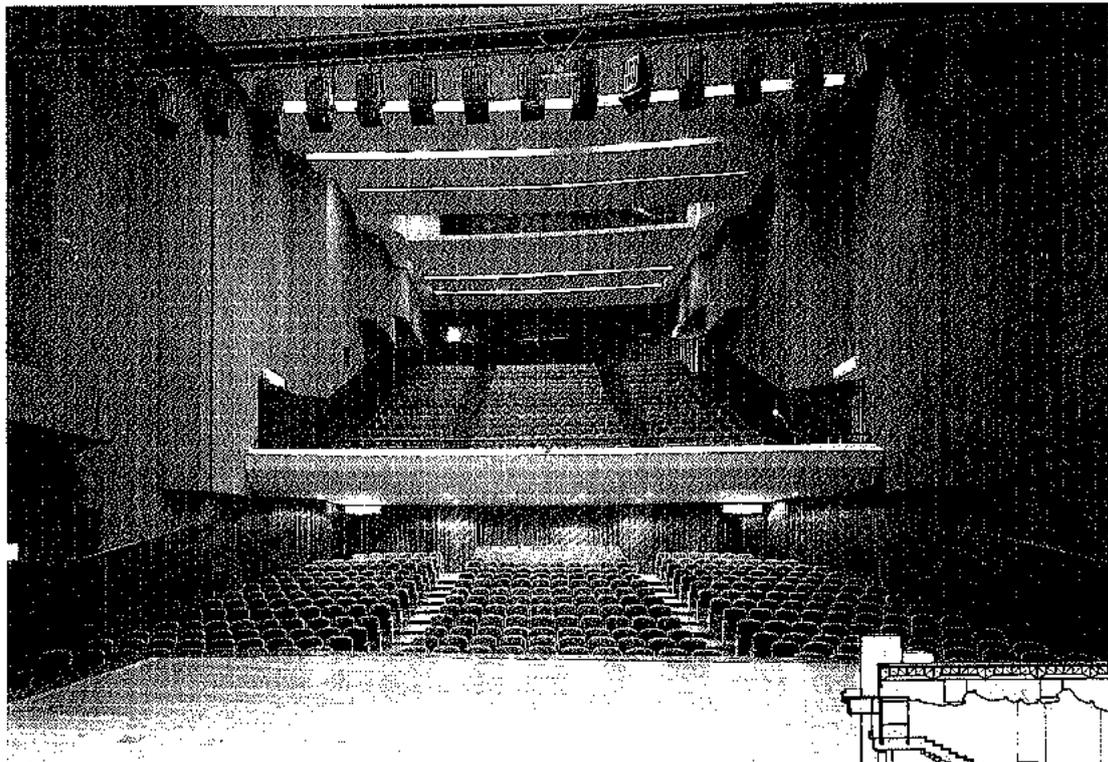
750명 규모의 대공연장의 객석은 발코니 형식의 2층으로 되어있으며, 무대는 프로세니움형식으로 회전무대와 오케스트라 팻트가 설치되고, 무대 부속실 및 연습실은 지하에 위치한다.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은 소규모 집회, 세미나, 결혼식 등에 이용되며,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로비홀은 이용자수에 의하여 출입구를 개폐함으로써 넓게 쓸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다.

기존시청사와 건축어휘에서 동질성을 갖고있는 이 시민회관은 마감재료와 디테일한 요소를 갖게함으로써 한 단지내에 배치되어 있는 건물로서의 동질성을 높여줄 것이다. 시민회관은 조형상 수평, 수직요소를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간결감을 주고, 큰 스케일의 건물이 가질수 있는 중압감을 휴먼스케일의 붉은 벽돌을 사용한 기둥이나 벽면의 처리와 투명유리를 사용한 캐노피에 디테일한 요소를 부여시킴으로써 배제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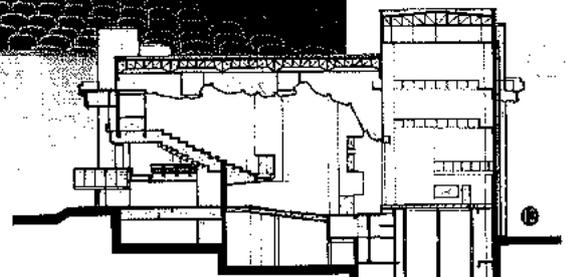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주차장측에서 본 외벽상세
- ④ 3층 평면도
- ⑤ 2층 평면도
- ⑥ 1층 평면도
- ⑦ 지하층 평면도
- ⑧ 외벽 모서리 상세
- ⑨ 대강당
- ⑩ 단면도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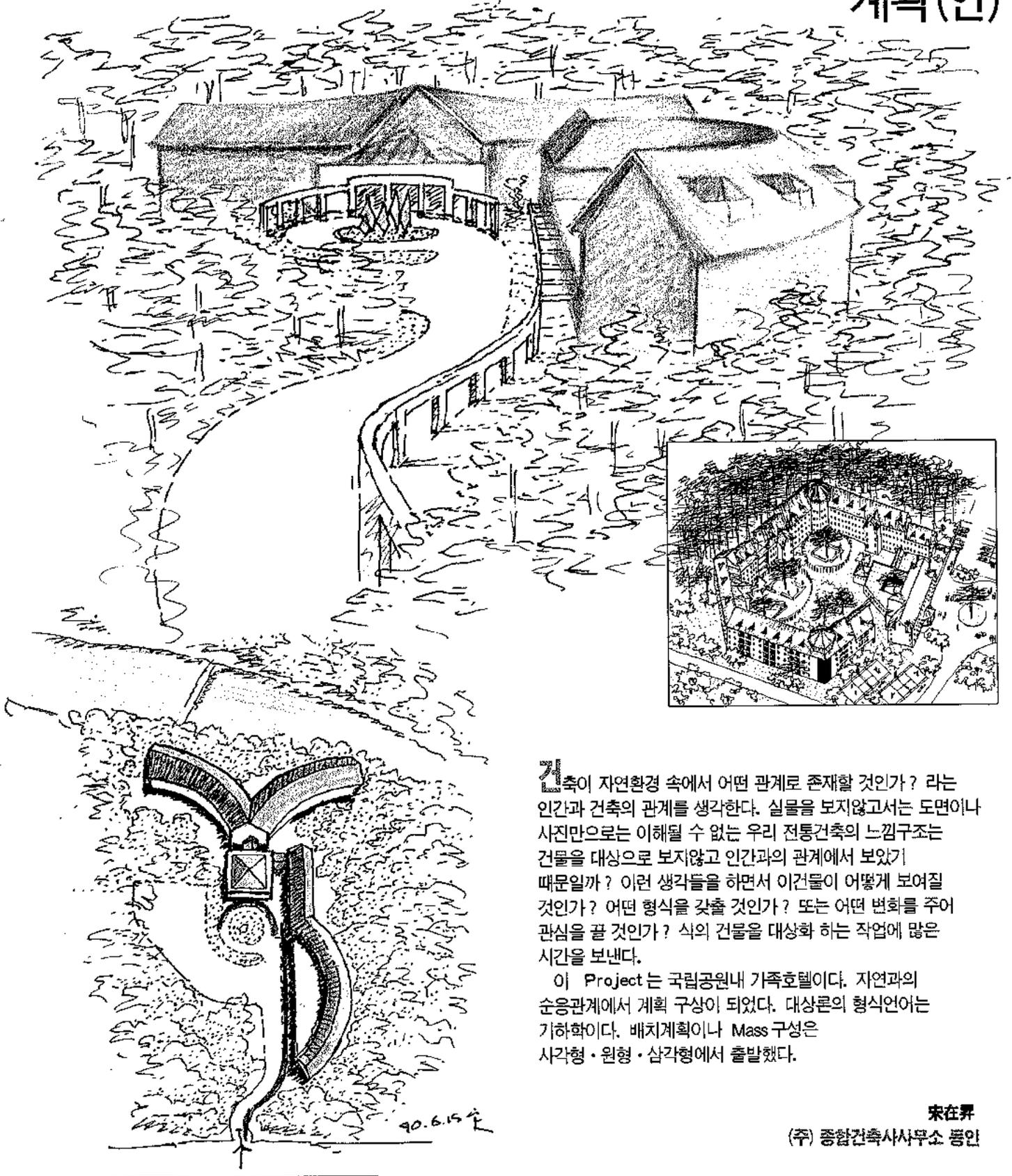


⑨



⑩

## 에메랄드 가족호텔 계획(안)



건축이 자연환경 속에서 어떤 관계로 존재할 것인가? 라는 인간과 건축의 관계를 생각한다. 실물을 보지않고서는 도면이나 사진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우리 전통건축의 느낌구조는 건물을 대상으로 보지않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보았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건물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어떤 형식을 갖출 것인가? 또는 어떤 변화를 주어 관심을 끌 것인가? 식의 건물을 대상화 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 Project는 국립공원내 가족호텔이다. 자연과의 순응관계에서 계획 구상이 되었다. 대상론의 형식언어는 기하학이다. 배치계획이나 Mass 구성은 사각형·원형·삼각형에서 출발했다.

宋在昇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풍인

# 그린벨트지역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시급하다

우리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지켜보지 못한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20여년전 처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호하여 도시민의 건강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온 그린벨트제도는  
최근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와같은 제도의 필요성이야  
두말 할 나위도 없는 것이지만  
서울시의 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2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아무런 수정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하여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鄭求殷  
삼예종합건축사사무소

최근 건축경기의 호황으로 철근, 시멘트 등 자재  
수급사정은 물론, 기술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다.

레미콘 공급이 늦어져 각 현장마다 공사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장 소장의 일파가 레미콘  
공장으로 출근하여 줄서기부터가 시작이라고 한다.  
왜들 이렇게 난리 법석들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여파가 설계사무실에도 불어다쳐  
설계사무실마다 일손이 모자라 보조사들의  
구인난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서로들 좋은 조건을  
내걸고 보조사를 모셔오기 경쟁이 치열하다. 앞친데  
덜친 격으로 건축사 시험이 가장 바쁜 시기인 5월에  
치워지고 있어 인력의 공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참으로 몇 년만에 맞는 경기의 호황속에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공급 정책이 빚어낸, 이상 건축경기 호황의  
결과인 것이다.

수년전 아파트경기가 침체되어 긴 동면에  
빠져있을때 가까운 어느 친지가 나에게 조언을 청해  
온 적이 있었다.

지금 아파트를 하나 장만 하려는데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여부를 판에는 건축에 종사한다는 나에게  
들어 온 것이다. 나는 조언을 하기를 "이제는  
아파트는 한물 갔다. 그리고 앞으로 주거의 개념이  
소유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 될 터이니 장차  
노년에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근교의 땅을 사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그 친구는 나의 조언을 따라  
근교에 조그만 땅을 하나 구입하고 아파트 전세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후 지금 그친구는 아파트  
전세를 살며 폭등하는 전세금 인상에 시달리며  
전원주택의 꿈을 먹고 살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올림픽이다, 선거다 한눈을 팔고있는 사이에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고 정부는 급기야 분당이다, 일산이다,  
평촌이다, 산본이다, 한꺼번에 주택건설 200만호를  
짓겠다고 팔을 걷어 붙였다. 국회의원들의 약삭빠른  
계산으로 1년기간 전세값을 2년동안 동결하자는  
계산으로 전세입자 보호법이 나오기가 무섭게  
전세값은 두배로 뛰어, 길거리에 나 앉게된  
무주택자가 자살하는 소동이 빚어 지니까 정부는  
전세값을 안정시켜 보겠다고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고쳐 적극 지원에  
나섰다. 더욱더 부채질하여 신문에서는 매일 매일  
건축법이 완화된다는 내용이 쏟아져 나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니, 하루라도 늦으면  
손해를 볼세라 어서 빨리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심리가 팽배해져 때아닌 건축경기의 호황이 시작되고  
말았다. 이같은 주택정책의 失機가 엄청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짧은기간 참으로 많은 변화가 휩쓸고 갔다. 견잡을 수 없이 폭등하는 부동산가격의 양등과 도시분계의 심화로 말미암아 사회적 갈등과 긴장, 내림으로 위기상황속을 헤매고 있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초조해진 못가진 자는 자기 몫을 찾기위해 싸우다 지쳐 이제는 자포자기에 빠져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되었다. 이 난국을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변화를 미리 예견하고 슬기롭게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왜 일찍 찾지 못하고 이지경이 되도록 방관만 해 왔을까? 정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인의 조언이 미약 하여서였을까? 정부가 전문가기술인들의 조언을 무시해서였을까? 급변하는 변화에 대처 할만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없어서였을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맥없이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 정책결정에 있어서 부처 간의 의견대립으로인하여 정책의 실시 시기를 놓친 결과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첨예화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공수표로 돌아가고 신공항 이전 지역이 영종도로 확정되면서 이제 비대항 대로 비대해진 수도 서울의 위치는 어쩔 수 없이 불변하게 되었다. 서울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주택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정부의 5·8 부동산 조치 후 부동산 시장은 뒤흔들리게 되고 토지거래가 동면으로 빠져들면서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의 폭등은 진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언제 또 어떻게 투기가 재현 될지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돈의 흐름을 건전한 생산방향쪽으로 흐르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 불고를 터주는 일이 급선무 일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이나 아파트의 가격 폭등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으로 서울 강남의 8학군 지역의 택지부족 현상에 따른 과잉 토지투기 경쟁과 한자리 수 물가 안정 정책을 고수하기 위한 아파트 분양 가격 동결이 민간주택건설을 위축시킨 결과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한다 그 원인이 있겠으며 강남에서 일어난 과잉 투기 열기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확산 됨에 따라 전 국토가 투기장으로 변하게 된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은 교통문제나 주택문제에 있어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지가 오래다.

분당이다, 일산이다, 평촌이다 하고 수도권 주변의 녹지를 풀어 주택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오름대로 오른 아파트 가격이 내려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상을 볼 때 가슴이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고속버스를 타고 30분만 지나면 푸른들과 녹음이 우거진 산들이 싱그럽게 다가 온다. 짜증스럽기만 한 도심을 빠져나오면 아직도 넓은 국토를 실감하게 된다. 시골에는 이농현상이 심각해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같은데 어느 사이 모내기까지 거의 끝나간 들판을 보고 있노라면 이상스럽기 초차하다.

차장에 기대어 여기 저기 녹음이 우거진 산속에 아파트를 심어 본다. 국토의 광범위한 활용방법을 생각해 본다. 이 많은 산들을 활용하여 주택난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꿈은 부한정 나라를 편다.

우리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지켜보지 못한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20여년전 처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호하여 도시민의 건강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온 그린벨트제도는 최근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와같은 제도의 필요성이야 두말 할 나위도 없는 것이지만 서울시의 3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2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아무런 수정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하여 외구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팽창된 수도 서울의 택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린벨트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가용한 땅에 대하여서는 그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활용을 하며 그린벨트지역을 대폭적으로 재조정하여 수원 이남지역으로 그린벨트 고리를 확산시켜 2000년대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 같다.

서울로의 인구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택지 부족현상은 심각할 것이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에 또한번의 시행착오를 범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그린벨트제도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분당이나 일산같은 동공의 전원도시보다는 서울 외곽을 과감히 정부에서 수용하여 공공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그린벨트지역을 하루빨리 재조정 함으로써 택지부족 현상은 물론 아파트가격의 안정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인구 분산정책이 일환으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공수표로 돌아가고 신공항 이전 지역이 영종도로 확정되면서 이제 비대항대로 비대해진 수도 서울의 위치는 어쩔 수 없이 불변하게 되었다. 서울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주택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 建築法 改正方案에 관한 討論會



本協會는 현행 建築法의 현실적 개선에 대한 意見을 收斂하여 바람직한 建築法에 대한 改正方案을 모색하기 위한 討論會를 開催하였다.

지난 10월 本協會 대강당에서 개최된 討論會에는 本協會 會員뿐 아니라 건설부, 서울시 등의 건축관계공무원과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주택사업협회 등 관련단체 대표, 각 대학 교수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날 建設部에서는 도시국 이필원건축기획관등이 발표자로 참석, 건설부개정안을 바탕으로, 1. 지자체 실시예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2. 국민의 편익증진, 3. 민원의 사전예방과 주민간 분쟁의 사전조정, 4. 건축물의 사후관리 강화, 5. 건축물의 미관 및 질 향상 도모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각 주제별 토론에 이어 종합토론을 통해 건축계의 의견을 집약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집약된 의견들은改正 建築法의 확정시 적극 반영키로 하였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별 討論者와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발표 建築法 改正 方案

## I. 건축법 개요

■ 목적 :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과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

■ 제정 : '62.1.20(10차 개정 : '86.12)

■ 구성 : 8개 장 57개 조문

○ 절차규정(8개 조문) : 건축허가, 준공허가, 준공검사, 건축물 유지 관리 등

○ 기술 규정(33 조문)

### • 個體規定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등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 • 集團規定

지역내의 건축물의 제한  
지구내의 건축물의 제한

○ 운영규정 : 법칙, 감독 등

### ■ 주요 문제점

○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의 대부분이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지역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

○ 건축허가 신청시 他法에 의하여 동시에 발아야할 토지형질변경허가등 부수허가사항이 과다하고, 건축과정에 이행하여야 할 설계변경등의 절차도 복잡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다.

○ 건축물은 양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건축물 유지관리제도가 미약하여 준공후 임의로 용도변경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 또한 건축물의 질과 미관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완화, 높이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부흥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 건축법령 체계가 복잡하고 조문의 표현이 전문적이고 모호하여 범용용상 허가청과 민원인간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법의 합리적 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II. 개정방향

■ 지자체 실시예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시·군의 건축조례 제정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 시·도지사에게 건축허가 제한권의 일부를 위임한다.

■ 국민의 편의증진과 규제완화를 위하여

○ 공사중 설계변경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건축허가에 따른 조사·검사업무의 민간 대행범위를 확대하며

○ 건축허가에 의한 관계법률의 認許可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간의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 대형건축물 건축허가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 건축물의 공사시 오차범위의 근거를 설치하며

○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한다.

■ 완공된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 석법 유지상태에 대한 정기보고를 강화하고 防火門 등 주요설비에 대한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하며

○ 위법건축물에 대한 감시원제도를 도입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

■ 도시내 건축물의 미관 및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도시설계제도를 보완·정비 하며

○ 도심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및 높은 제한을 완화하여 公開空地를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 건축법령 체계를 단순화하고 조문을 평이화하며

○ 준공검사를 사용승인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의 정의를 보완한다.

## III. 주요 개정내용

### 1. 지자체 실시예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가. 시·군의 건축조례 제정범위의 대폭 확대 (現況 및 問題點)

○ 건축기준중 시·군 건축조례로 정하여 운용하는 사항이 용적률, 대지의 최소면적 등 일부사항에 국한하고 있어 대부분의 건축기준이 전국에 걸쳐 거의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 주제별 토론자

발표자 : 건설부

제 1주제 : 조태종 본협회 법제위원

이문보 동국대 교수

최명철 본협회 회원

제 2주제 : 이종업 본협회 법제위원

김성일 부산시 주택지도과장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

제 3주제 : 이영희 본협회 서울지부회장

양 갑 서울시 건축지도과장

박영기 연세대 교수

제 4주제 : 최현길 인천시 주택과장

도건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실장

이종민 한국주택사업협회 사무국장

제 5주제 : 강태석 본협회 이사

신기철 명지대 교수

최영택 현대산업개발(주)부장

최근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사의  
설계에 따라 시공되려 하고 있으나  
대지의 지형지형 및 시공기술상  
모차없이 건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건축물의 규모별로  
차등적 허용요차를 건설부질관이  
정하는 근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결과 건축물 외관과 도시경관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법규운용에 있어서도 탄력성이 결여되어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改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대폭확대하여 방화, 피난, 구조안전 등 기본적으로 공통적 사항을 제외한 기술규정의 일부와 절차규정의 대부분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한다. (현행 13개항→확대 20개항)

예) 건폐율 건축허가 사전예고절차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위계에 따라 직할시급과 기타시급 군급으로 차등 위임

나. 시·도지사에게 한시적 건축허가제한권 부여

〈현황 및 문제점〉

○국방·경제상 및 지역,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을 하게 되는 경우 현행 법상 건설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변경등 한시적 필요에 의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절차 이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번잡하여 즉각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도에서 행정지도로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의 불만을 초래한다.

〈개선〉

○지역 및 도시계획상 필요한 한시적인 건축허가 제한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토록 한다.

2. 국민의 편익증진 도모

가. 공사중 설계변경에 대한 준공전일괄 처리의 제도화

〈현황 및 문제점〉

○공사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주가 임의로 변경절차를 생략하고 공사를 진행하므로써 불법 및 부조리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개선〉

○공사중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내용의 경중에 따라 준공검사에 일괄하여 설계변경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 굴뚝·물탱크 등 신고사항은 준공전 일괄 신고 허용

기둥·보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는 연면적 10%미만의 면적 증감은 준공전일괄 설계변경 허용

나. 건축허가에 따른 조사·검사업무의 민간기관대행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소규모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2층이하로서 연면적 1천㎡미만인 근린생활시설)의 조사 및 검사업무를 허가기관대신 건축사가 대행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국민편익 제고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개선〉

○기술규정중 대지·구조·설비·높이 등에 대한 조사·검사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일정요건을 갖춘 건축사공감리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이 대행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벌칙 및 지정취소등의 규정을 둔다.

다. 건축허가에 의한 관련법규 인허가 면제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건축허가에 의하여 擬制되는 타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대상이 도로점용허가, 오수정화시설설치 신고 등 4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절차간소화를 통한 주민 편의제고에 미흡하다.

〈개선〉

○擬制대상을 확대하여 현행 4종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지적법에 의한 지목변경 등 9종을 추가하여 13종으로 확대하여 One Stop Service 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3. 민원의 사전예방과 주민간 분쟁의 사전조정

가. 대형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사전예고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한 허가기관에서는 건축을 허가하고 있으나 관련법규이외에 주거환경보전등 공동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되는 주민상호간의 마찰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동 분쟁조정업무에 일선행정력이 소모됨으로서 건축행정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있다.

〈개선〉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일정건축물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하므로써 주민상호간의 자율적 조정기회를 부여한다.

○일정규모이상의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주가 인근주민에게 일정기간 건축장소에 예고판 설치 및 설명회 개최

○건축허가신청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오차허용규정의 설치

〈현황 및 문제점〉

○모든 건축물에 건축의 건축사의 설계에 따라 시공토록 하고 있으나 대지의 지적측량 및 시공기술상 오차없이 건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에도 현행규정에서는 이를 허용치 않으므로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이 본의아니게 불법행위를 범하게 되는 사회화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개선〉

○건축물의 허용오차를 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고 인접건축물과의 관계에 영향이 없는 최소범위내에서 건축물의 규모별로 차등적 허용오차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근거를 설치한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적용하는 면적허가오차수준(5/100)이하로 하되 건축물 규모 및 용도별로 차등적용방안을 강구한다.

다. 특수한 조건의경우 건축기준의 탄력적 적용근거 설치

〈현황 및 문제점〉

○대지의 지형·지질상 경사가 심하거나 다량의 地下水가 있는 등 특수한 여건 또는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의 특수성(예;셀구조)으로 인하여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다수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허가권자가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없어 민원과 부조

리의 요인이 되고 있다.

〈개선〉

○허가권자가 대지나 건축물의 특수성으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이해관계자의 供覽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한다.

※ 참고 : 탄력적응용의 대상규정

○지하층 설치, 진입도로 확보 및 도로에 의한 사전제한

○용도지역지구내 건축제한 등

4. 건축물의 사후관리 강화

가. 적법 유지상태에 대한 정기보고강화 및 주요설비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적법하게 유지·관리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대형 고층건축물(11층이상, 5층이상+5천㎡이상)은 3년마다 시장·군수에게 유지관리상태를 정기보고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축물준공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는등 불법행위에 대비한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어렵다.

〈개선〉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에 대한 정기 보고시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방화문등 주요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함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는 적법하게 유지·관리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대형고층 건축물은 3년마다 시장·군수에게 유지관리상태를 정기보고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나. 위법 건축물 감시원제도의 도입 및 사법경찰관의 직무부여

〈현황 및 문제점〉

○위법건축물의 적발 및 단속업무는 주로 기능직·雇傭職등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사명감 부족과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미숙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적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 위법건축물 통계('90.3월말 현재) : 235천동(총 건축물의 약 4%)

※ 연간허가건수대 위법발생율('89) : 25%(위법 30천건/허가 120천건)(이중 약8%는 시정 조치)

〈개선〉

○일선단속 건축직공무원중에서 일정의 전문

성을 가진 자를 건축감시원으로 임명하여 단속업무에 활용토록하고  
 ○건축감시원에게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인상**

〈현황 및 문제점〉

○위법건축시 과태료부과는 현재 소액으로 1회부과토록 되어있어 불법건축등에 의한 임대수입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이득을 상쇄하여 금전적 손실을 초래케되는 정도까지 실효성있는 제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 무허가 신축·증축·개축

과실시가표준액×위반면적(예 : 100㎡ 콘크리트조 490만원)

• 기타위반

과세시가표준액의 1~10%(예 : 100㎡ 콘크리트조 49만원)

〈개선〉

○경제적 이득을 상당히 감쇄 할수 있도록 과태료 액수를 인상하며, 주기적으로 부과하고 동 과태료수입은 시장·군수에게 불법단속등 건축행정에만 사용토록 용도를 제한한다. (현재 10%미만을 건축행정에 사용)

※ 참고 : 외국예

미국 San Francisco : 위법건축행위 시정시까지 주단위로 반복부과

대만 : 총공사비의 5%이내의 벌금

**라. 위법시공자와 건축주의 동시처벌**

〈현황 및 문제점〉

○위법건축물에 대한 처벌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 위주로 되어있어, 직접행위자인 시공자의 처벌은 경미하거나 동시처벌이 안되고 있어 위법시공의 사전방지가 곤란하므로 위법단속의 실효성이 저하된다.

〈개선〉

○건축물 시공과 관련하여 야기된 위법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도 건축주, 감리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벌칙을강화한다.

**5. 건축물의 미관 및 질향상 도모**

**가. 도시설계제도의 보완 정비.**

〈현황 및 문제점〉

○도시설계 수립과정에서 도로변경, 지구조정 등 경미한 도시계획 사항의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의제조항이 없이 도시설계 내용확정 후 별도로 도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계획이 파행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도시설계 내용이 규제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반면 개발을 촉진하는 인센티브가 미약하다.

〈개선〉

○도시설계지구내에서는 경미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조정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변경을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의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시설계지구내에서 개발을 촉진·유도키 위해 건축주에게 전세율, 용적율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시설계지구내의 도로·공원등 도시계획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명문화한다.

**나. 도심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 확보유도 제도 마련**

〈현황 및 문제점〉

○도심지에서 건축하는 대형고층건축물은 공공적성격이 크므로 이용자 및 통행인이 개방감을 갖을수 있고, 휴식공간으로 사용할수 있는 공개공지를 건축주가 제공토록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유도책이 없다.

〈개선〉

○일정요건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공중이 이용토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과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기준용적률보다 공지의 면적과 유효공개공지율에 비례하여 추가용적률 부여

**다. 특별주택사업구역제 적용대상 확대**

〈현황 및 문제점〉

○계획단위종합개발기법(PUD)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하여 그 지구의 특성에 맞는 건축기준을 사업자와 허가청이 협의과정을 통하여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선진형 개발기법이다.

○동 특별주택사업구역제가 신도시의 대단위 주택사업에 적용되도록 건축법시행령에 기반영한 바 있으나, 母法の 근거규정이 없다.

〈개선〉

○모법에 근거규정을 설정하고 기존 시가지의 재건축 및 단지규모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

소규모 건축물은 시공자에 대한 처벌이 없으므로 불법 및 부실공사의 근절방안(이)따르면 직접행위로 성하는 소규모건축물의 공사는 건축가시·건축사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시장·군수에게 등록한 자가 하도록 한다.

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 라.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감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소규모 건축물(주거용도 200평, 기타용도 150평이하)은 시공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불법 및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이 되며 이에따른 민원발생이 크다.

•감사원의 '89년도 지적사항임

•소규모건축물의 점유율('89)

연간 건축허가동수의 약 80%

연간 건축공사수주액의 약 24%(건설업자 시공 20%, 기타 80%)

<개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는 건축기사·건축사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시장·군수에게 등록한 자가 하도록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6. 기타 미비정보완

#### 가. 법령체계의 단순화 및 조문의 평이화

○법률 : 구조안전, 방화, 피난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시행령 : 법 시행상의 구체적 사항 및 운영상 절차를 규정 용도지역·지구내 건축제한 규정을 별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

○시·군조례 :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는 사항 사리의 판단, 허가권자의 재량 사항을 규정한다.

#### 나. 사회변화·기술발전의 수용

○신종 용도의 건축물 출현시 이에 대한 시장·군수의 허가기준제정 운용 근거 설치 예) 지하상가, 주차전용 빌딩, 콘테이너하우스 등

#### 다. 기타 용어의 정의등 보완

○준공검사를 사용승인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착공 제출시기를 사후제출(3일이내)에서 사전제출(3일이전)로 전환한다. (소형주택은 제외)

### IV. 추가 반영코자 검토중인 사항

#### 1. 건축허가 대상의 재검토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건축허가대상은 3층이상 또는 200㎡이상의 건축물이거나 도시계획구역 및 비도시계획구역으로서 시·읍의 구역 및 취락·정지·공업·관광휴양지역안의 모든 건축물이다.

○또한 현행 건축허가대상은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계획적 개발이 불가하다.

<개선>

○경기도등 수도권 주변같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시장·군수가 허가대상의 범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건축사가 설계하여 감리하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허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2.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가사용승인제도의 강화

<현황 및 문제점>

○가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가사용승인시 일정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간만료후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하므로써 도시미관 및 구조·안전등 생활환경을 저해한다.

<개선>

○일정 기간을 정하고 연장회수를 명문화하여 최대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시공감리업무에 대한 경찰의 감독업무 일괄담당인가 신청은 건축허가 감리시공과 신청(2007) : 문장번호로 보편적으로 대체하는 시물자료, 건축사, 감리자에 발발회결정발발감리 업무관 관직(2007)



# 亭子建築의 實例와 현대적인 응용요소

## Example of Arbour Architecture and It's Contemperary Application



### 5. 昌德宮 翠寒亭

창덕궁에서 후원 북동편의 한적하고 깊숙한 위치에서 굽이도는 玉流川 을 중심으로 逍遙亭, 御井, 淸梅亭, 太極亭, 籠山亭 등의 정자건물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옥류천으로 접어드는 길목에는 翠寒亭이 자리잡고 있어 비원의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전해오는 얘기로는 임금이 후원을 소요하다가 御井의 샘물로 목을 축인 후 시원한 그늘 밑의 취한정에서 심신을 가다듬기 위해 잠시 쉬었다가곤 했다는 것이다.

궁궐지에서는 취한정의 건립연대가 미상이라 하였으나 소요정과 청의정이 仁祖14년(1636)에 건립되었고, 바위에 새긴 玉流川이라는 刻字는 인조의 御筆로 전하여지고 있으며, 숙종14년(1688)에는 淸心亭과 氷玉池가 조성되었고, 숙종어제의 취한정에서 읊은 詩가 전하여지고 있으므로 숙종대 이전에 창건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종년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東關圖形과 宮關誌에서는 취한정과 소요정의 명칭이 현재와는 달리 서로 바뀌어져 있으며, 소요정이 삼칸이고 그 북쪽에 한칸의 사모정인 취한정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중간에 소요정과 취한정의 명칭이 바뀌었거나 잘못기록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튼 1826년경에 작성된 동궐도와 헌종년간의 궁궐지에는 현재와 같이 삼칸의 취한정과 한칸의 소요정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취한정에 대해 살펴본다.

張順籍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탑  
by Chang, Soon-Yong

옥류천 계류로 향하여 가는 입구의 낮은 구릉에 수목으로 둘러싸인 평탄지에 건물자리를 닦고 지반의 고저차이를 장대석 석축으로 둘러 정리하고 그 상부로 별도의 장대석 기단을 두어 이중의 기단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건물은 측면 8자에 정면중앙칸의 8자이고 그 좌우로 반칸(4자)씩의 협칸을 둔 삼칸건물로서 6치각의 각기둥을 사용하고 납도리에 흘쳐바 삼량구조의 팔작지붕으로 3.5평 정도의 규모이다.

1826년경의 작품인 동궐도에서는 이건물의 정면 우측칸과 우측면, 그리고 좌측면의 벽에는 창문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한때는 정면과 배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창호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면에 머름간간을 돌리고 있을 뿐으로 창호는 없고 사면의 기둥에는 七言詩의 柱聯 11점이 흰바탕에 草書體로 쓰여져 걸려있다. 건물명칭인 翠寒이란 의미는 수목이 울창하게 우겨져서 여름에도 寒氣가 감도는 분위기를 뜻하므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제목이 아닐 수 없다.

이건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단청이 배풀어졌다든 점을 제외하고는 납도리에 삼량구조로 아주 간단한 양식이라는 점과, 지붕의 구성상으로는 팔작지붕으로 하였으나 구조상 통상적인 합각으로 구성하기에는 웅색하였으므로 솟기화장을 삼각형으로 포개쌓아 합각벽에 대신하였다. 따라서 합각부분의 박공, 목기연, 내새 등이 생략되어 마무리 하면서도 어색한 느낌을 주지 않고있다. 이건물에서 의장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기단을 이중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통상적인 방법이라면 정자의 기단을 높게처리하고 있으나 이곳에서는 주변환경상 높게 올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변의 수목속에 들어앉아있는 분위기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건물의 입면처리상으로 볼 때는 건물의 폭이 작아 상대적으로 지붕의 높이가 낮고 처마깊이가 짧아 오탁한 기단이 형성되었을 때의 비례감각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깥의 기단과 안쪽의 기단구성으로 해서 지붕과의 비례를 맞추고 또한 건물의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살려낸 것이다. 이같은 기법은



①



②

- ① 취한정 전경
- ② 취한정 측면  
지붕의 함각처리가 유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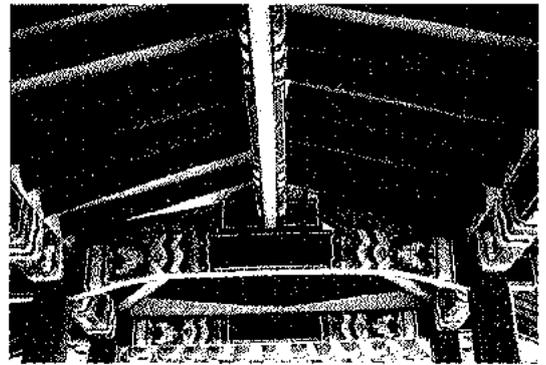
현대건축에서도 건물외곽의 화단조성 등에 응용할 수 있어, 자칫하면 통행인에게 시각적인 불쾌감을 주기 쉬운 곳에 적용해볼 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정자건물에 부분적으로 창호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창호가 설치된다면 사면에 걸쳐 벽체가 구성되고 있음에 비하면 이 건물과 같이 부분적으로 창호가 설치된다는 것은 주변의 경관상태에 따라 창문이 만드는 차경효과와 선택적인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경관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말하자면 창호의 기능중에서 시각적인 차폐목적을 위한 단일기능을 갖는 창문이 되는 셈이다. 창경궁의 함인정에서도 이와같은 창호연출이 언급되었는데 그것과는 또다른 연출방법인 것이다. 이같은 기법은 현대건축에서도 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통행인 또는 사용자에게 그 기능과 분위기를 암시해주는 기법으로, 건물의 전체적 분위기 또는 부분적인 성격제시에 사용할 만한 기법인 것이다.

세째로는 건물의 치수계획에 인간적인 척도를 사용하여 건물의 비례를 맞추었다는 점이다. 정자건물이 대체로 소규모로 만들어 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중앙간의 평면이 8자 사방이므로 실사용 공간은 7자 정도가 되고 마루에서 도리받까지도 7자 정도이며 좌우측칸은 4자로 하였고, 머름중방의 난간높이도 3자3치 정도이므로 마루에 앉아서 팔을 걸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편리한 높이로 되어있다. 이러한 인간적인 기본척도에 맞추어 주초속과 지붕과 기단의 구성비례를 갖추었기 때문에 입면판도 안정감이 있고 마루에 앉아 주변을 감상하며 시색하기에 필요한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대건축에서 대량생산을 위한 모듈구성 방법론으로 이러한 인간적인 척도를 고려한 치수계획이 충실하게 도입된다면 더욱 친근감이 있고 적어도 이와같은 비례감각을 채용하는 것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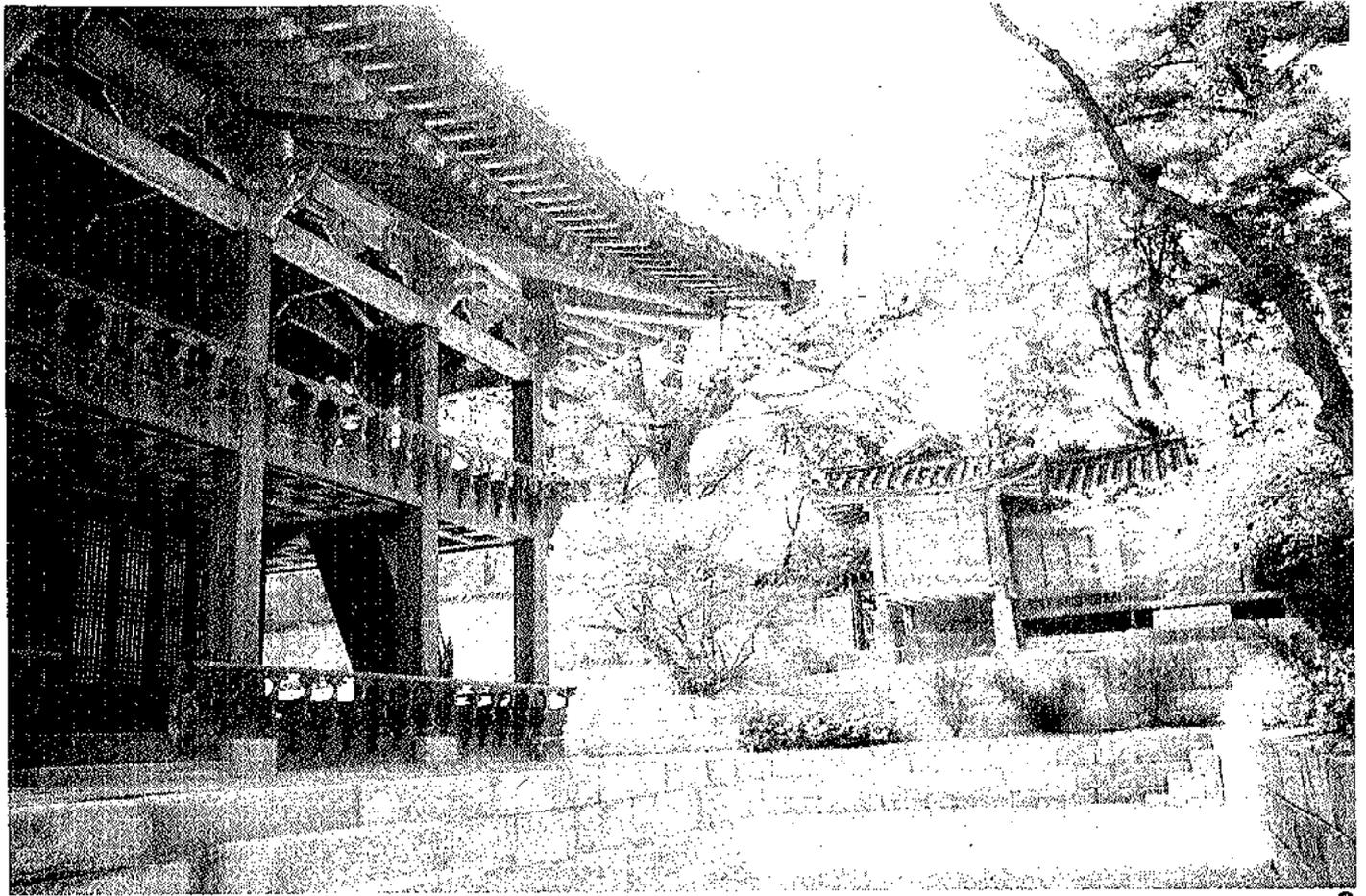
4

## 6. 昌德宮 靈月光風觀(千石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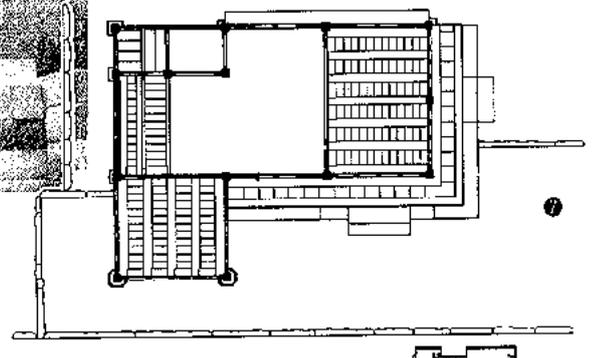
주합루 경내의 북편으로 층단을 두어 설치한 높은 석축위에 7자형의 건물이 있으며 돌출된 누마루의 정면에도 靈月光風觀이라는 편액이 걸려있어 이 명칭으로 호칭하고 있으나, 동궐도와 궁궐지에서는 별도로 千石亭이라 하고있으며 제월광풍관은 누마루에 붙인 별도의 명칭인 것이다.

주합루의 경내에 있다는 것은 관련된 성격이 있을 것인 바, 宙合樓의 하층을 奎章閣이라 하여 각종의 귀한 서적을 보관했던 書庫이고 상층인 주합루는 文治를 장려하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한편 靈月이란 뜻은 “비가 그치고 개인 하늘에 뜬 달”로 직역되고, 靈月光風은 “도량이 넓고 시원함”이라 은유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며,

이 건물의 명칭인 千石은 “많이 수확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규장각의 서책으로 시간과 공간이 함치되는 宙合의 진리를 터득하고, 천석정에서는 비개인 뒤의 천공에 걸린 달과 같이 넓은 도량으로 빛을 받아서 국가와 백성을 위해 많은 것을 수확하라는 의미로 풀이해 볼 수도 있고, 같은 맥락에서 서편에 있는 晝香閣의 의미도 해석이 가능하다. 건물의 형태는 7자 정도의 간살로 정면의 삼칸이 구성되고 측면은 같은 간살로 한칸반이 구성되었으나 동측면에서는 이를 두칸으로 만들었고 정면의 서측에는 누마루 한칸이 돌출된 형태이다. 누마루의 정면 기둥에는 사각형에 귀를 접어 팔각형태의 돌기둥으로 받치었고, 정면과 동측면에서만 기단이 형성되고 좌측면과 배면에는 기단이 없이 흙으로 약간 돌우어 놓아 시골 주택에서나 볼 수 있는 기단처리 방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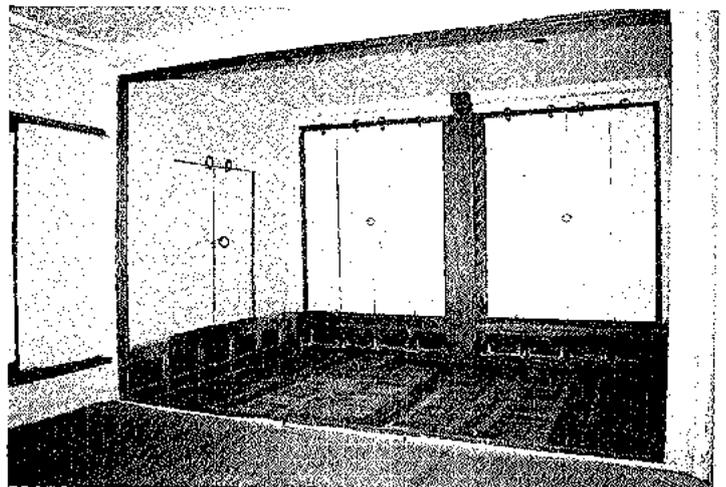
- ③ 취한정 배면  
지반의 경사에 대응하는 처리가 자연스럽다.
- ④ 취한정 내부 가구 구조
- ⑤ 주합루에서 본 제월광풍관 전경
- ⑥ 천석정 정면
- ⑦ 천석정 평면도





궁궐건물에서 파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놀랍다.

출처마에 추녀를 사용하고 세살분합문과 머름중방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동측부의 두칸에는 삼면으로 쪽마루를 설치하였다. 동측칸은 마루방이고 그 다음의 한칸반을 온돌방으로 만들고 나머지의 반칸쪽에는 다시 반분하여 벽장과 방에서 누마루로 통하는 복도를 두었다. 이 복도 밑으로는 불아궁을 두어 외부에서 출입하는 판문을 작게 두짝으로 설치하였다. 벽장은 삼단으로 만들고 다시 아래단은 양측으로 반분하여 방에서는 아래단의 한면만 사용하고, 복도쪽에서는 전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천정을 모두 종이만자로 처리하였으나 누마루 부분도 원래가 이같은 반자였는지는 의심스럽다. 마루방과 온돌방 사이는 현재는 개방되어 있으나 문고리를 고정하던 철물과 문을 고정하던 배목의 일부가 남아있는 형태로 보아서



여기에도 전체를 문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굴뚝은 건물뒤의 담장에 붙여 연기가 배출되는 구멍을 지상에 노출시키는 정도로 하고 별도의 굴뚝을 만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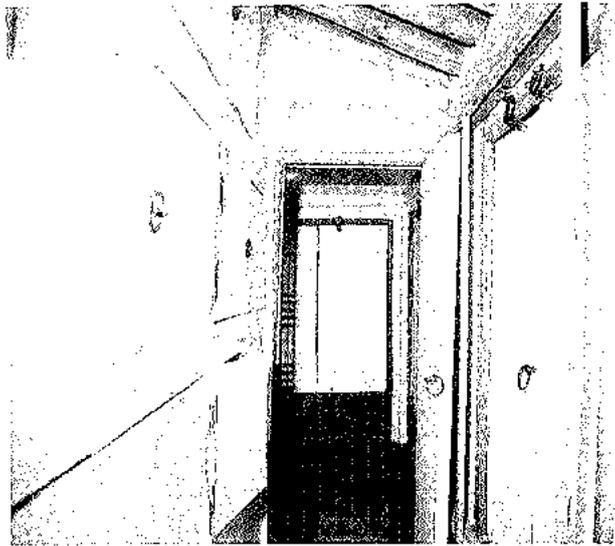
누마루의 삼면에는 머름중방에 분합문을 설치하면서 동측면 만은 중간에 선대를

세우고 우측의 두짝은 세살문으로 하여 전면의 쪽마루와 통하도록 하였고 정면 중앙칸과 비면의 두칸은 두짝 분합문을 설치하고 주변은 회벽으로 처리하였다. 이 건물은 궁궐지에 표현한 바와 같이 5칸반의 건물로 7평 규모이며 남도리에 삼랑구조로서



- ⑥ 전석정 우측면
  - ⑨ 전석정 내부 온돌방에서 본 마루방. 방의 경계부위에 상하인방과 문선의 상태가 별도의 문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 ⑩ 전석정 좌측면과 배면
  - ⑪ 벽장과 복도
- 복도에서 누마루쪽으로 향하여 본 모습. 좌측에 벽장문이 보이고 우측에는 서측벽의 창문이며 중앙부로 제철광풍관의 정면창호 일부가 보인다.

⑩



⑪

취한정과 같이 간단한 구조양식에 단청도 하지 않았다.  
 이 건물에서 생각되는 특징으로는, 첫째로 부속건물의 위계가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주건물인 주합루의 복편 담장가의 높은 지반위에 배치하게 되면서 단청도 없는 소박한 건물로 만들고 있어 시선을 유도하지 않으면서 주합루의 배경이 되는 건물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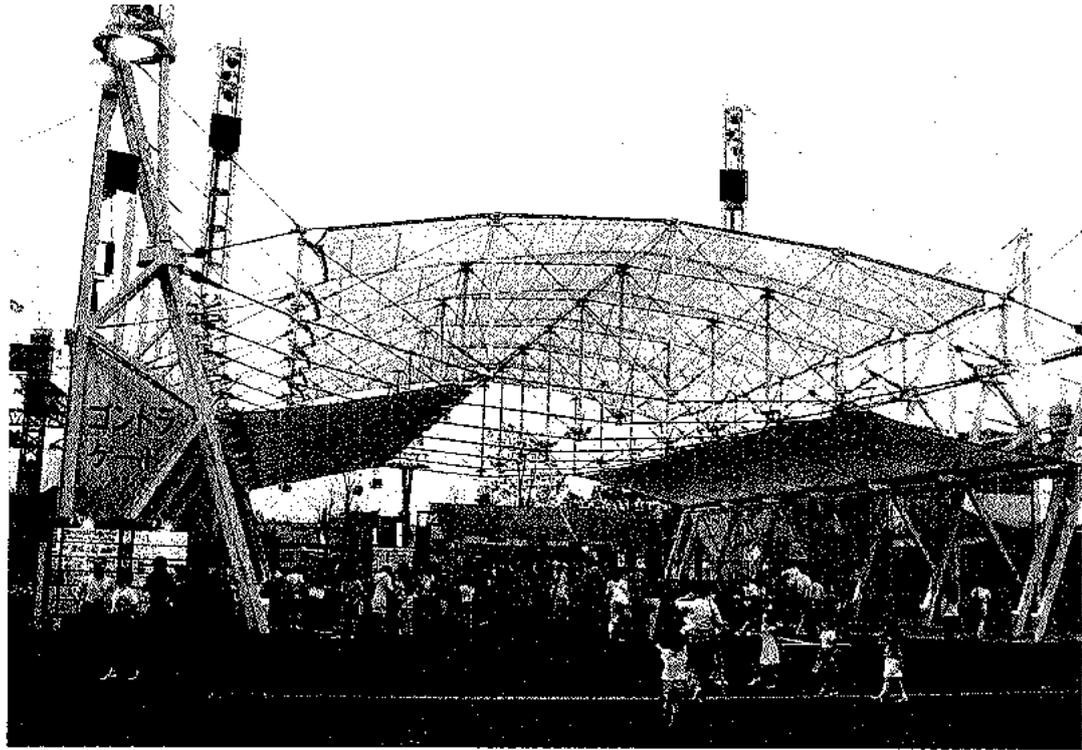
만들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분합문과 판문, 머름중방과 회벽의 기본 소재로 벽체를 조성하면서 각 방향에 따라 독특한 맛을 이루도록 구성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점이다. 정면과 동측면은 이 건물의 사용자를 위한 모습이고 서측면과 배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식한 모습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세계로는 궁궐건물로는 소박한 구조이면서도 누마루 한칸을 전면에 도입하여 외곽적인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다. 재래로 있어온 선비사상의 한 모습을 능숙한 구성으로 건축적으로 표현하면 이와같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궁궐건축이기에 전면부에 사용된 석재가 잘 가공된 장대석 계통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외진 시골의 별당을 생각해 하는 건물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한국적인 건축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소개한 건물에서도 한결같이 흐르고 있는 건물조형 사상의 한 단면으로 생각케 되는 특징들로서 주변환경에 조화되도록 하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모습도 아니면서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구성하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현대건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용하겠는가는 뭐라고 제시하기 어렵지만, 여하간 주어진 규범 속에서 과시함이 없이 기능과 외관에 충실하는 진솔한 기법과 정신이라는 설명밖에 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모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리를 터득해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에 때문이다.

# 일본의 박람회와 건축

## Exposition & Architecture in Japan



“1970년의 만국박람회는, 전후 일본의 발언력의 근본이 그곳에 의존하고 있었던 기술주의적인 문명관의 총결산이었던 것이며, 건축의 면에서 말하면 메타볼리즘 방향의 건축 실현의 장이었던 것이다.”

—스즈끼 히로유키(鈴木 傳之)—

### 1. 박람회의 의의와 분류

「'93대전엑스포」가 국제박람회사무국(B.I.E)의 공식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전문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B.I.E에서 13번째 국제박람회로 공인되었으며 개발도상국으로는 최초로 시행될 대전 엑스포는 과연 국내에서도 박람회 붐을 일으킬 것인가? 자못 기대된다.

88서울올림픽의 성공이후 정부는 그 여세를 몰아 총회시기인 2000년까지는 스페인의 세비아('92년) 및 오스트리아 박람회('95년)외에는 추가공인을 하지않기로 한 B.I.E의 규정을 개정시키면서까지 개최하려는 이 국제박람회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의 경우 70년 오사카엑스포의 개최를 통해 10년 이상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평가된다는 신문의 기사가 떠올랐다. 또한 대전 엑스포에 설치될 과학공원과 기업독립관등도 영구시설로 설치해 대덕단지과 함께 일본의 쓰쿠바를 능가하는 테크노폴리스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는 기사도 생각난다. 과연 우리는

일본을 추월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진철을 밟으려는 것인가 하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된다.

일본이란 국가에서 박람회란 우리의 경우처럼 일상생활과 격리된 것이 아닌 밀착된 행사이다. 그것은 올해 개최중인 오사카 꽃박람회외에도 작년, 즉 89년의 경우 요코하마박람회, 나고야 디자인박람회, 후쿠오카 '89-아시아·태평양박람회, 바다와 섬의 박람회-히로시마 등 한해 평균 6~7개 박람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그러면 박람회란 무엇인가?

박람회란 “산업과 문화의 활동성과를 전시하고 상호이해와 교류를 심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가 이룩한 성취상을 전시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계몽과 대외적으로는 인류상호간 이해증진과 발전을 도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개최효과로 사회문화적으로는 국민적 일체감 고양과 국토의 균형발전, 산업 경제적으로 교역증진과 산업기술 발달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람회의 기원은 기록상에는 B.C 5세기경 고대 페르시아의 국력과 부를

金文德

중앙공업전문대학 교수

by Kim, Moon-Duck

파시하기 위해 개최한 “부의 전시”로 알려져 있으나,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박람회는 1851년 개최되었던 대영박람회가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박람회는 크게 B.I.E(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공인박람회와 비공인박람회로 구분되고 다시 공인박람회는 인류의 과거·현재·미래 등의 일반적인 주제로 개최하며 주최국이 대지를 제공하고 참가국은 자체 부담으로 독립관의 건축과 전시를 준비하는, 1970년 오사카박람회 및 1992년 세비아박람회같은 1종 종합박람회와 제한된 분야의 특정한 주제로 개최되는 1975년 오키나와박람회나 1985년의 쓰꾸바박람회 같은 2종 전문박람회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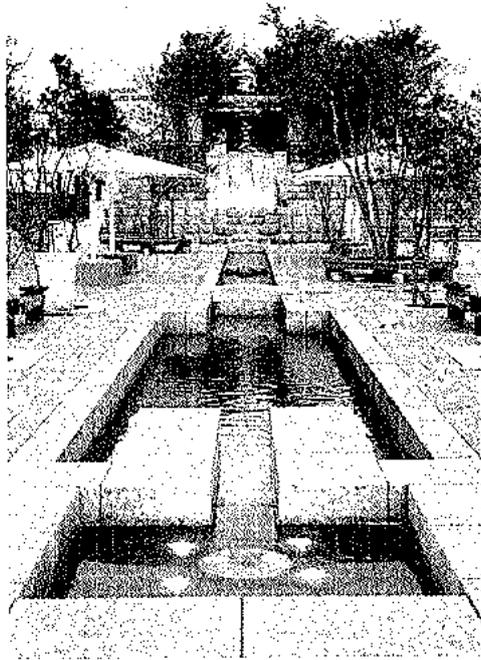
박람회의 다른 유형인 비공인 2종 박람회는 공인 2종박람회와 같은 방법으로 개최되는데 1981년 고베의 포토피아와 1989년에 개최된 요코하마, 후쿠오카 및 나고야 디자인박람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2. 박람회, 일본, 건축

1851년 개최되었던 런던박람회의 금자탑은 조셉 팩스톤(Joseph Paxton: 1803~1865) 설계의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수정궁(Crystal Palace)이었으며 이 수정궁은 근대건축 역명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기념비적인 것이었다. 또한 1889년의 파리박람회의 구스타브 에펠(Gustave Eiffel)의 에펠탑, 가깝게는 1967년 몬트리올박람회의 프라이 오토(Frei Otto)에 의한 독립관과 버킨스터 풀러(R. Buckminster Fuller: 1895~1983)에 의한 미국관, 그리고 모세 사프디(Moshe Safdie)에 의한 야비타 '67은 건축사에 남는 우수한 건축물이었던 것이다.

즉 박람회라는 행사기능상 일정기간 건축하였다가 해체한다는 가설성이 강한 특성때문에 실험적인 건축이 시도되곤 하였으며 그것들이 建築史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곤 했던 것이다.

물론 건축의에도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기회도 마련하여 1853년 뉴욕박람회에서의 엘리베이터, 1862년 런던박람회의 증기기관차, 1878년 파리박람회의 축음기.



① GK가 설계한 요코하마 박람회장의 정문  
② 요코하마 미술관 앞의 조경

그리고 1939년 뉴욕박람회의 텔레비전, 1962년 시애틀박람회의 전자계산기, 1967년 몬트리올박람회에서 멀티스크린의 등장 등 헤아릴 수 없는 첨단기술이 선보였다.

그러면 일본에서 박람회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70년의 오사카박람회, 75년의 오키나와, 85년의 쓰꾸바 등이 일본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한 동시에 건축적으로도 도약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일본에서의 박람회의 역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862년 일본최초의 번역신문이었던 바타비아신문 제1호에는 그 해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만국박을 “전세계 물품의 전시장”으로 소개하였으며 이것이 일본인에게 최초로 알려진 만국박에 관한 정보이었고, 또한 1866년판의 “西洋事情”에서는 박람회가 이보다 자세히 소개되었다. 그중 “메이지 사물기원(明治事物起源)”이란 글에서 박람회란 “서양의 대대회에서는 수년마다 공산물의 대회를 개최, 세계적으로 선포하여 각국의 명산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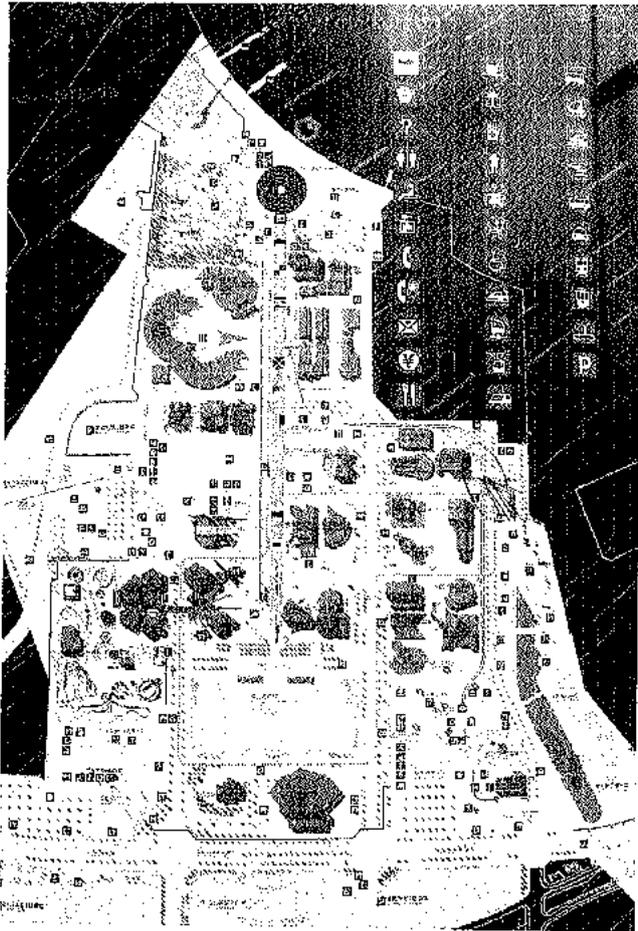
편리한 기계, 奇物을 모아 만국사람들에게 알리며 이것을 박람회(Exposition 또는 Fair)라고 칭한다.”고 박람회를 일본식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일본에서 박람회와 유사한 형식의 행사로 18세기중엽에 시작된 本草會와 藥品會라는 것이 있었으며 이것은 말 그대로 의약품 약품과 천연 약용 동식물류의 전시회였고 이 행사가 현재 일본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박람회의 지역적 토양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 일본은 1867년 파리만박에 참가를 하게 되었으며 메이지 4년에는 도쿄요에서 物産會라는 명칭의 소규모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그 해 10월 교토(京都)에서는 니시혼간지(西本願寺)라는 절에서 본격적인 박람회가 개최되어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연중행사가 되었고, 이 교토의 박람회는 메이지 10년에 개최된 內國勸業박람회로 연결되어 오늘날과 같은 박람회로 이어지게 되었다. 일본현대건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1970년 오사카만국박람회는 1964년의 도쿄요에서 개최되었던 올림픽과 함께 일본의 경제성장의 발달과 산업기술 촉진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으며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 시속 200km이상의 속도를 가진 신칸센(新幹線)이 교토—오사카 간 개통되었다. 이것은 마치 88올림픽 이후, '93 대전엑스포 그리고 98년 완공예정의 경부고속 전철로 연결되는 국내의 과정과 비슷하게 전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우리는 70년대 일본이 누렸던 경제적 번영을 88올림픽과 박람회로 다시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과 기대를 같이 해본다.

건축적 측면에서 70년의 오사카만박은 메타볼리즘 이론의 현실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이소자카의 축제광장, 기쿠다케의 엑스포 타워, 구로가와와 다까라 파빌리온, 도시바 IHI 관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5년 오키나와해양박은 세계 최초로 개최된 해양박람회로, 중심시설이었던 기쿠다케 설계의 해상부양구축물 아쿠아폴리스는 아키텍처의 워킹 시티(Walking City) 계획안(1964)의 해상건축에의 적용으로 70년 오사카만국박에서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회장전체 배치도
- ④ 특이한 상부구조가 보이는 야마모토 리켄 설계의 협회시설
- ⑤ 유계실과 스트리트 퍼니처
- ⑥ 퍼레이드가 행해지는 축제거리에서 본 요코하마 미술관
- ⑦ 고야마 아드리에 설계의 YES 홀 지붕이 두개의 마스트에 매달려 있음
- ⑧ 니폰마루 기념공원의 전망타워와 니폰마루호
- ⑨ 니폰마루 공원과 축제의 거리 사이에 위치한 각 기업 전시관

85년 국제과학기술박람회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던 쓰꾸바박람회는 포스트 모더니에 대두하던 시대조류상, 전시관은 아니었지만 일본에서 포스트 모던풍의 대표적 건축물이었던 쓰꾸바센터빌딩(1983)을 남겼고 90년인 올해 개최하고 있는 오사카 꽃박람회에서는 라 빌레뜨에서 영향받은 폴리 (Folly) 군이 해체주의라는 건축조류를 반영하고 있다.

필자는 일본의 박람회건축을 작년 즉 89년에 개최되었던 요코하마, 후쿠오카 및 나고야 디자인박을 중심으로 그 단면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 3. 요코하마박람회

요코하마박람회는 토오쿄오에서 교통편으로 한 시간이내 거리에 있는 요코하마해변에 “거리조성으로서의 박람회”라는 부세로 89년 3월부터 6월까지 개최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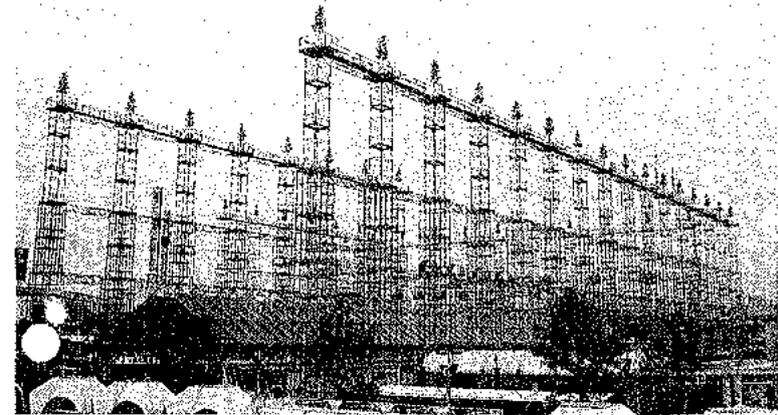
일본에서의 박람회는 단순히 그 지역에서 박람회라는 행사의 개최뿐만 아니라 폐회이후 그 시설 일부의 이용 및 지역 재개발 계획과도 관련시켜 기획되고 있었으며 요코하마박도 “미래항구 21”이라는 개발계획과 연결되어 있어 폐회 후에는 박람회 개최지역이 업무, 상업, 주거기능이 늘어설 곳으로 활성화될 예정이었다.

요코하마박의 주제는 “우주와 어린이들”로 회장계획은 메타블리즘의 구성원 이었던 오오다카 마사토(大高 正人)를 중심으로 하여 행해졌으며 단계 겐조가 설계한 요코하마 미술관을 마스터플랜의 중심축으로 하여 배치가 계획되었고, 이 배치의 기본개념은 폐회 후 재개발된다는 점을 배려하여 기존 도시계획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었다. 박람회의 입지선정과 배치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등 동선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은 대량의 인원을 원활하게 소통시켜야 하는 박람회의 특수성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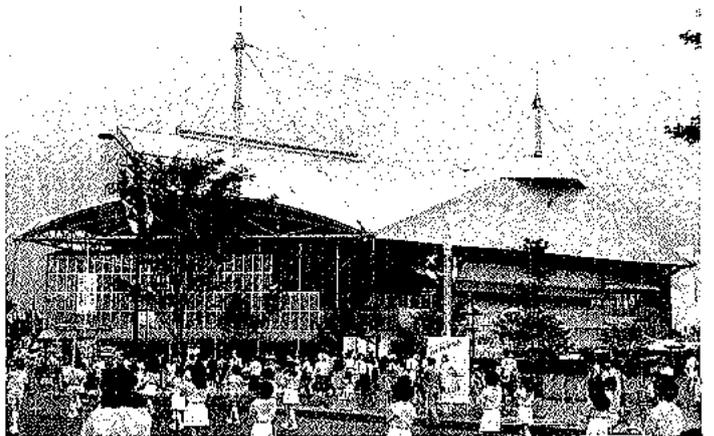
또한 도시적 차원의 세화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토목·조경·건축·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수행되어야 하는 난점도 있고, 일반적 도시 계획과는 달리 변화가 풍부한 축제적 분위기와 제어된 질서를 동시에 갖춘 구성을 취해야 하기때문에 기본회장시설 설계지침을 기본으로 한 동선, 전시관과 가로시설물, 싸인 등에 관한 설계지침과 기준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요코하마박에서는 회장내 전시관의 기본 형태 이미지를 “펄릭 펄릭” 즉 요트의 돛이 바람에 펄럭이는 인상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를 설정하여 해풍, 깃발, 가설성 그리고 경쾌함이 표출되도록 하였고 이 기본이미지에 항구도시 요코하마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국, 마도로스, 문명 등의 이미지가 중합되도록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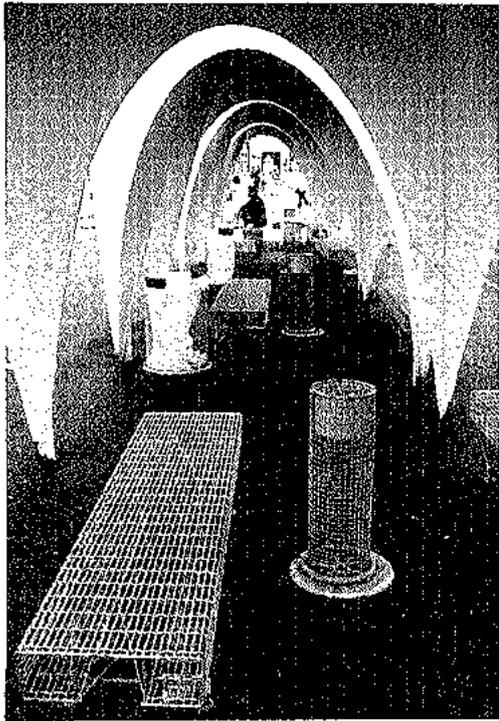
요코하마박의 전시관등을 포함한 시설물 설계에 참여한 건축기들은 고야마 히사오(香山 壽夫), 이토 도요오(伊東 豊雄), 구보가와 테쓰로(黒川 哲郎), 이시야마 오사부(石山 修武), 야마모토 리켄(山本 顯頭)등이며 그외에 산업디자인 분야에 GK 설계, 미국의 사이트(SITE)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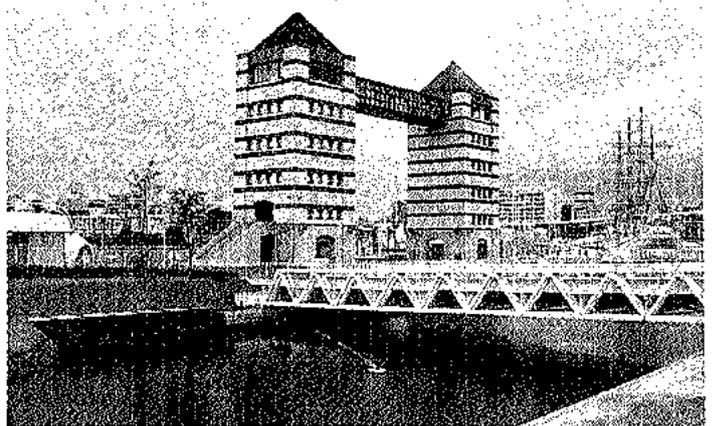
4



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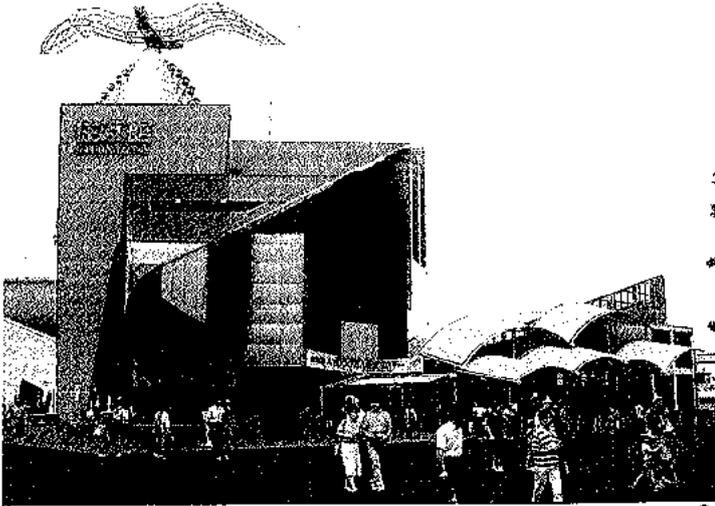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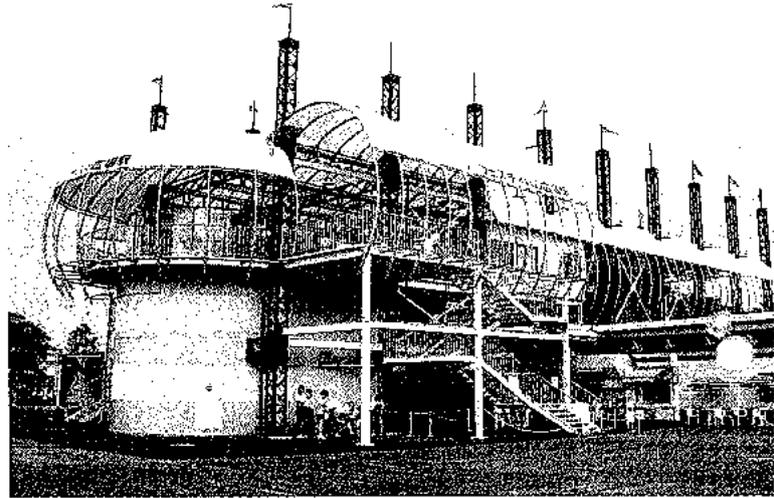
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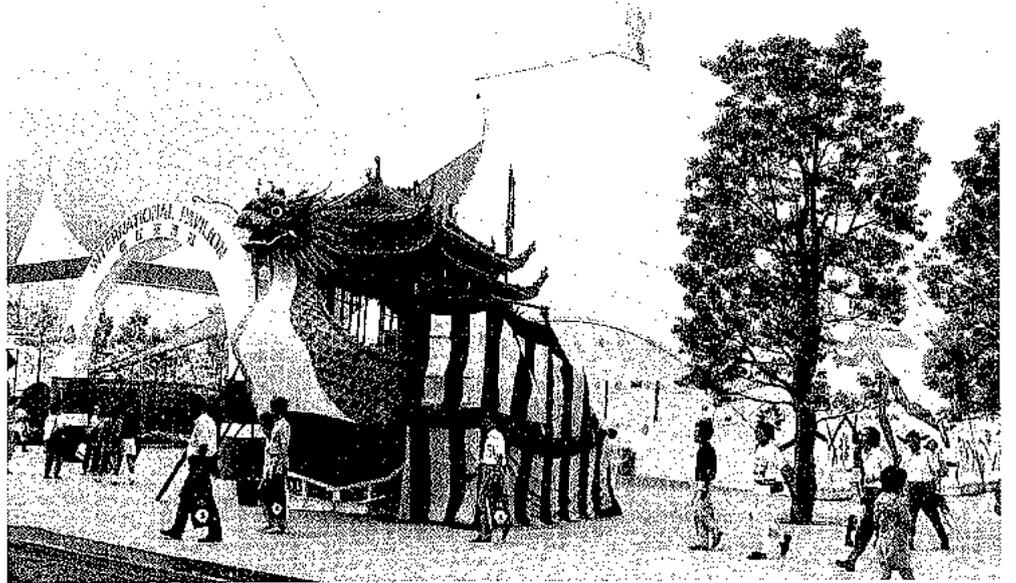


10



11

- 10 스미토모 기업전시관 전경
- 11 모노레일 정거장 전경
- 12 오다카 마사토 설계의 국제교류관 입구
- 13 이시아마 오사우 설계의  
곤도라 개이트 주변시설
- 14 개항기념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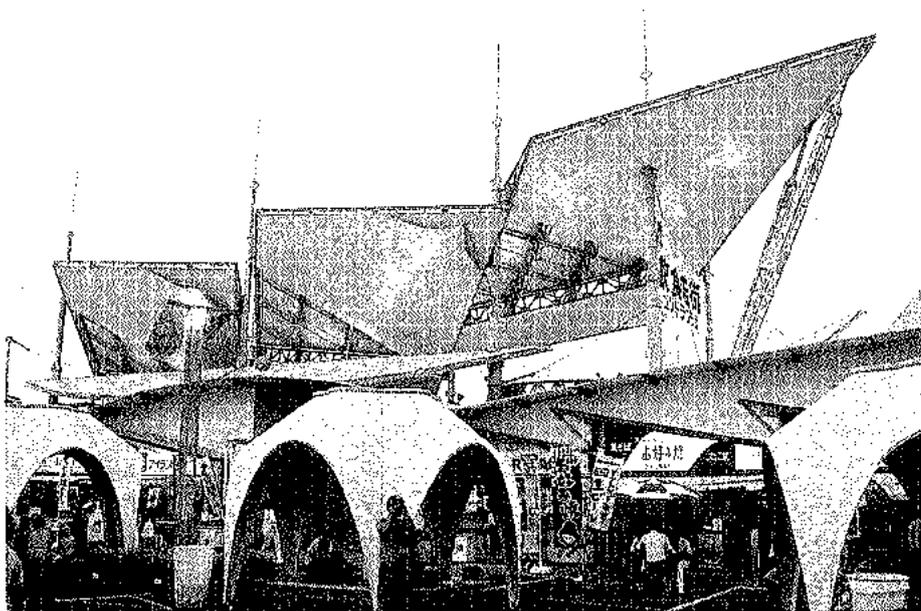
12

조형물 설계에 참여하고 있었다.

박람회장으로의 접근은 육상교통과 선박 그리고 곤도라라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도보로 접근하면 GK에서 설계한 정문이 나타난다. 이 정문은 다카시마쵸(高島町)와 사쿠라지쵸(櫻木町) 두 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구조는 철골과 프리스트레스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붕은 가설성과 펄럭이는 돛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열화비닐코트 폴리에스텔 섬유포로 덮여 있었다. 다카시마쵸 정문 좌측에는 야마모토 리켄이 설계한 협회시설이 위치해

있고 그 기능은 토산매점, 무료휴게소, 디캐팅이었다. 상부구조는 강관비계로 조립된 높이 29m와 17m의 탑으로 탑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 이 가설구조물은 거대하고 투시가능한 벽을 만들어 낮에는 하늘에 용해된듯한 막연한 자태로, 밤에는 조명에 의해 빛나면서 정문과 도입부의 존재를 알리는 시각적 막을 형성한 이채로운 구조물이었다.

정문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곳에 단계의 요코하마미술관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고 이 미술관을 축으로 하여 축세거리가



10



11

설치되어 있었다. 이 거리는 이 박람회장의 상징적인 주도로로 퍼레이드 등 행사가 행해지곤 하였다.

요코하마미술관의 후면(해변쪽이 정면)에는 고야마 히사오 아뜨리에가 설계한 지붕이 덮힌 3천명 수용의 야외극장인 YES 홀(YES = Yokohama Exotic Showcase)이 위치해 있었다. 2개의 마스트에 메달린 거대한 지붕을 가진 이 극장은 마치 거대한 우산이 증력을 잃고 공중에 떠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쾌함이 인상적이었다.

해변을 향하여 축제거리를 비롯한 4개의 도로가 나있고, 박람회장의 좌우측에 요코하마 마리티엄 무제움과 니폰마루(日本丸)기념공원이 위치해 있었다. 설계를 미쓰비시(三菱)에서 한 이 공원과 박물관은 바다를 상징하는 파도문양의 녹지가 선박 니폰마루호를 중심으로 반원형의 광장을 이룬 구성으로 옥상에는 녹지로 이루어진 공원이, 지하에는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고, 4개의 전망타워가 이 공원을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이 공원과 축제거리사이에 십여개이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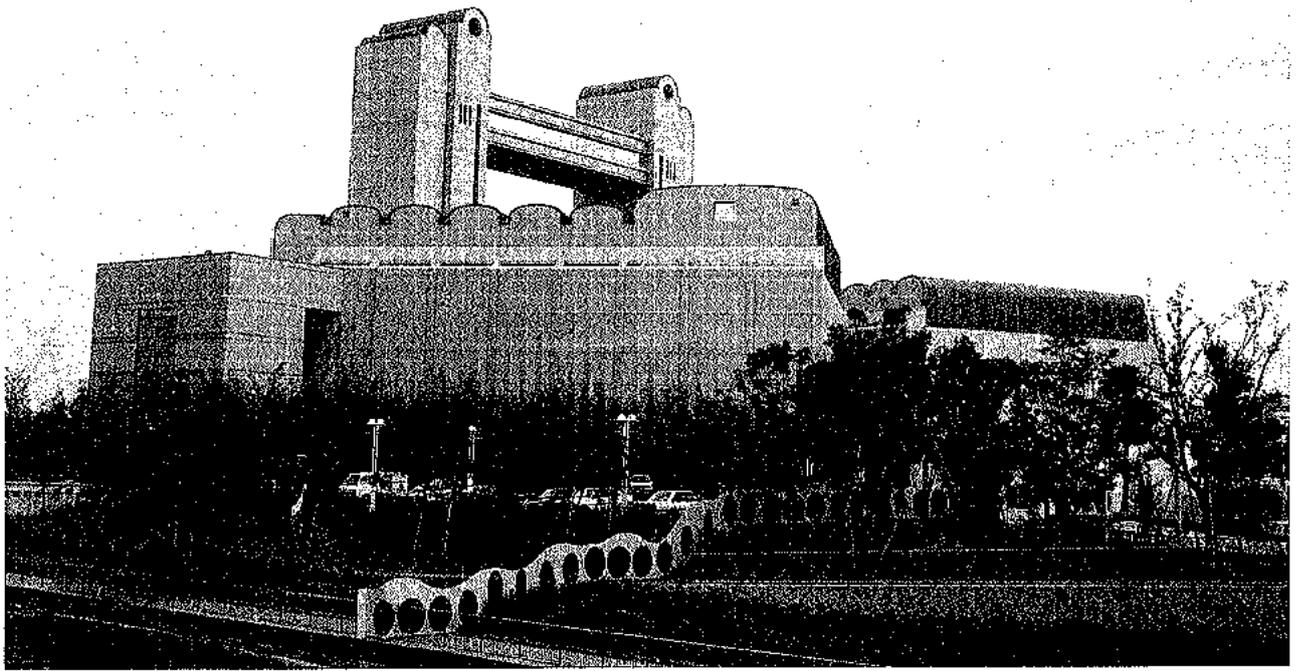
각기업전시관들이 특이한 형태로 축제적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있었으며, 대부분 전시관내부에서는 실물전시가 아닌 영상전시를 주축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느낀 것은 일본의 대기업들이 직접적인 회사의 PR이 아닌 우회적인 PR(실제 영상전시의 내용도 기업 PR과는 상관이 없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전시관으로 출전하는 일본의 풍토가 부러웠으며 이런 토양에 의해 박람회와 건축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축제거리 좌측에는

다케나카(竹中)공무점에서 설계한 주제관이 있고 이 주제관은 인간관, 지구관, 우주관이 스카이워크(Sky Walk)라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우주와 아이들의 꿈”이라는 요코하마박의 주제에서 파생된 하늘과 개천과 積木이라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주제관은 합판으로 외벽면을 조립하여, 어린이들이 만든 토이블록(Toy Block)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이외에도 오오다까 마사토가 설계한 누에형의 국제교류관과 요코하마관, 요코하마 개항 130주년을 기념하여 조성된 개항기념촌, 해변으로 씨버스(Sea Bus)라는 선박을 타고 입장하는 바다의 문 주변시설, 구로가와 테즈로가 설계한 사꾸라지쵸 정문 주변시설, 이시야마 오사무설계의 곤도라로 입장할 수 있는 문의 주변시설 등 헤아릴 수 없는 시설들이 박람회와 가설건축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하였다.

과연 93대전엑스포를 기술도입이 없이 우리의 자력만으로 완벽하게 치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갖게 된다.

이 박람회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가설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차원만이 아닌 스트리트 휘니처(Street Furniture)나 썬인, 조명 그리고 화장실, 쓰레기통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디자인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밤이 되면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에 조명이 들어와 밤에 환상적 분위기와 시각적 설서를 부여한다든지 요코하마 미술관 광장 바닥이 낮에 태양열을 저장한 발광체가 밤에는 별처럼 빛을 발한다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자체만이 아니라 이것이 실현가능케 하는 기술의 뒷받침등 아이디어와 기술이 조화를 이룬 행사가 박람회라는 느낌마저 갖게 하였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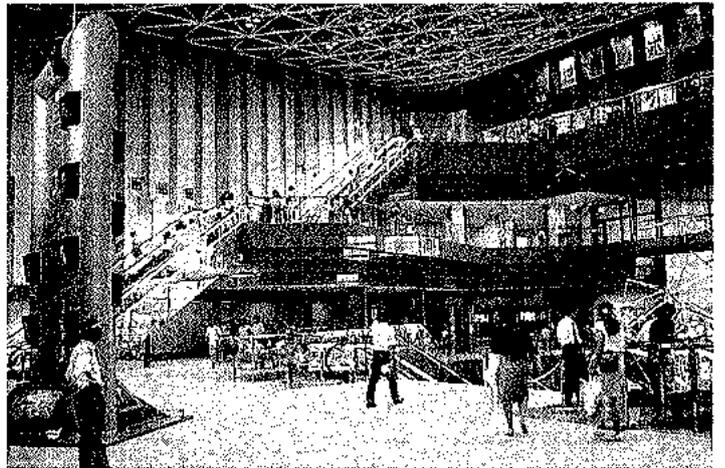
#### 4. 나고야 디자인博과 후쿠오카博

89년 개최되었던 일본의 박람회중 국내에 가장 잘 알려졌던 박람회가 바로 나고야 디자인박람회이다. 그것은 국내 디자인분야에 관계하는 전문가와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홍보예문이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요코하마박 보다는 전시나 시설면에서 한 수 밑이라는 평이었다.

그러나 건축관계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흥미있는 박람회였다.

또한 다른 박람회들이 한 장소에 행해졌던데 비해 나고야성과 백조회장, 나고야항 회장이라는 세 장소에서 행해진 분리형 박람회라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었다. 세 장소로 분리되어있다는 문제점때문에 필자도 백조회장만을 돌아 볼 수 있었다. 백조회장은 백조를 형상화한 주제관인 백조 센츄리플라자, 야외극장, 그리고 히다찌(日立) 그룹관을 비롯한 10여 개의 기업관들이 들어서 있고 여류건축가인 하세가와 이즈코(長谷川 逸子)가 설계한 인테리어관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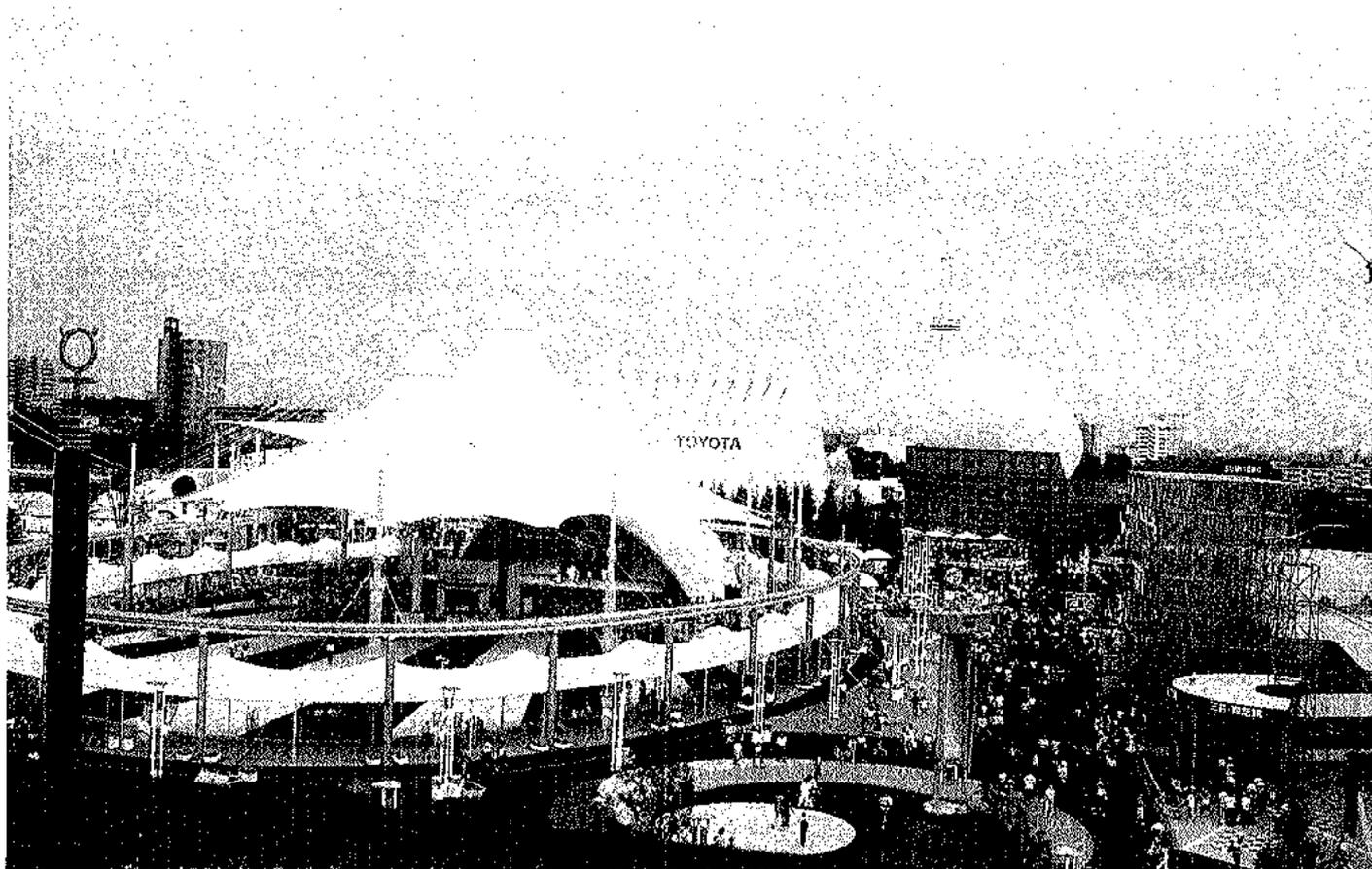
백조회장의 주제는 "21세기와 의 조우"로 테마존, 광장존, 국제존, 수변존, 정원존으로 구성된 선형 구성의 박람회장이었다. 바닥이 도로로 그래픽하게 처리된 납축 정문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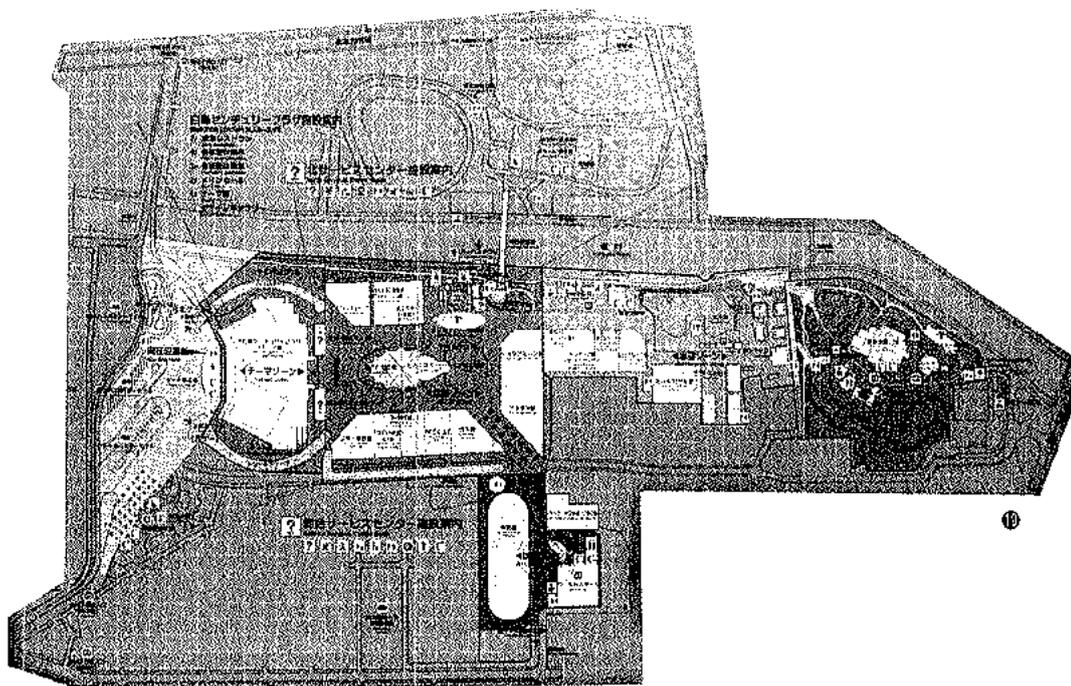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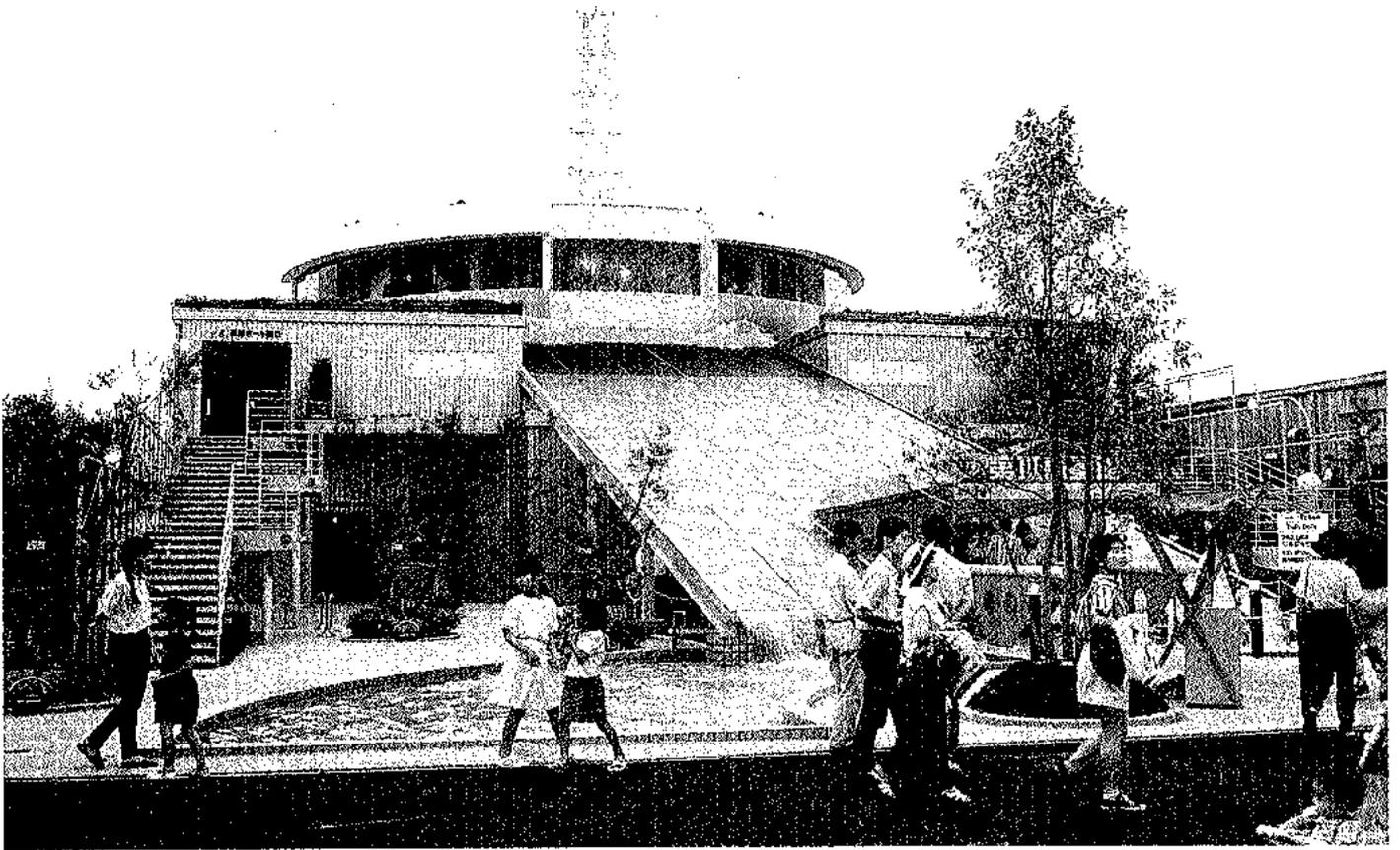
17



11



- 11 주제관이 보이는 백조회장 전경
- 12 주제관 내부전경
- 13 주제관 1층에서 열린 "인간과 건축" 주제의 전시회
- 14 야외극장과 박물관 전경
- 15 백조회장 배치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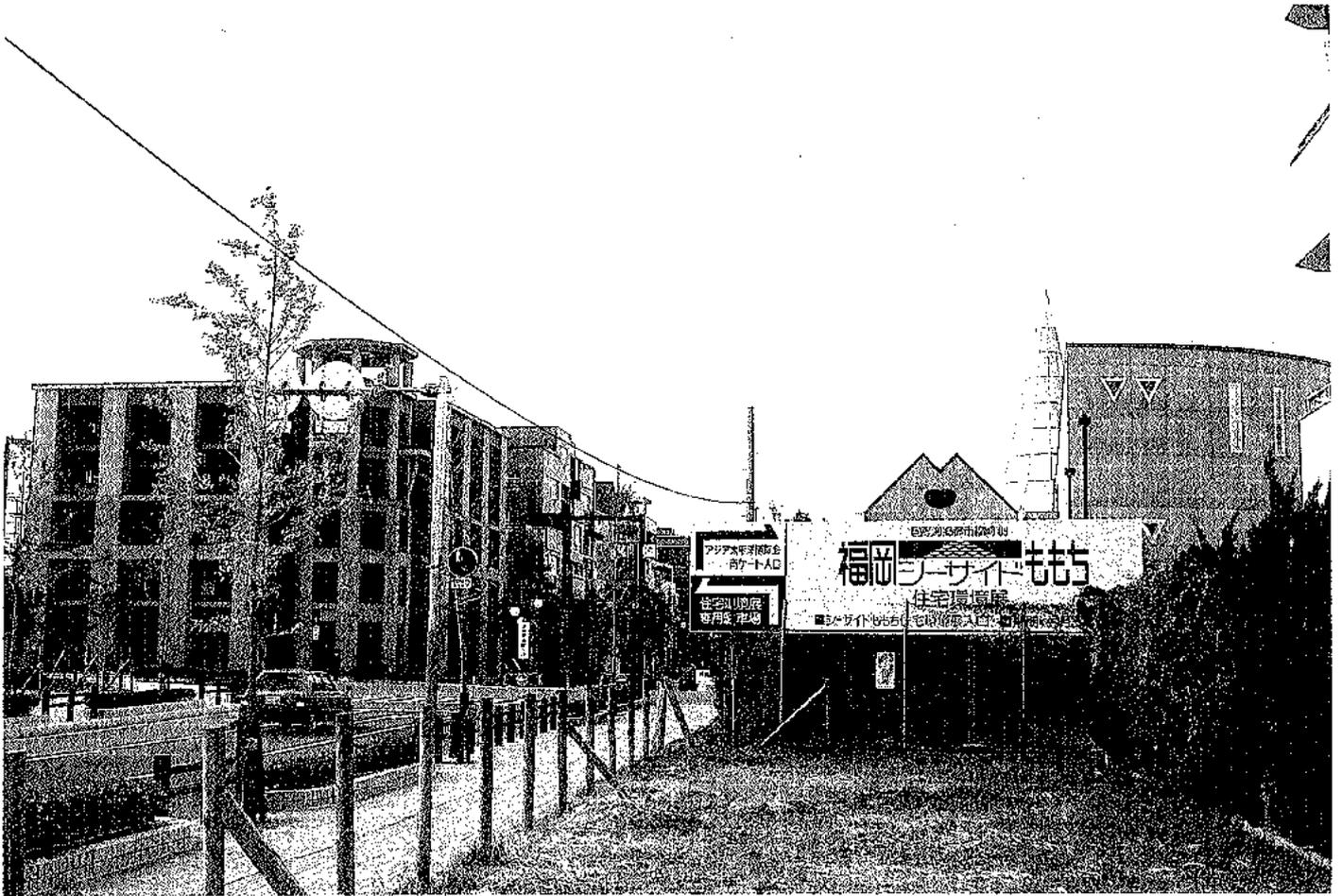
들어가면 주제관인 백조센츄리폴라자가 나오고, 이 주제관 건너편에 잠보트론이 설치된 지붕달린 야외극장이 위치해 있었다. 주제관 내부는 1층에서 “건축과 인간”이라는 주제의 건축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고, 로비부분은 움직이는 로봇 조각이 설치된 4~5층 정도가 오픈된 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실내에서 일부 관람객은 에스카레이터로, 일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며 전망대로 오르게 하여 동선을 분리시키고 있었다.

나고야 디자인파크도 요코하마와 마찬가지로 전시관이 대부분 텐트형 아니면 가설구조물로 된 것은 마찬가지였다. 관객들의 눈을 끌기 위해 콜로세움형의 전시관이나 상부구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특이한 구성을 취한 것도 눈에 띄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박람회 개최하는 과정과 진행에 있어 종합적인 기획과 관리의 중요성을 생각해 하는 박람회였다.

④ 전시관 상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특이한 구성의 전시관

후쿠오카박에서는 박람회 자체보다는 박람회와 병행해 개최중이던 “후쿠오카해변의 도원경”이라는 베를린 IBA 건축전을 본뜬 건축전시회가 더 관심을 끌었다.

미국의 건축가 마이클 그레이브스(Michael Graves), 스탠리 타이거맨(Stanly Tigerman) 그리고 일본건축가인 기지마 아스후미(未島 安史), 요 쇼에이(葉 祥榮), 구로가와 기쇼오 등을 초청해 전시관과 집합주택을 건축하여 전시하고 전시회가 끝나면 두 미국건축가의



21

① 후쿠오카 건축전 전경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작품이 보인다.

집합주택을 분양하는 그런 전시회였다.

후쿠오카에서는 이 전시회 외에도 가사이(香椎)지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드 뽀잠파크(Christian de Pprtchamp), 스페인의 오스카 티스퀘츠(Oscar Tusquets), 미국의 스티븐 홀(Steven Holl), 네델란드의 렘 콜하스(Rem Koolhaas) 등을 초청해 실제 건축물을 지어놓고 전시회를 하는 건축전을 기획중에 있었고, 또한 알도 로시(Aldo Rossi)가 설계한 호텔 일 팔라조(Il Palazzo: 1990)도 올해 완공되어 후쿠오카는

국제건축가들의 경연장이 되고 있다.

이런 국제건축가들의 경연무대로 일본이 부각되는 이면에는 경제적 대국이라는 막강한 부의 축적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IBA 건축전처럼 실제 건축물로 건축박람회를 개최하는 일본의 실상과 조우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내경우만 해도 여건의 미성숙으로 외국건축가가 국내에 건축할 경우 여러가지 잡음이 따르는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건축에 있어서도 그들의 건축이 국제적 수준이라는 자신감에 차있어 오히려 이소자키 같은 건축가가 술선수범하여 후쿠오카의 가사이 프로젝트나 오사카 꽃박람회에 외국건축가들을 대거 초청해 건축적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면서 국내에서도 '93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자신감 있게 국내 건축작품을 국제무대에서 파묘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면서 후쿠오카 박람회회장을 떠났다.

# 새로운 채광수법으로서의 아트리움(5) : 실내기후 조절

## Atrium as Emerging Daylighting System(5): Indoor Climate control

우선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택 규모를 초과한 아트리움 건물은 대부분 기계·전기시스템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화재안전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급기(給氣)를 포함한 화재감지 제어시스템이 필요하다. 아트리움이 갖고있는 패시브한 열성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냉난방공조시스템과 혼합·편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온난한 기후에서 소규모로 된 아트리움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자연 에너지」적인 어프로치로 아트리움 건물을 만들 수가 없다. 매우 더운 기후에서는 완전히 인공적인 환경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아트리움의 효용이 있다. Dean Hawkes 가 「The Architecture of Energy (1982)」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아트리움 건물은 폭넓은 「선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너지의 기술을 건물의 목적과 입자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그것으로는 부족되는 부분은 기계·전기·전자시스템으로서 보충할 수가 있다고 한다.

아트리움은 패적성에 기여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과 대립되는 2가지 자연현상을 지니고 있다. 즉, 온실효과와 굴뚝효과이다. 온실효과는 태양으로부터의 짧은 파장인 열선이 유리를 투과하여 내부의 표면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에서 생긴다. 따뜻해진 표면으로부터 재방사되는 파장은 길기때문에

유리를 투과하지 못한다. 태양열은 이렇게 실내에 집열되어 겨울에는 플러스, 여름에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친다. 굴뚝효과는 고도차(高度差)에 의한 압력작용의 차이로 인해 발생된다. 사방이 차단된 공간에서 공기는 항상 아래쪽 개구부로부터 위쪽 개구부로 흐르며, 개구부로 부는 바람은 흡인효과를 조장한다. 온실효과에 의해 따뜻해진 공기의 부력과 어울려 층고가 높고 차단된 공간에서는 온도차로 인한 공기의 성층(成層)이 만들어지고, 개구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된다. 이러한 2가지 효과를 이용하면 실내기후를 비교적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현실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설비계획을 검토할 때는 먼저 다음 두가지 기본적인 의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부지의 기후는 어떤가? 둘째, 건물용도상의 아트리움의 熱的인 性狀은 어떤가? 아트리움에서 통상적으로 열을 모아야 하는가(난방형 아트리움), 열을 배제해야 하는가(냉방형 아트리움), 혹은 계절에 따라 양쪽을 모두 취해야 하는가(냉난방 병용 아트리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후는 아트리움에서 매우 결정적인 요소이다. 서늘하고 온화한 기후에서의 건물은 거의 1년내내 열을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열대지방의 건물에서는 항상 냉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륙적인 기후의 건축에서는 겨울이면 난방, 여름이면 냉방이 요구된다. 그러나 건축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서는 아트리움에 대해 요구되는 기능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쇼핑이나 사무소 용도의 평면처럼 실 깊이가 긴 건물에서 적어도 코어부분에 있어서는 1년내내 열의 발생양쪽이 필요량보다도 많다. 이러한 경우의 아트리움에서는 태양열을 모으는 것이 오히려 열처리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셈이 된다. 이 경우에는 여분의 내부 열을 배출할 수 있는 편이 바람직하다. 만일 설계를 변경하여 사무소건물의 속깊이를 짧게하여 조명용 전력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면, 같은 기후의 지역에서도 아트리움으로 난방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트리움의 熱性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우선 건물의 용도와 기후와의 상호작용을

金正泰  
경희대학교 부교수·공학박사  
by Kim, Jeong-Tai

야간 냉기는 샤프트를 통해 유입되고 여름철의 열을 아트리움과 암채를 통해 유출시킨다.

북향의 유리는 1년내 서늘한 전공광을 입사시킨다.

겨울철에는 확산(버너)이 내려와 확산되는 태양빛을 아트리움 전체에 퍼뜨린다.

남향의 可動縱型 루버는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태양광을 아트리움으로 받아들여 패시브 난방을 실시한다.

태양열집열기는 온수를 만든다.

작업조명(테스크라이트)과 낮은 레벨의 간접조명은 평방피트당 2와트의 질 높은 조명을 공급한다.

격자 여름철에는 차양장치 역할을 하여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남쪽의 태양광을 유입시킨다.

멋진 계단은 이용하기 쉽다.

발코니는 명쾌한 동선이며, 또한 전망이 좋다.

아트리움에는 햇살과 전망이 좋다.

'配管 (Ladder)' 부분은 사무실의 동선부와 건축설비의 동맥이 된다.

서늘한 야간의 외기는 실내를 돌며 노출콘크리트 구조에 그 전날 흡수된 열을 제거해 준다.

중정은 교통로, 휴게소, 식사공간, 만남·집회의 용도로 이용된다.

안에 팬을 내장시킨 길다란 캔버스트руб는 공기의 상하온도 폭을 감소시킨다.

암상은 축냉의 열 용량을 증가시킨다.

노출 콘크리트구조는 여름철에 조명, 재실자 및 설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한다.

반사성 배네시안 블라인드는 글레이어를 차단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일광을 전장으로 반사시킨다.

동쪽과 서쪽으로 면하는 부분에는 천으로 된 차양장치를 내려 아침과 저녁의 태양광을 차단하고 평소에는 감아올려 전망을 즐긴다.

#### 일반상황

겨울철 난방부하는 대개 조명, 재실자 및 설비기기의 발생열로 인해 감소된다. 여름철 냉방부하의 70%는 '야간의 환기'로 처리된다. 이 환기는 새크래먼트의 전형적인 야간의 서늘한 공기를 건축물 내부로 유입시킴으로써 콘크리트구조체의 온도를 낮추고 다음날을 위해 '蓄冷'을 한다. 암상으로 인한 '축냉탱크'는 연간 냉방부하의 23%를 처리할 수 있다.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방향을 설계로 전개하기 전에 결정해야 할 또 한 가지의 기본적인 문제는 아트리움 공간 그 자체에 어느 정도의 쾌적성을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쾌적성의 제어에는 4가지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사방이 차단되지 않은 간단한 캐노피(天蓋), 둘째는 쾌적제어를 실시하지 않는 사방이 차단된 공간—기본적인 완충공간, 세째는 식물이 말라 죽지 않을 정도의 기후제어를 하는 공간—기후가 제어된 완충공간, 그리고 끝으로 인간의 쾌적기준에 맞도록 사방이 차단된 공간이다. 여기서 기본적인 완충공간이 가장 에너지 절약적이다. 완전히 기후가 제어된 아트리움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만 그래도 아트리움이 없는 경우에 비하면 에너지비용이 적게 든다.

아트리움과 주위공간 사이의 칸막이는 아트리움의 쾌적성에 대한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격이 변화한다. 이것과 함께 바람직한 아트리움 외피의 조건도 달라지며, 공기를 다루는 사고방식도 달라진다. 보통

#### 1 Geoffrey Bateman 빌딩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1981년.  
종합적인 에너지 절약 디자인의 특성을 가진 아트리움 건축, 주립건축설계사무소 설계.

생각할 수 있는 공기의 취급방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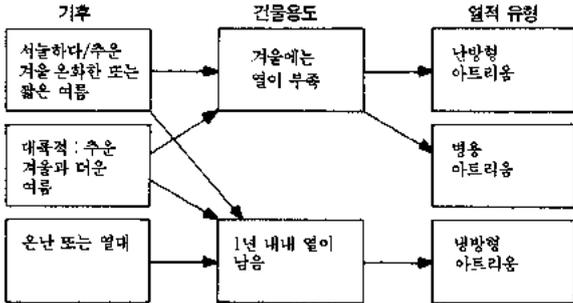
1. 거주공간의 환기와 아트리움을 완전히 분리한다.
2. 신선한 공기는 아트리움을 통해 받아들여지만 기타는 분리한다.
3. 오염되지 않은 還氣를 아트리움으로 내보내지만 기타는 분리한다.

4. 아트리움을 거주공간에 대한 공기공급의 플리넘(plenum)으로 삼는다.
5. 아트리움을 還氣의 플리넘으로 삼는다.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은 아트리움의 유형과 쾌적성의 레벨에 따라 분류하여 표에 실었다.

#### ■ 난방형 아트리움

난방형 완충 아트리움은 태양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흐린 날이 오래 계속되지 않는한 외부보다 적어도 5°C 정도는 기온이 높다. 흐린 날에도 주위 공간으로부터 아트리움으로 열이 유출되기 때문에 낮 동안은 외기온도보다 1~2°C는 높다. 따라서 주위 공간의 난방기간을 단축하여 연료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난방의 피크에 대처하기 위해 난방시스템의 규모 그 자체를 작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는 다른 에너지시스템과 동일하다.

난방형 아트리움은 북유럽 나라들에게



열적유형	패적유형				단열위치
	캐노피	완충	기후를 제어한 완충	원전공간	
난방형	외벽과 동일 여름철에는 차 양을 달 수 있다 없음		낮춤다	벽이 필요 없음	아트리움 내부벽
		선택의 여지	올린다	고성능 차양 달 수 있을 것	아트리움 외피
냉난방 겸용	일반적인 외벽 없음	선택의 여지	낮춤다	벽이 필요 없음	아트리움 내부벽
	여름철에는 바 깁쪽에서	차양을 설치할 수 있을 것	올린다	고성능	아트리움 외피
냉방형	없음	없음	없음	벽이 필요 없음	아트리움 내부벽
	차양만	외부에 차양을 설치할 것	없음	없음	아트리움 외피

성능의 레벨	패적의 유형	예
외부와 동일 공기는 자유롭게 왕래	大窓(캐노피)	Galleria, Milan Brunel Plaza, Swindon Antoine Graves houses, Atlanta
겨울에는 공기를 가두어 두며, 외벽과 차양 여름에는 자연환기	완충	Trondheim University Swansea Quadrant Centre
최저 기온 7도에서 13도를 유지하기 위해 난방, 온도변동이 큼	기후를 제어한 완충	Alira North, Toronto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Gregory Bateson Building
정상적 거주공간과 같은 공기조화	완전한 기후제어	Royal Bank, Toronto Coutts Bank, London Hyatt Hotel, O'Hare, Chicago

	패적유형				열적유형
	캐노피	완충	기후를 제어한 완충	원전공간	
관계없음	표준적	표준적	가능	없음 독립공간으로서 행세할	난방형 병용 냉방형
아트리움을 통하여 외기를 유입	영향없음	여름철 OK 없음 겨울철 OK	여름철 OK 없음 겨울철 OK	없음	난방형 병용 냉방형
아트리움을 통하여 역할	거의 영향 없음	유효	유효	없음	난방형 병용 냉방형
給氣	없음	없음	없음	가능 유효	난방형 병용 냉방형
遠氣	없음	없음	태양열 집열 유효	유효	난방형 병용 냉방형

가장 관심 깊은 유형이다. 북유럽에는 겨울의 가혹함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서늘하며 흐린 날이 많은 봄·가을과 짧고 번덕스러운 여름이 공통적이다. 이곳에서는 1년중 9개월은 난방이 필요하며 따뜻한 날씨가 환영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건축계획 건설 및 용도에 따라 특별한 필요성이 발생되지 않는한 공기조화는 불필요하다.

앞의 두가지 요인은 설계자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시작된 이후 조명이나 난방에 필요한 전력량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위해 필요시 熱需要가 증가되는 것도 용인했다. 열은 값싼 1차에너지에 의해 공급할 수 있으며 또는 단열을 많이 하거나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열수요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 ■ 형태와 外裝

이상과 같은 기후의 지역에서는 건축 형태가 통상적으로 저층이며 공간배치를

재미있게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세계의 표준과 비교할 때 저밀도 개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유럽에서의 낮은 태양고도와도 일치된다. 수평선으로부터 10도 정도의 낮은 태양고도는 건축에 유효하기 때문에 남중축으로부터 20도 이내의 방위에 수직으로 세운 유리계의 가로벽이 아트리움으로서 바람직하다. 만일 유리를 지붕에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남쪽으로 면한 모니터형을 사용하면 더 많은 태양광을 실내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아트리움내에서 완전한 쾌적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태양광이 많이 유입되어도 상관없다. 만일 전전적인 쾌적함이 요구될 경우에는 높은 각도의 태양광은 남쪽 벽의 차양으로 쉽게 차단할 수가 있다.

아트리움 내부의 벽과 바닥은 축열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태양이 비치고 있을 때는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반면에

짧은 동안의 흐린 날씨에는 실내로 열을 방출하여 실내를 따뜻하게 해준다. 스웨덴에서 Goran Lundquist 가 수행한 연구(Camera Solaris, 스톡홀름, 1980년)에 따르면 아트리움의 내부에서 축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야간의 온도는 2°C 정도 높여주고, 반대로 낮동안의 피크온도는 2°C 정도 낮춰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벽의 색채는 밝은 쪽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태양광을 반사하는 편이 열을 흡수하는 것보다 질 높은 에너지(즉, 전기)를 절약해 주기 때문이다. 아트리움을 둘러싸고 있는 벽의 단열 수준은 아트리움에서 요구되는 쾌적함의 정도와 아트리움 외피의 단열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난방형 아트리움에서는 아트리움 외피의 단열 성능을 양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열은 태양에 면하는 가로벽이나 모니터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붕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열은 측면보다도 윗방향으로 더 빨리 유출되기 때문에 따뜻해진 공기는 지붕아래에 피기 때문이다.

맑은 겨울 밤하늘에는 방사냉각에 의해 아트리움의 열을 외부로 유출시켜 아트리움은 외기온도보다 낮아진다. 단열유리가 열적으로는 충분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대신 빛의 투과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이러한 유리를 사용하는 대신 야간용 서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은 천으로 만들거나 또한 접을 수 있는 재료면 충분하다. 특히 완전한 쾌적성을 지향하는 아트리움에서 이러한 야간용 서터는 매우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

### ■ 겨울철의 환기

패시브형 완충 아트리움에서도 겨울철에는 공기순환이 바람직하다. 공기가 정지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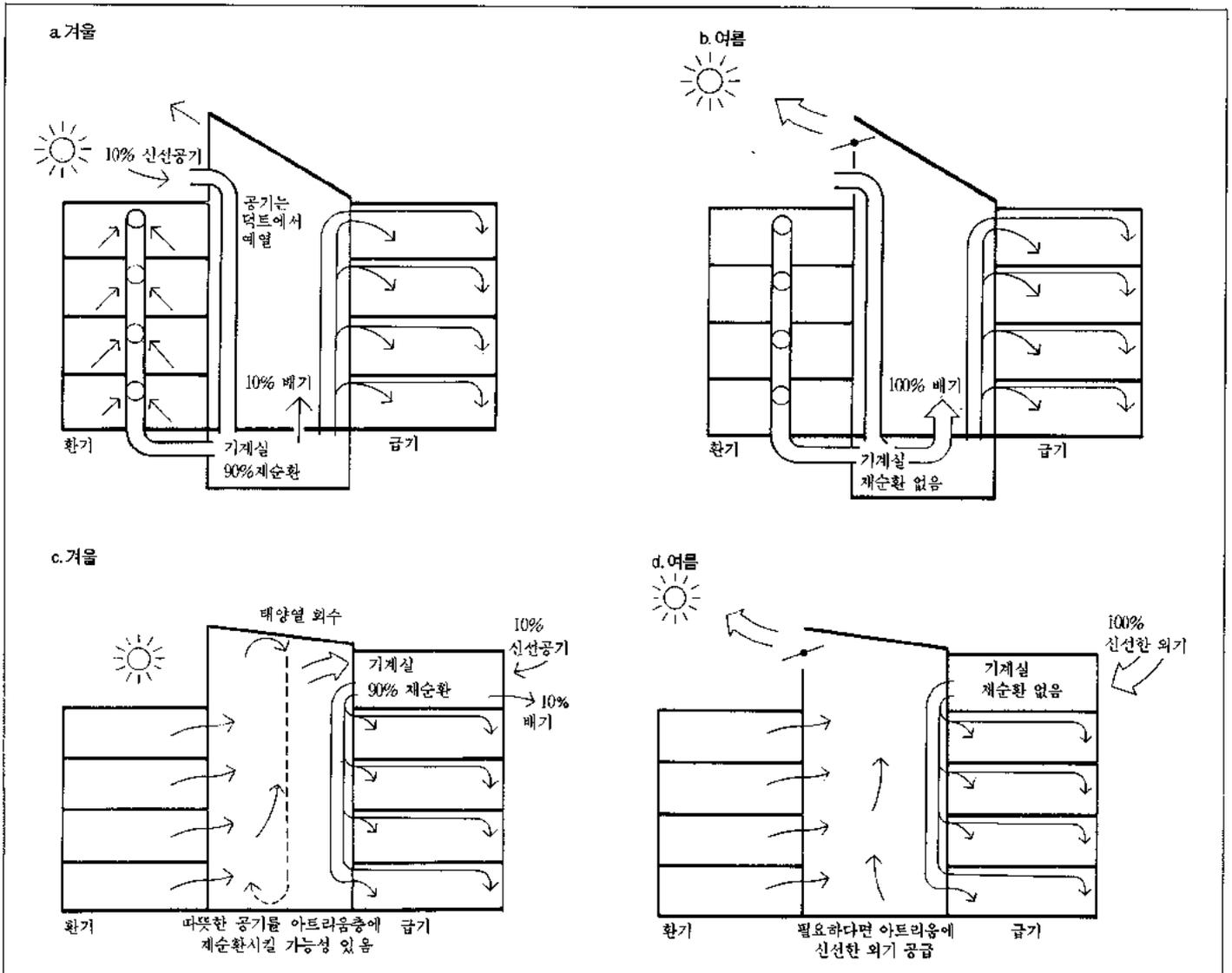
있으면 온도성층이 발생하여 차가운 공기가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체류하고 난기는 지붕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만일 아트리움과 거주공간의 환기가 별도 계통이라면 저속팬을 이용하여 덕트를 따라 공기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림으로써 효과적인 공기 믹싱이 달성된다. 덕트는 상하 모두 뚜껑 없이 그저 천으로만 된 원통을 공중에 매는 것만으로 족하다. 일반적으로는 그것만으로 효과가 있으며 이것은 또한 장식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만일 식물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경우에는 아트리움과 건물의 환기시스템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열을 회수한 뒤의 깨끗한 공기를 아트리움에 방출하면 건물쪽 본체에는 아무런 부담도

- ② 아트리움의 열적유형 선택방법
- ③ 쾌적성의 선택방법
- ④ 환기방법의 선정방법
- ⑤ 단열과 차양방식 결정방법
- ⑥ 난방형 아트리움

a와 b는 완충 아트리움의 환기전략을 나타낸 것이다. 겨울철에는 열회수 후에 그곳으로 배기를 방출하기 때문에 아트리움은 약간 따뜻해진다. 여름철에 아트리움은 배기의 상승과 보조적인 자연환기에 의해 냉각된다.

c와 d는 온도조절을 하는 완충 아트리움의 전략을 나타낸 것이다. 덕트의 수는 보다 적어도 되지만 열은 더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햇살이 비추는 기후인 곳 이외에서는) 겨울철에는 아트리움 전체가 난방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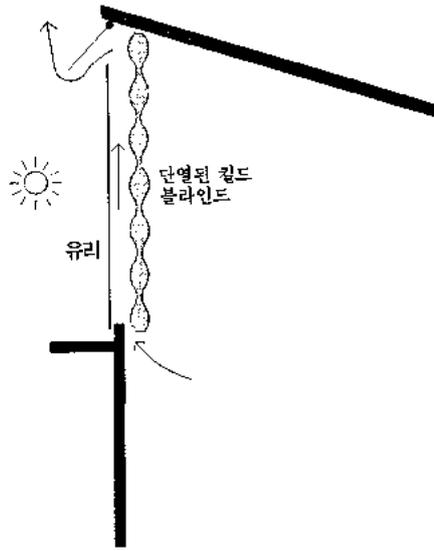
주지 않고 몇 도의 온도 상승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후를 제어한 완충 아트리움에서 기온이 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설비시설을 아트리움 아래에 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열이 전달되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겨울철 주말이나 휴일에 아트리움을 어느 최저온도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업난방이 필요하다.

만일 아트리움 내부에 완전한 쾌적성을 요구한다면 이미 그 아트리움은 엄밀하게 볼 때 완충공간이 아니다. 이 경우 태양열은 보다 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환기도 보다 더 세련된 수법을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아트리움을 건물의 환기시스템 가운데 일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아트리움을 還氣플리넘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수법은 태양열을 유입시킬 수 있고 음식물의 냄새도 처리할 수 있다. 사실 아트리움은 흔히 식당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상과 다른 방법으로 아트리움을 따뜻하게 하려는데에는 문제가 있다. 즉, 난방을 하지 않으면 냉각된 아트리움의 거주 범위에 따뜻한 공기를 공급하면 차가운 공기가 위에서부터 주기적으로 내려와 따뜻한 공기덩어리를 밀어내게 된다. 물론 방사난방도 가능하지만 식물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 ■ 여름철의 대응

난방형 아트리움은 여름철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 두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완충 아트리움 주위의 거주공간은 아트리움 유리면의 실내측에 블라인드를 설치함으로써 경제성을 손상하지 않고 일광을 차단할 수 있다.

베네치안 블라인드는 일광을 투과시킨다. 즉, 아트리움 자체가 차양역할을 하게 하는 내부 블라인드는 아트리움에서보다 높은 수준의 쾌적함이 요구될 때에만 필요하다. 둘째, 온실효과와 굴절효과를 아트리움 단독이나 또는 건물 전체의 입장에서 환기를 유발요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름철의 환기방침은 그림 6b/d에 실려있다. 차양과 환기는 '솔라 쿨뚝'의 개념에 따라 통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아트리움을 만드는데 효과적이다. 태양광이



입사하는 아트리움에서는 아트리움 공간의 정상부분에 日氣를 모으는 공간(공기가 모이는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거주범위보다 상부에 설치해야 하는데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면 기계설 레벨에서 처리해야 한다.

열은 회수되거나 재이용 되거나 혹은 방출된다. 그리고 공기가 모이는 부분은 연가를 제어하는 역할도 한다. 초기의 많은 아트리움 건물은 이러한 공기가 모이는 부분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층에 따라서는 너무 더워 견딜 수 없었다.

### ■ 냉난방 병용 아트리움

병용 아트리움은 겨울철에는 난방형 아트리움의 기능을 해야 하고 여름철에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어수단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아트리움 그 자체에 전면적인 쾌적성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아트리움 내부에 대한 태양의 영향으로 거주공간의 온도가 상승하고, 그 결과 비현실적일 정도의 환기회수가 아트리움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아트리움의 유리에는 옥외용 차양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겨울철의 태양고도가 낮은 태양은 받아들이고 여름철의 높은 태양은 차단하도록 고정해도 되고 조절가능하도록 가동식으로 해도 된다. 가동식 차양은

장점이 많지만 값이 비싸다. 그러나 가동식은 겨울철의 야간 단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태양을 아트리움 내부로 유입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차양 셔터는 건물의 외피가 갖추어야 할 단열성능중의 일부를 대체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콜로라도의 태양에너지연구소(SERI)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가진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단열성능을 갖추고

#### ⑦ 솔라 쿨뚝

만일 여름철에 배기를 위해 보조적인 힘이 필요한 경우, 유리 뒤쪽에 놓인 단열 블라인드가 강한 상기류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아트리움의 공기를 밖으로 유출시킬 수가 있다.

#### ⑧ 난방형 아트리움 :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성능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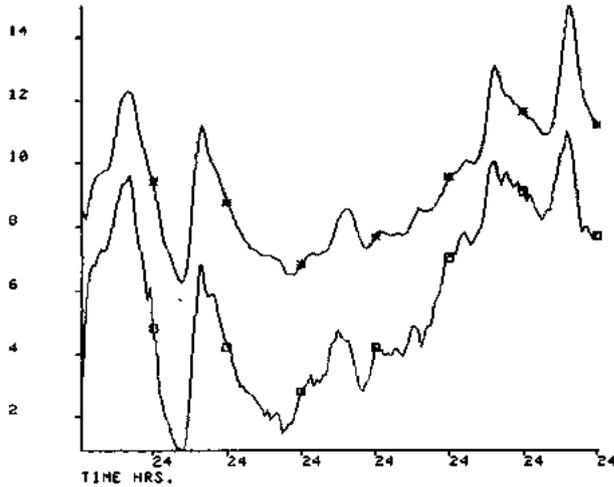
아트리움의 거동에 대한 완전한 모델은 지금까지 완성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건물에 이용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트리움의 갖가지 배치나 건설방법의 영향을 조사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ESP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외기온도와 아트리움 내부온도를 영국의 전형적인 겨울조건에서 검토했다.

a. 1월 13일~19일 : 4면이 덮힌 완충 아트리움. 지붕으로부터 채광, 단층유리, 거주범위는 벽을 단열, 틈새바람에 의한 환기만 고려. 겨울철의 약한 태양은 거주범위에서 나오는 열과 표면의 공기층이 흩어지지 않는데에서 나타나는 단열효과에 상승에 따라 아트리움 온도를 2~4°C만큼 외기보다 올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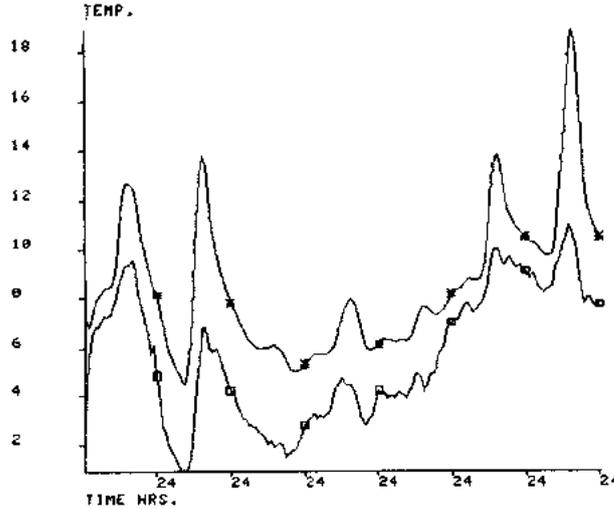
b. 1월 13일~19일 : 3면이 덮힌 완충 아트리움. 남쪽 면과 지붕으로부터 채광, 이중유리, 거주범위는 단열, 틈새바람에 의한 환기만 고려. 창면적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 태양의 은해는 지붕면이 유리일 때보다 적으며, 어딘가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중유리 때문이다. 아트리움은 1.5°C에서 3°C정도 외부보다 약간 기온이 높지만 낮동안에는 기온 변동이 심하다.

c. 3월 6일~12일 : 3면이 덮힌 완충 아트리움. 남쪽 면과 지붕으로부터 채광, 기타 시방은 위와 같음. 중간기에 아트리움의 야간기온은 4°C에서 6°C 높고 난방부하가 감소된다. 낮동안 아트리움 내부온도는 20°C를 넘기 때문에 환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같은 조건이라도 지붕면으로부터 태양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낮동안의 기온은 4~5°C정도 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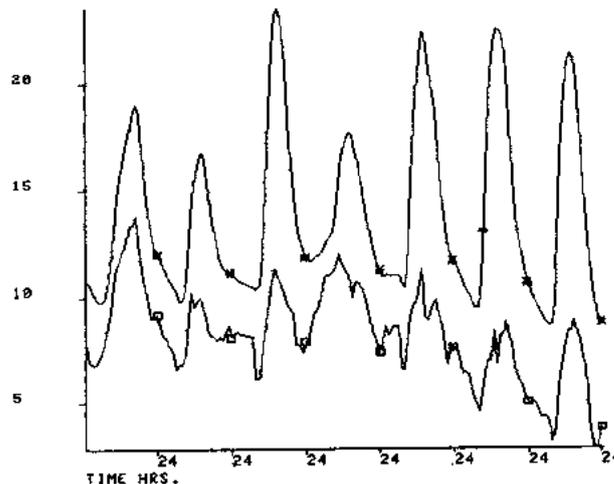
1/SIMULATION NO. 1 OUTPUT PERIOD FROM 13, 1, 1 TO 19, 1, 24  
TEMP.



SIMULATION NO. 1 OUTPUT PERIOD FROM 13, 1, 1 TO 19, 1, 24



SIMULATION NO. 1 OUTPUT PERIOD FROM 6, 3, 1 TO 12, 3, 24  
TEMP.



있다. 이 건물의 아트리움은 병용 아트리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SERI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름철 야간대책은 서늘한 공기를 아트리움의 排煙팬에 의해 건물의외의 空隙을 통해 실내로 유입시키는 방법이다. 노출된 구조체를 預冷함으로써 이튿날의 방사온도를 낮추게 하여 기온이 높아져도 참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보다 값싸며 조절 가능한 장치로서는 솔라 굴뚝의 변형이 있다. 겨울철에는 단열 킬트(gilt)를 북향 유리에 매달고 여름철에는 반대로 태양을 차단하도록 움직이는 것이다.

### ■ 냉방형 아트리움

기후나 건축용도상 고온, 고습, 강한 태양광을 방지할 경우, 아트리움은 빛을 차단하며 차가운 공기를 축적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다. 습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는 강력한 자연환기를 이용하여 쾌적성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즉, 굴뚝효과, 윈드 스쿠프 또는 솔라 굴뚝 현상을 이용하여 거주범위에 강한 자연환기를 초래하기 위해서 「팬 파워」를 아트리움이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따뜻하거나 또는 더운 지역의 아트리움 건물은 대개 공조설비가 달린 「완전독립형」의 기후제어 방침이 채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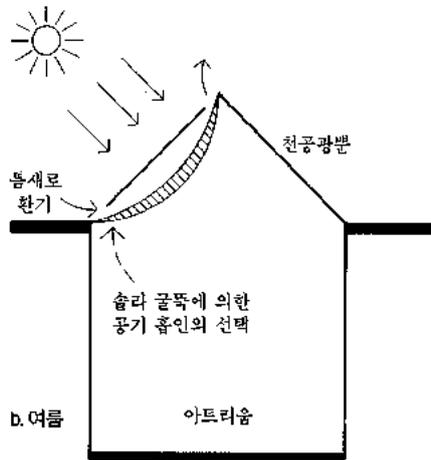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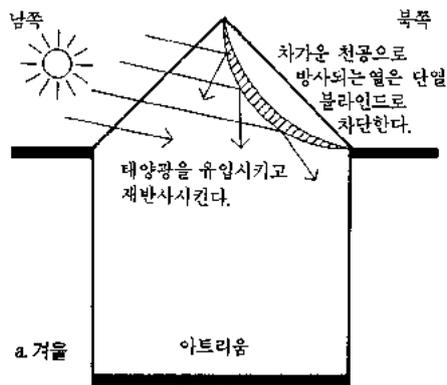
이상적인 냉방형 아트리움의 기본적인 요인은 난방형 아트리움과 정반대이다. 태양은 「악센트 채광」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리는 완전히 태양광을 차단하거나 혹은 북향으로 위치해야 한다. 햇살이 강한 기후에서는 간접채광, 반사에 의한 확산, 색유리에 의한 선택채광이나 막구조 등을 권장할 수 있다.

낮동안 아트리움은 차가운 공기를 공급하는 대형 냉장고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하루의 고저온도차가 큰 곳에서는 전날 밤의 서늘한 공기를 열의 완충으로서 사용해도 되지만 환기에 이용할 필요는 없다. 이 어프로치는 이슬람건축의 개방형 중정이 갖고 있는 전략을 본받은 것이다. 즉, 야간의 공기는 깊은 중정에 모여 벽을 냉각시키고 이튿날의 온도상승 속도를 완화시킨다. 일반적으로 아트리움은 급기 또는 還氣플러넘의 역할을 한다.

給氣플리넘 기법은 이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으며, Portman 과 설비기술자인 Britt Alderman 은 이원리를 따듯한 기후 지역의 호텔에서 채용했다. 건물 전체에 대한 1차 공기 공급은 웅덩이 된 아트리움에 의해 이루어진다(그림 10참조). 포트만은 이 개념을 사용하여 아트리움 단면의 정상부 또는 중앙으로부터 공기 공급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배연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맨아래에서부터 실시해야 한다. 포트만에 따르면 이와같이 공기를 순환시킬 때 아트리움 내부의 기온은 맨 위와 아래의 경우 화씨 온도로 4도밖에 차이가 없다고 한다.

급기플리넘 개념이 많은 물 유형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기계실이 분산배치된 사무소 공간에서는 아트리움으로 공기조화된 급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경우 아트리움은 완전히 폐쇄해지며 또한 필요에 따라서 인접된 공간을 아트리움으로 개방할 수도 있다. 연기제어수법은 이것과 호환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호텔·사무소·쇼핑센터 등에서 흔히 사용되듯이 만일 아트리움층을 식당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을 타고 식품 냄새가 다른 층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냉방형 아트리움의 외피 단열은 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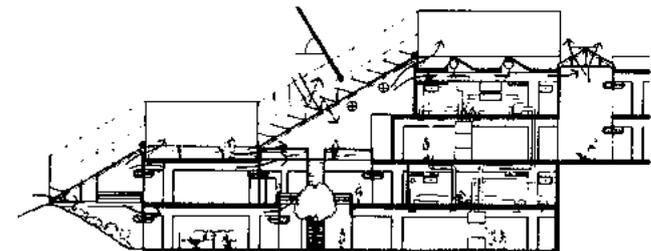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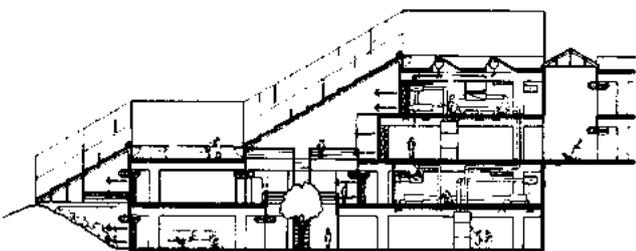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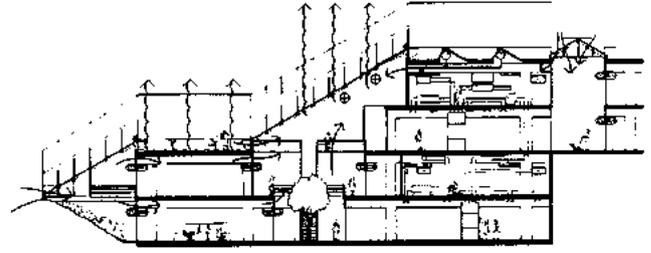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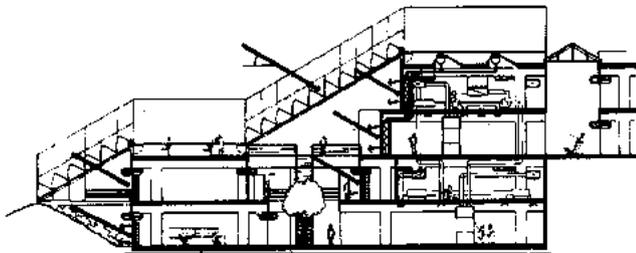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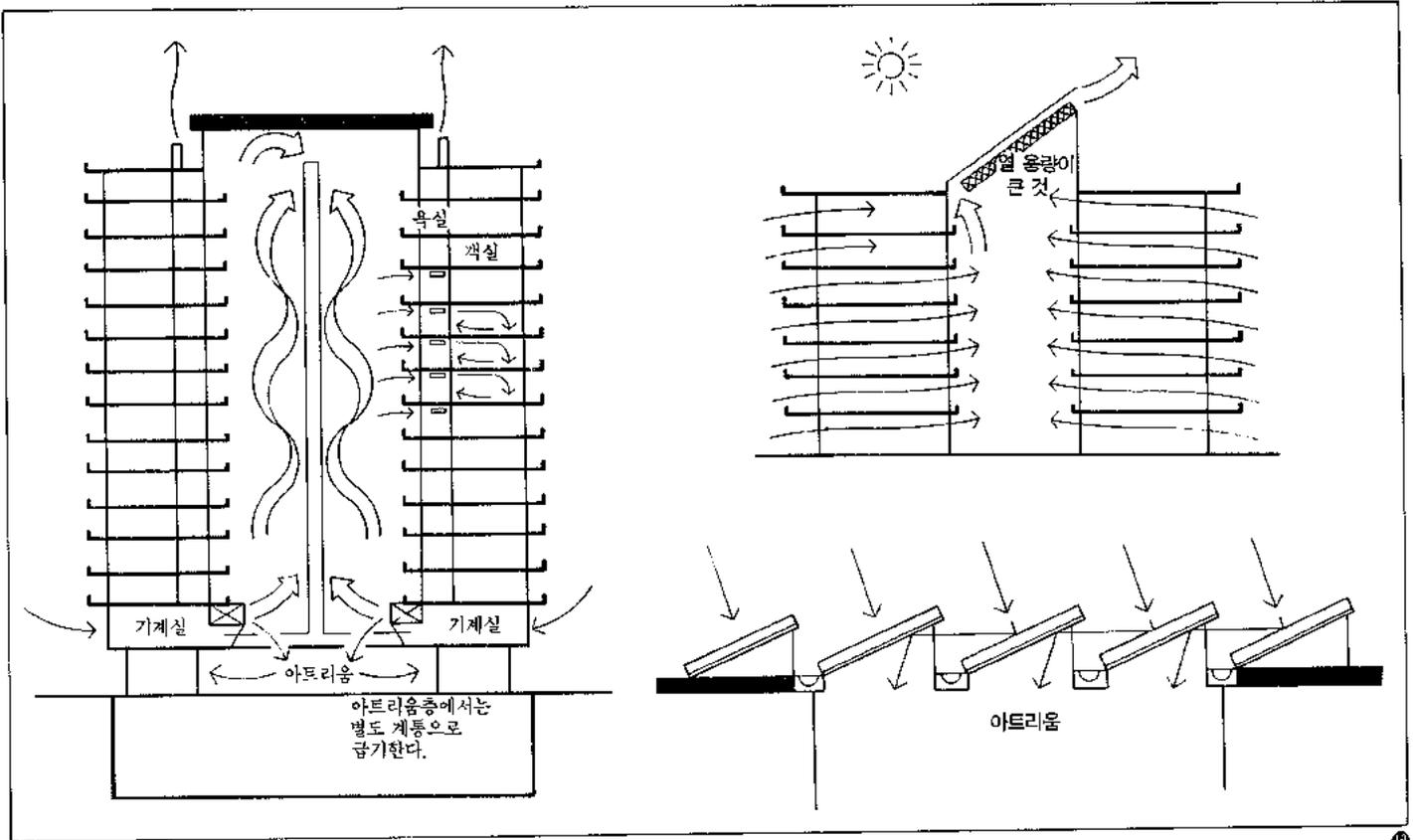
중요하지가 않다. 실내의 기온 차가 별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리 바깥쪽의 결로도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열의 침입은 단열에 의하기 보다는 열용량, 차양, 반사 등에 의해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아트리움 건물의 지붕은 크기 때문에 설비형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덥고 강한 햇빛이 많으며 태양을 면한 지붕의 경사면의 유리일 필요가 없는 기후에서 이 가능성은 더욱 크다. 운수공급이나 혹은 조건에 따라서는 태양열에 의한 공기조화를 아트리움의 위나 건물지붕의 집열기로서 작동시킬 수도 있다.

### ■ 덕트로서의 아트리움

아트리움이 건물의 급기 또는 還氣덕트의 역할을 해준다면 건설비를 절약할 수가 있다. 만일 진짜 덕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 덕트를 아트리움을 경유하도록 만들면 유효한 바닥면적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대형 프리체브 부품으로 만들어 공장생산할 수가 있다. 또한 이것은 보수나 개수시에도 다루기 쉽다. 기계실을 아트리움층의 아래에 두거나 또는 아트리움과 인접시켜 옥상에 두면 공기의 경로를 경제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아트리움 안에서 덕트를 대담하게





조각적으로 놓은 예로서는 토론토의 Eaton Center 와 Murphy / Jahn 이 설계한 시카고의 Rustoleum 본사(1978년)를 들 수 있다.

■ 환경 성능의 평가

지금까지 건물의 기후적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한 단열, 차양, 기타 요소의 필요도를 계산하는데 대해 설명했다. 아트리움 건물의 열적 성능에 관한 완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은 아직 개발중에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 건물의 공간용으로 개발된 모델을 확장하여 적용해 본 결과 아트리움의 열적 성능은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미국에서는 DOE-2 프로그램이 신뢰받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BRIS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대학교 건축학과와 마틴센터에서 아트리움의 거동에 대한 완전한 모델을 만들고자 이론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분석수법이 발달되어도 디자인의 출발점은 충분한 지식을 전제로 하는 직감일 것이다.

㉑ 냉난방 병용 아트리움

- a. 캐시브수법, 단열블라인드를 아트리움의 정상부로부터 늘어뜨린다. 겨울에는 이중유리 대신 태양열 집열기의 역할을 한다.
- b. 여름철에는 태양쪽으로 이동시켜 직사광선을 차단한다.
- c. 태양에너지연구소의 매트브란 개념. 여기서는 복수의 선형 아트리움에 옥외용 루버를 설치하였다.
- d. 겨울철 낮에 옥외에 설치된 루버는 태양광을 포착한다.
- e. 여름철 야간에는 루버를 열고 끈게 세워 방사냉각을 실시한다.
- f. 겨울철 야간에는 루버를 닫아 열이 옥외로 유출되는 것과 서리를 방지한다.
- g. 햇살이 강한 여름 낮동안에는 루버가 태양광을 차단한다. 맞풍을 이용한 자연환기로서 실내의 열을 제거하고 거주공간에 공기이동을 촉진시킨다.

㉒ 냉방형 아트리움

- a. 고도의 기술-급기 플리넵으로써의 아트리움. Atlanta Regency Hyatt 호텔의 경우 : 아트리움의 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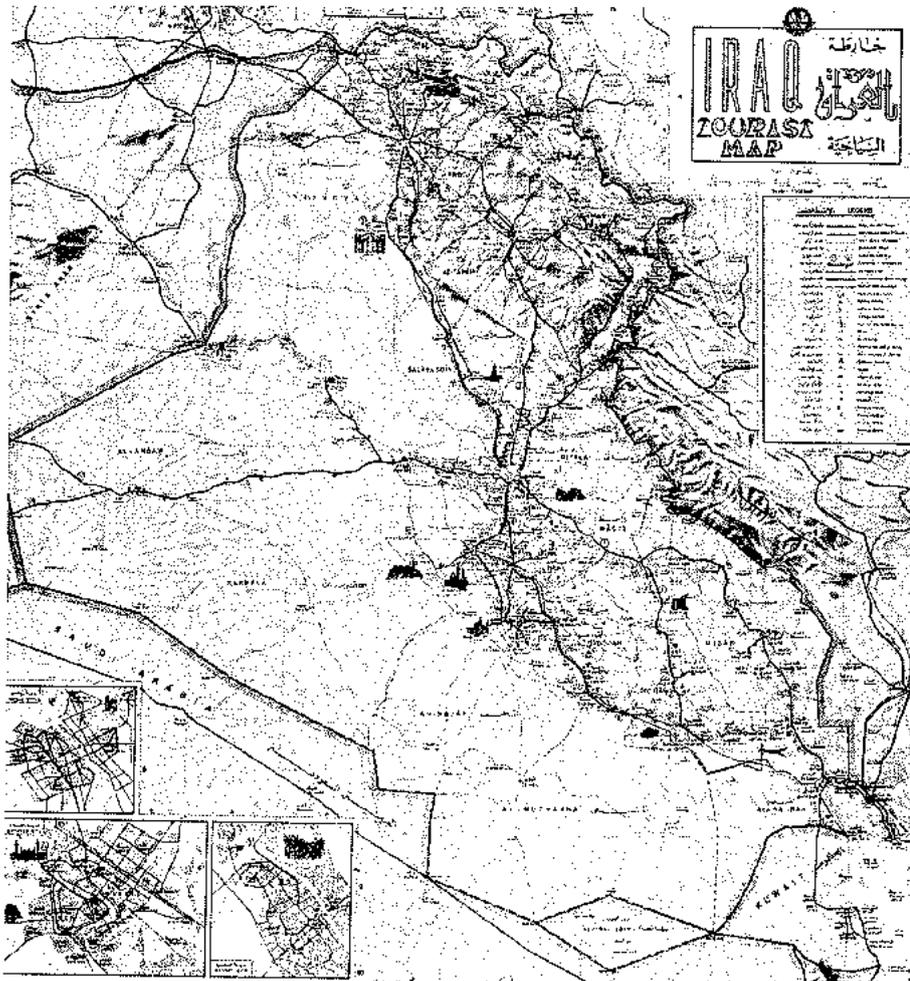
-3백만 ft<sup>3</sup>; 아트리움의 급기량은 매분 19만 ft<sup>3</sup>; 830개의 객실 팬은 각각 아트리움으로부터 매분 90 ft<sup>3</sup>씩 받아들여 300 ft<sup>3</sup>를 공급한다. (210 ft<sup>3</sup>는 순환); 90 ft<sup>3</sup>는 각각 옥실로부터 배기되며 전체적으로 7만5천 ft<sup>3</sup>가 아트리움으로부터 끌려간다. -11만5천 ft<sup>3</sup>는 엘리베이터 코어에 있는 샤프트의 정점으로 부터 재순환된다.

- a. 아트리움의 공기는 맨아래의 객실 레벨에서 環狀 덕트로부터 공급되어 나선형으로 올라가고 아트리움을 1시간에 4회 환기한다. 객실은 1차 공기를 따뜻하게 하거나 냉각시킬 수 있다. 손님이 없어도 옥실로부터 배기를 실시한다.
- b. 중간기술-태양의 힘을 이용하여 아트리움을 배기덕트로 이용한다. 맞풍을 대폭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경우 아트리움 꼭대기 부분의 거대한 슬라 골짜기는 거주자가 제어할 수 있는 환기를 촉진시킨다.
- c. 태양집열지불공기조화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지붕에 설치한 집열기는 태양광의 사멸을 방지하지 않고도 아트리움 지공에 놓을 수 있다.

人類 최초의 古代文明

메소포타미아 건축 순례(1)

Tours of Mesopotamia  
Architecture



1. 인류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앞으로 本考를 통하여 순례하고자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워 온 많은 유적지가 있는 곳이다. 세계 4대문명의 하나이자 인류 최초의 메소포타미아문명 발상지이며 인류 최초의 도시문명이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던 바빌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공중정원 (Hanging Garden), 세계 최초의 대학인 무스탄시리아 (Mustansyria), 세계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법전과 인류 최초의 문자인 설형문자의 탄생, 천일야화, 아리바바, 에덴의 동산 (East of Eden), Abraham's House, 바벨탑과 노아의 홍수설 등 구약성서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세계 최대의 이스라믹 건축인 사마라 (Samarra), 세계 최대의 벽돌 조적조 Arch Ziggurat, 순금으로 만든 지붕인 Golden Mosque 이외에도 세계 최초, 최대, 혹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있고 유니크한 건축 디자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많은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메소포타미아문명이 인간의 문명사회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인류 건축문화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약 1만개가 넘는 고고학적 유적들과 문명의 잔재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메소포타미아 고대 건축은 인류 역사시대 최초의 건축문화를 이룬 화려한 建築史로 남아 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지방은 인류 최초의 위대한 문명의 발상지로서 메소포타미아문명은 이곳으로부터 동서양으로 퍼져나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인간의 예술·문학·정치·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진보의 토대를 쌓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고대 메소포타미아문명에서 그 기초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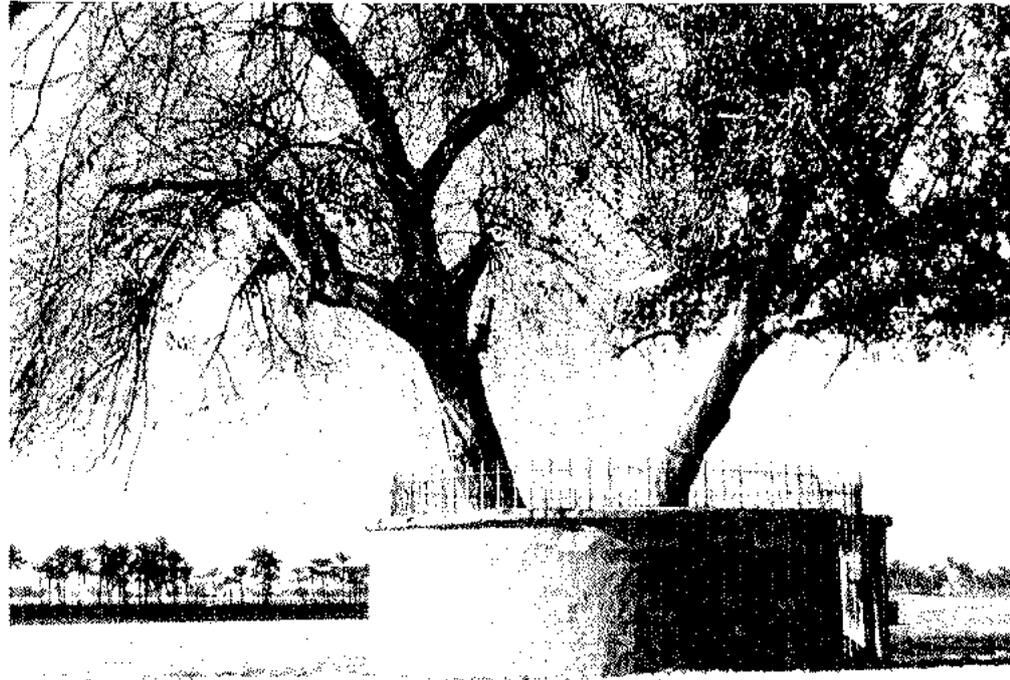
Mesopotamia는 峽地란 뜻의 Meso와 大地란 뜻의 Potamia의 합성어로서 티그리스강(1,817km)과 유프라테스(이라크 2,300km)강 주위의 일대를 가르키는 말로서 현재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터키, 시리아, 요르단,

알라딘의 램프, 하늘을 나는 양탄자, 알라바바와 40인의 도적, 그리고 신밧드의 모험... 우리에게 많은 이국에의 신비로운 꿈을 주었던 이야기들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들로서 이 千日夜話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생지이다.

裴元太  
橋美건축구조연구소 소장  
by Bae, Won-Tai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등의 나라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지리적 위치는 3대륙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위치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사이에 위치하여 북쪽의 일부에만 산이 있으며 중앙지역은 Limestone 성분으로 된 평야지대이며 남부는 Flat Lowland로서 목초지와 늪지대, 오아시스, 야자수가 많으며 무더운 열대 기후이다. 겨울의 평균 기온이 6~15℃, 여름이 5~10월 사이이며 평균 기온이 36℃~43℃ 정도이다. 비는 거의 겨울에만 온다. 북부지방은 겨울에 눈도 오며 남부 지역은 무더운 열대 기후로 기후는 한서차가 심하고 강우량이 적어서 4월~11월 사이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그러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물이 마를날이 없이 항상 유유히 넘쳐 흐른다. 옛부터 메소포타미아 협지만은 생산 경제 조건이 갖추어진 비옥한 땅으로 농경 목축생활을 정착시켜 세계 최초의 도시 문명이 탄생되었다.

메소포타미아의 고대인은 적어도 1천1백년전 농경과 목축에 종사함으로써 인류 최초의 농경생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성공이란 결코 메소포타미아가 천혜의 땅이어서만은 아니었다. 구약성서의 노아의 방주의 무대였던 이곳의 성공은 BC 4천년전부터 홍수에 대비해 만들었던 거대한 지구렛의 건조에서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홍수에 대비한 인간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구렛을 건축하여 천체관측을 하였던 것인데 지구렛의 네 모서리가 춘·추분때 태양과 일치되게 하여 홍수를 예보하였다. 그보다 더욱 위대한 노력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물을 관개하여 풍요한 농경토지를 만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일찍 관개 시설을 한 것으로서 이 관개사업으로 인하여 문명과 최초의 국가가 탄생되었던 것이다. 즉, 기원전 4천년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농경부락생활로부터 도시생활로의 인류 최초 도시국가인 바빌론이 탄생되어 인류의 새로운 문명사회로 진입했던 것이다. 메소포타미아는 수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세계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 관개에 의해 수확이 많아진 이 땅에서 인간은 비로소



단순한 생존 이상의 수준에 도달하여 생각하기 위한 시간과 창조적 발전을 위한 자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갖가지 사상과 제도, 기술의 꽃이 피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요한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졌다. 그것들은 그후 부분적으로는 개량되었으나 기본적인 생각은 오늘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업제도와 상인계급이 생겨나고 발전한 것은 수메르에 있어서였다. 업무상의 기록을 하는데에서 시작되어 최초의 실용적인 문자체계가 발달한 것도 이곳에서였다. 문명의 성립을 가능케한 인간의 발명품 중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문자이다. 그림문자가 수메르의 실형문자로 되고 그것이 다음에 페니키아인의 알파벳식 문자를 낳아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조금씩 넓혀 갔다.

기원전 4천년경의 수메르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장 오래된 바퀴달린 운반구를 만들어 내었다. 수메르인의 단단한 나무를 이용한 바퀴는 기계의 역사에서 최대의 발명품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은 수세기 동안 기본적으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인류 최초의 문자인 실형문자가 생겨남은

①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합류하는 바스라부근 쿠르니에 있는 에덴의 동산 (East of Eden). 우화과나무가 서있는 이곳의 동편에는 「성스러운 우리조상 아담나무가 선 이곳이 지구상 에덴동산임을 나타낸다. 기원전 2천년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져 있다.

문명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은 사회를 통제할 법률제도와 성문법, 양원제의 입법기관, 선거로 뽑힌 행정부들을 맨 먼저 만들어 냈으며, 도시계획을 최초로 시행하여 바빌론 제국을 건설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지구렛과 사원을 건설하였고, 기하학·지리학·언어·의학·천문학·역사에 관한 인류최고의 과학지식을 남겼다. 특히 수메르의 시는 지금도 인간의 꿈을 자극하는 황금시대에 읊은 최초의 노래(詩)이기도하다.

## 2. 에덴의 동산 (East of Eden)

구약성서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는 에덴의 동산이 바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兩岸 沖積地帶의 어느 오아시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에텐의 동산이 진짜 있는건지 확인해 보려고 무덤과 먼길을 자동차로 찾아 나섰다. 사진에서와 같이 에텐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담과 이브가 따먹었다는 금단의 열매인 무화과 나무가 있다. 에텐의 동산이 있는 이곳은 옛날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밭가벗은 인간으로서 이곳이 가장 살기좋은 지역이 아니었겠나 상상해 본다.

더우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면 되고 추우면 이곳으로 내려와 살며 옷걱정 먹을걱정 없이 야자열매를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늪지대에는 불이 항상 흐르고 푸른들의 야자나무 숲과 항상 거둘 수 있는 열매 야자열매들이 충분한 곳이었다. 역사 종교학자들이 에텐의 동산에 가장 맞는 장소로 입증하고 있는 티그니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만나는 하구의 바스라 부근의 이곳 에텐의 동산의 동판에는 “성스러운 우리 조상 아담나무가 선 이곳이 에텐동산이다. 기원전 2천년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기도를 올렸다”고 쓰여져 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된 이곳 메소포타미아에 또한 인류가 처음 태어난

에텐의 동산이,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했던 에텐의 동산이 실제하고 있다는데 놀랍다.

### 3. 세계 最古의 도시 바빌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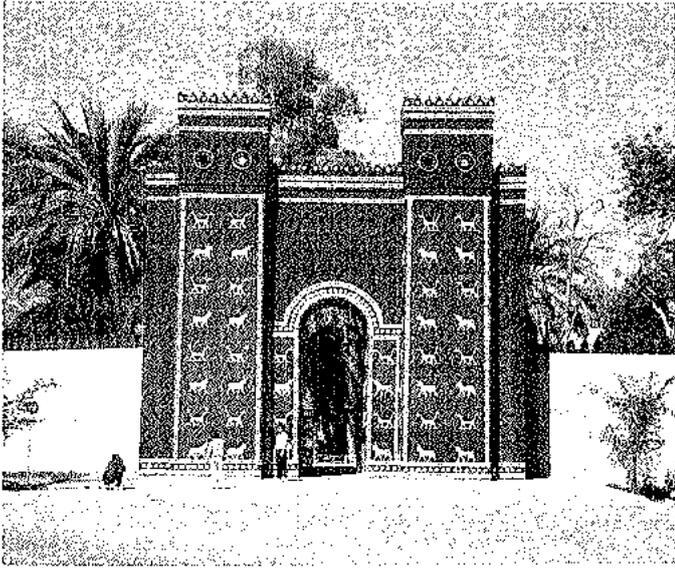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도시 바빌론. 기원전 19세기부터 4세기까지 고대문명의 중심지였던 바빌론에는 화려했던 바빌론城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공중정원, 바벨탑, 세계 최초의 채색벽돌 (Colored Brick), 세계 최초의 아스팔트 거리인 Procession Street 등의 많은 유적들이 산재하고 있다.

바빌론이 역사상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BC 2350~2150년경이며 함무라비법전으로 유명한 제6대 함무라비왕 시대가 전성기였다. 바빌론은 고대 오리엔트의 세계적인 상업 중심지로서 페르시아만으로 통하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학술의 중심지였으며 도로, 운하, 신전, 궁전 등을 건설하였다.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군에 의한 파괴로 쇠퇴하기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대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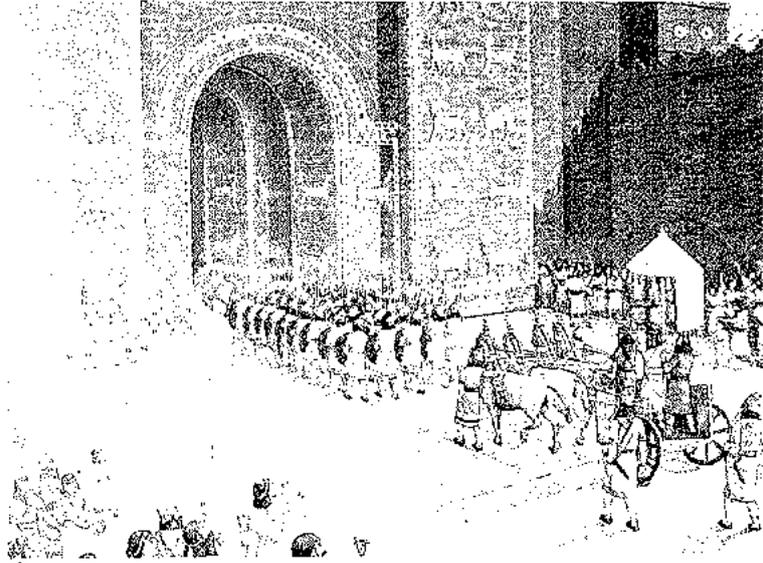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유프라테스강이 현재는 바빌론 서쪽에 면해 있으나 신바빌로니아 시대 이전에는 지금과 달리 바빌론의 동쪽으로 흘렀다고 한다. 현 바빌론 서쪽에 인접해 흐르는 강이 유프라테스강이라고 기록된 문헌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 강이 아니라 바빌론 건설 당시에 만든 인공운하인 것으로 이 운하를 유프라테스강의 지류와 연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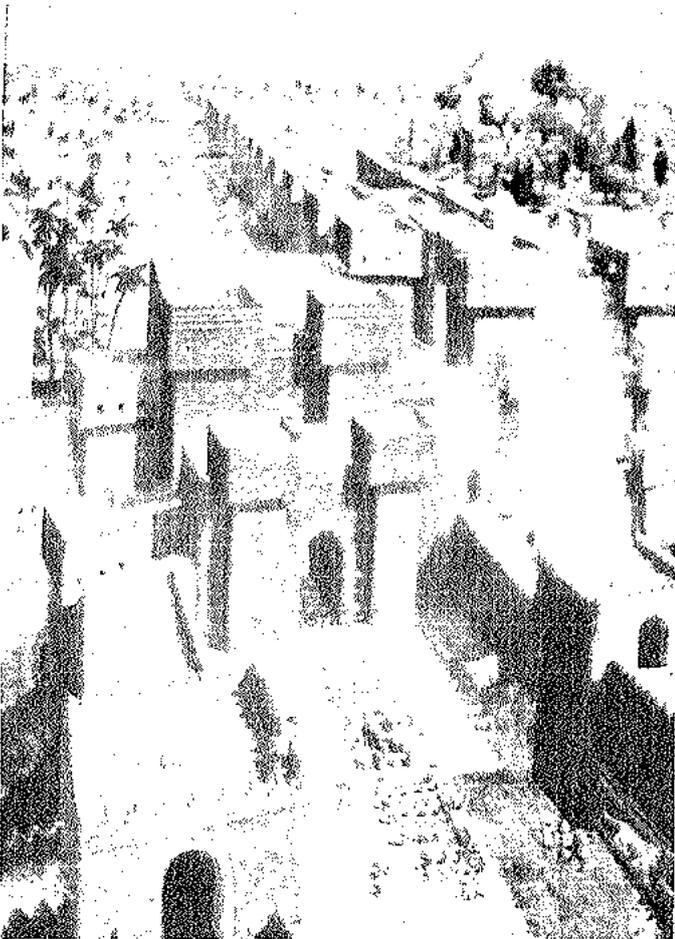
바빌론은 각변의 길이가 각각 약 21.6km의 사변형이고 도시 전체는 2중 성벽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시가는 유프라테스강 지류의 운하로 양분하여 운하 양쪽에도 성벽을 구축, 이 성벽과 도로가 교차되는 곳마다 청동제 문(도합 100여개)을 설치하고 운하로 양분된 동서 시가에는 3층, 4층을 건축하였으며 도시의 한쪽은 공공건축 지구로서 그 중앙에다 각각 궁전, 신전, 중정 등이 위치하며 또 한쪽은 주택건축 지구로 입체적 구성에 주력한 것 같다. 동서 간선도로 끝과 남북 간선도로 끝이 맺어지는 지점에 광장과 바벨탑을 배치하였다.



②



④



⑤

- ② 세계 최초의 흙벽돌로 만든 Arch.
- ③ BABYLON의 정문인 ISHTAR GATE(B.C.575)  
비빌론 발굴당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견고한 정문,  
이문은 여신 ISHTAR에게 바친것으로 세계 최초의 광택  
채색벽돌로 되어있다.
- ④ BABYLON의 축제의 거리를 재현한 의식행렬 상상도
- ⑤ 세계 최초의 도시인 비빌론의 상상도  
비빌론의 정문과 좌측상단에 공중정원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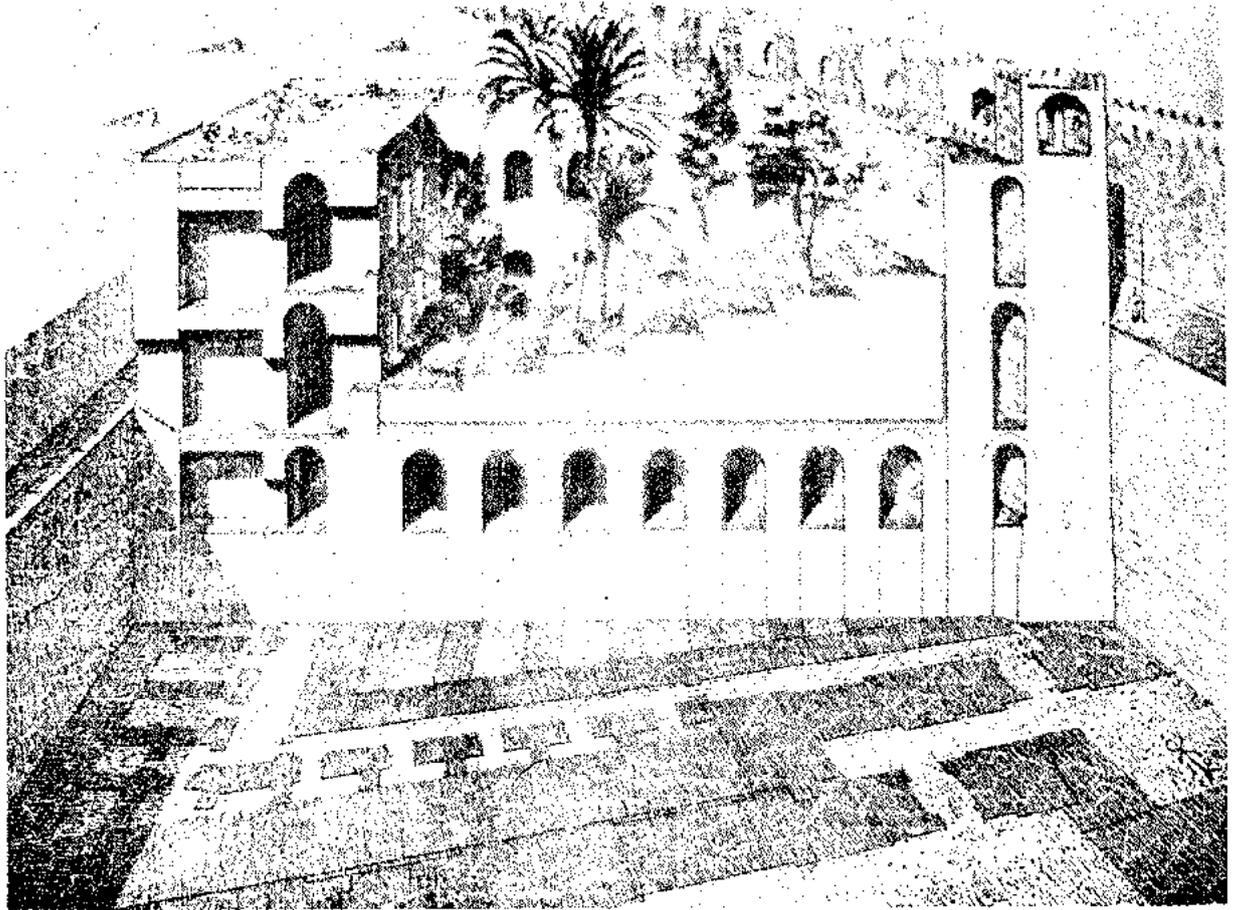
이로보아 이도시는 치밀한 Master Plan 에 의한 계획도시이었던 것 같다.

#### 4. 공중정원 (Hanging Garden)

공중 정원이란 “공중에 매달린 정원”이란 뜻으로 고대 바빌론의 경이적이고 신비스런 건축으로 해석되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는 ① 공중정원 ② 이집트의 제1 피라미드 ③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의 신상 ④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⑤ 할리카르 냇소스의 Mausolous 왕 大陵廟 ⑥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⑦ 로도스島の 거상임)

이 공중정원은 네브카도네살 왕의 시대에 왕이 아미티스를 왕비로 맞이하여 산간지역인 메디아에서 자란 왕비가 바빌론의 평탄한 땅의 생활이 단조로움을 느끼므로 왕이 왕비의 무료함을 덜어 주기 위해 그녀의 고향을 방불케 하는 공중정원을 만들었다 한다.

필자는 바빌론에는 여러번 갔었는데 그것은 처음에 갔을 때 너무나도



6

- 6 공중정원 (Hanging Garden) 단면도
- 7 바빌론에 있는 세계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공중정원 유적지
- 8 바빌론의 유적  
 바그다드남쪽 90km 떨어진 이곳은 현재도 많은 유적들이 흩어져 있는 곳으로 최근 일부 복원된 바빌론 성곽, 바벨탑의 유적, 축제의거리 등 많은 유적들이 있다. 이 사진은 복원되기 전의 모습.



7



실망해서였다. 그 유명한 바벨탑도 공중정원도 간 곳 없다. 무덤게 내리찍는 태양아래 허물어진 벽돌과 흙더미뿐인 폐허가 된 바빌론은 그때까지 들어왔던 그 유명한 바빌론에 대한 동경의 꿈을 허망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두번째 갔을 때는 그 당시 발굴중인 출입금지 구역인 South Place 내부에 까지 들어 갔다. 거기에서 바빌론의 신비, 공중정원의 수수께끼를 생각해 냈다.

현재 이라크 정부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공중정원의 복원을 위한 그 수수께끼에 2백5십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있다고 한다.

공중정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가지라 필자는 생각했다. 첫째는 건물을 수직으로 중층 즉 2층, 3층으로 올려 지을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엔 콘크리트도 철근도 없고 철골도 없었는데, 흙벽돌로만 Arch 를 만들어 2층으로 지은 그 벽돌조적 구법이 그 열쇠였던 것이다.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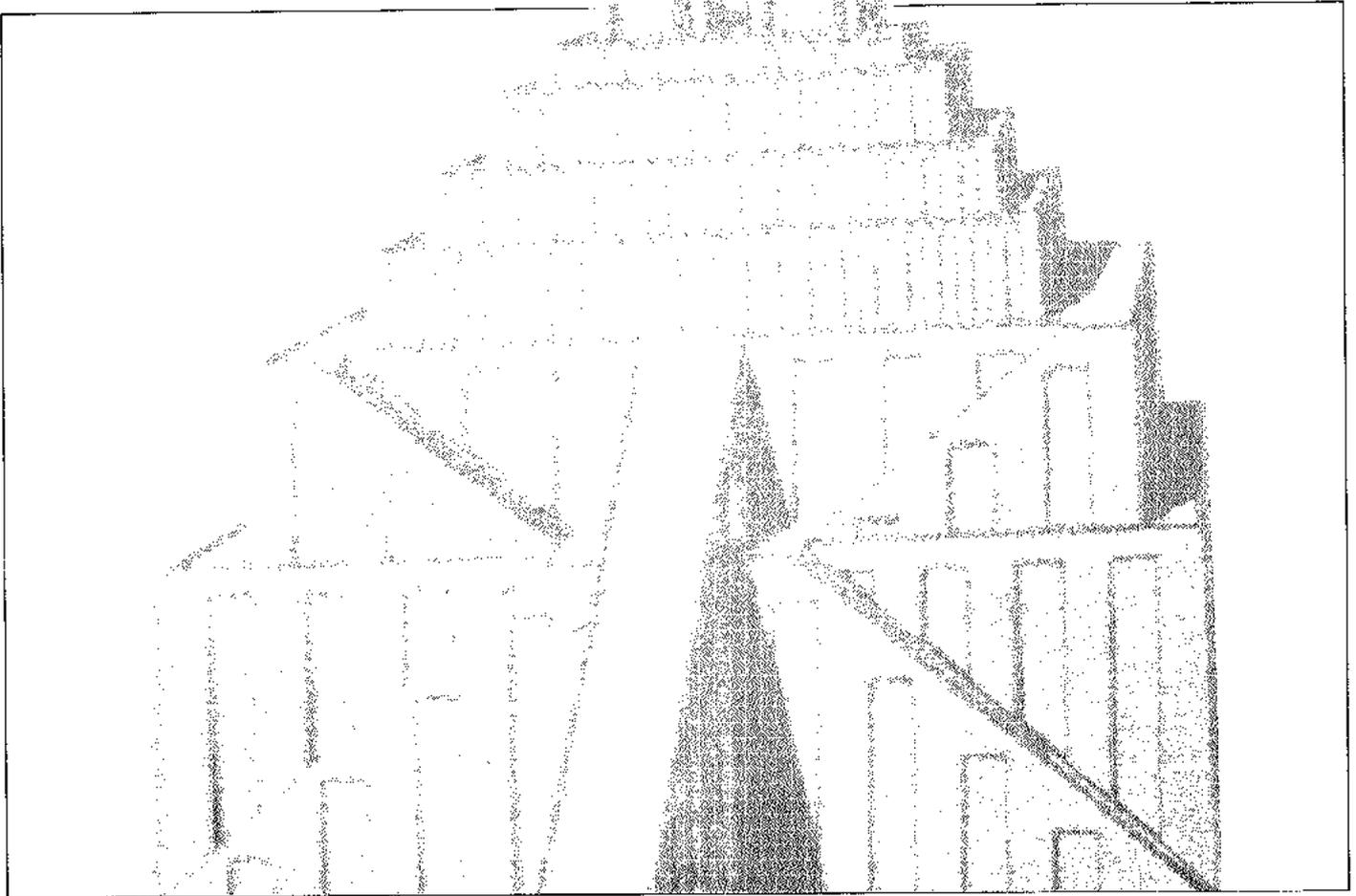
최초의 벽돌 Arch 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생겨났으므로 이 벽돌 Arch 구법으로 2층, 3층으로 축조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동양건축 즉 우리의 한옥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누각 같은 건물외에는 지금까지도 순수 한옥으로는 상·하층을 거주실로 쓸 수 있는 2층을 짓지 못하여 건물이 상부로는 조금도 발전할 수가 없지만 바빌론의 건축에서는 고대에도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거실을 2층, 3층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첫번째 이유이고 2번째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천연 아스팔트를 사용하여 2층의 벽돌 평바닥에 방수를 하였던 것이다.

바빌론의 Procession Street 바닥에서와 같이 아스팔트가 노출되어있다. 벽돌벽체의 옆면에도 검정 아스팔트 방수가 되어있는 것이 부분 부분 보였다. 방수를 할 수 있으므로 불가사의 한 "지붕위에 매달린 정원"이 아닌 Roof Garden 을 당시에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정원의 물은 바빌로니아인이 옛날부터 사용해온 양수

방법으로 옥상에 물을 끌어 올려 울창한 숲을 출현시켰다.

벽돌 조적 건물로서는 세계 최초의 2층, 3층 건물이 이곳 메소포타미아의 건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빌론은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군에 의한 파괴로 쇠퇴하기 시작하여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으로 멸망 하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와 바빌론의 침략 원정이 끝난 뒤에도 마케도니아로 돌아가지 않고 바빌론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도시였는지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에 머물러 그곳을 새 수도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원정이 끝나 바빌론에 입성한 이듬해인 33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죽었다.

바빌론은 알렉산더 대왕이 바빌론에 입성하여 그의 돌연한 죽음에 이르는 기원전 1세기까지 약 2천5백년간 도시 국가를 이루었다. 지금도 그 상대했던 바빌론의 유적은 흙더미 속에 그 신비를 묻어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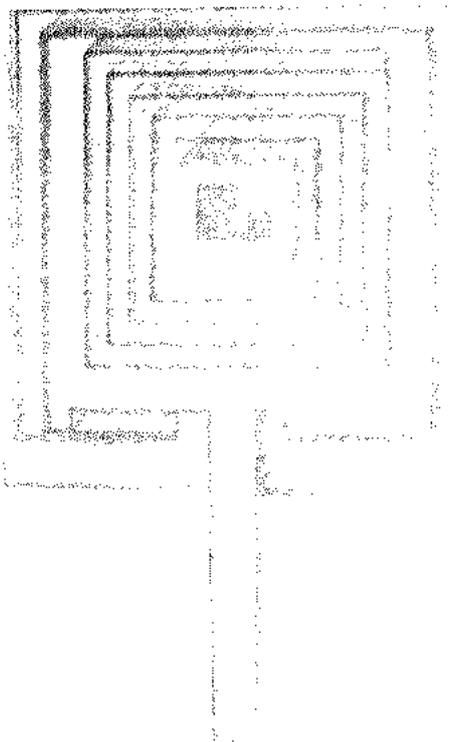
①

## 5. Babel 탑

바벨탑은 그 웅대한 규모만 보아도 고대 세계 최고의 건축상의 驚異이다. 바벨탑의 규모는 전체 높이가 약 91m의 7단으로서 제1단의 폭이 90m, 높이 36m이고 제2단은 높이가 20m이며 제3단에서 6단까지도 점차 좁아졌으며 측면 양측 계단의 높이는 30m, 중앙계단의 높이는 약 40m였다는 것이 계산에 의해서 밝혀졌다. 신전은 가장 꼭대기에 있다.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정주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농사를 짓고 양을 길렀으며 벽돌을 구워 집을 짓고 나중에는 자기들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게 되어 엄청난 규모의 바벨탑을 만들게 되었다.

바벨탑이 최초로 세워진 것이 네브카드 넷자르 치세의 수백년 전의 일이다. 이후 수세기에 걸쳐 파괴와 재건이 되풀이 되었다. 최후의 복원은 나보폴랏 사르에 의해 착수되고 아들 네브카드 넷자르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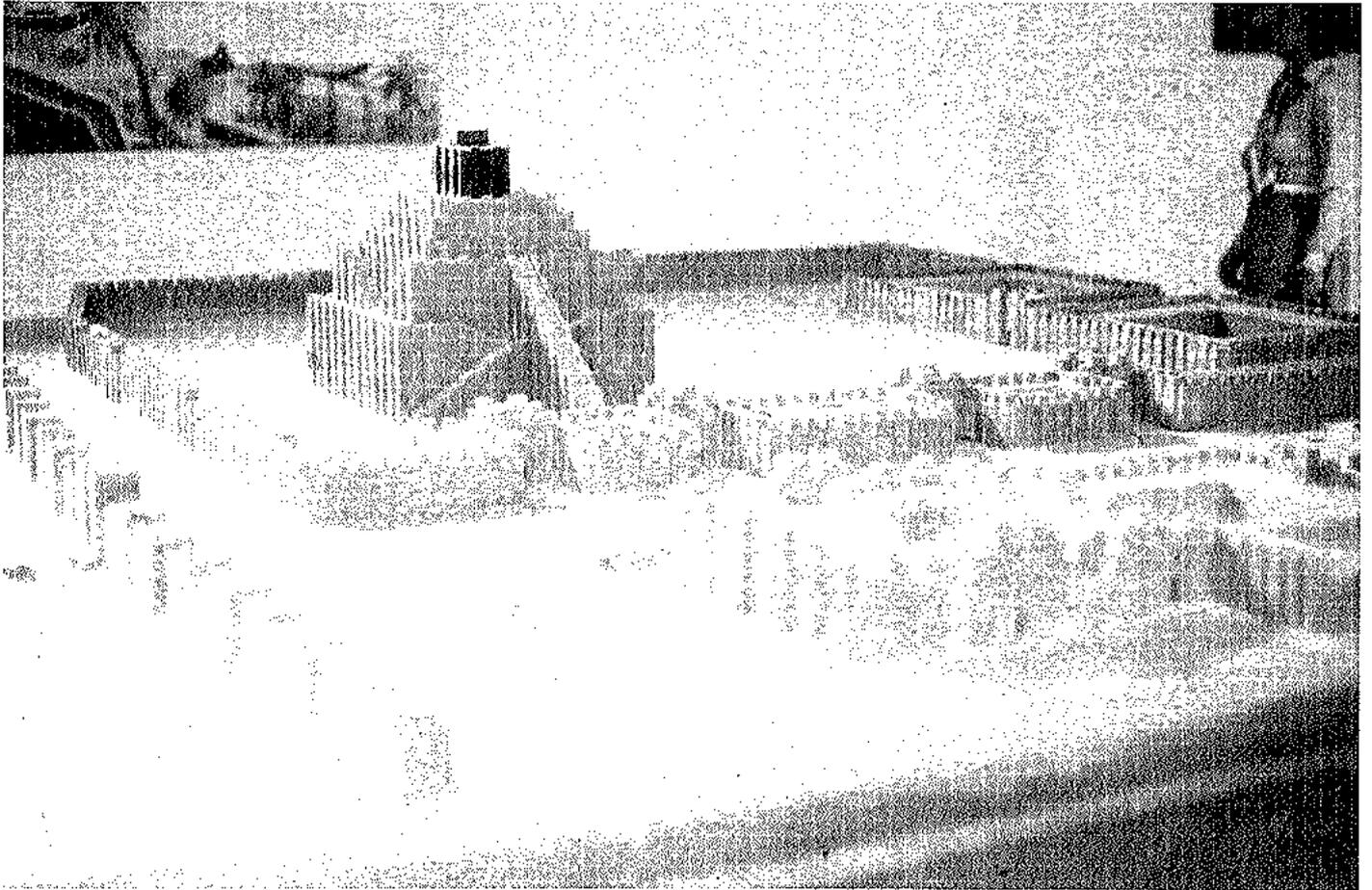


완성되었다. 왕은 왕실의 건축가에게 “탑의 높이를 더하여 하늘과 겨루도록 하라”고 명령 했다고 한다.

구약성서 창세기 제11장에 바벨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부를 인용하면

온 세상이 한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은 동쪽에서 옮겨 오다가 시날지방의 한 들편에 이르러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의논하였다.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리하여 사람들은 돌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 “자, 성과 탑을 쌓아 맨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당시 사람들의 소원의 결과는 성도 탑도 도중에 무너지고 汚名만을 남겼을 뿐 이름을 날릴 수도 없었다.

하늘이란 사람의 손이 닿지않는 높은곳 하나님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바벨탑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역에 뛰어 들려고 한 것이다. 인간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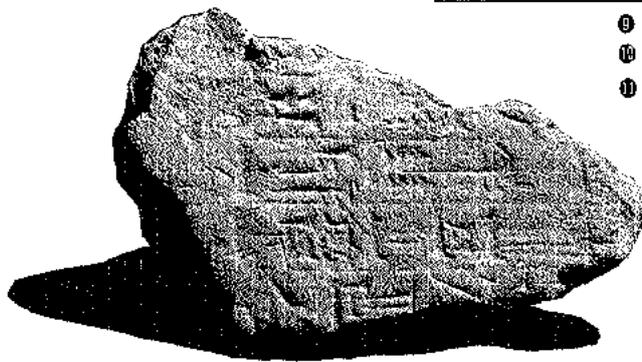


⑩

인간의 영역을 넘어가려고 즉 하나님과 동등한 높이에 놓으려 했던 것이다.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되고 싶다는 이것이, 인간이 항상 빠지기 쉬운 거만이다. 이 거만은 인간이 자신을 뒤돌아 볼 때 사람이란 얼마나 잘 잊어 버리도록 창조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실제로 돌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바빌론을 건설한 사실과 역청 즉 천연 아스팔트를 바빌론 건설 당시에 실제 사용한 것과 일치하는 기록이다. 아담의 생존연대가 BC 5천5백년경이며 아담의 10대손이 노아이며 노아의 홍수기는 BC 4866년 후기이므로 이는 바벨탑의 건설연대이다.

셈족인 수메르인들이 홍수기 후에 건설했다는 것은 있을 법한 홍수 再來에 대비한 천체 관측소로 계획했음을 뜻하고, 천공에 닿을만한 높이의 성벽을 쌓았다는



⑪ 바벨탑의 평면과 입면도  
 ⑫ 바빌론의 박물관에 있는 바벨탑의 모형.  
 ⑬ 바빌론의 벽돌  
 BABYLON에서 출토된 흙벽돌에는 문자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역청(아스팔트)이 묻어있다.

것은 지구렛으로서 바벨탑이 高塔이었으며 햇볕에 말린 벽돌을 心部로 해서 두께 15m에 이르는 소성 벽돌층으로 다져서 만들었다.

이 탑은 몇번 대파되어 再3건설하였다고 하는데 페르시아에 정복될 때(BC 486)대파되어 그 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대왕(BC 336~323)의 호의로 재건하려, 해체하는데만 수천명의 인원과 많은 시일이

걸렸으며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결국 재건되지 못하였다.

현재 바벨탑의 자리엔 그 당시 재건하려고 해체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탑의 잔해 하나 남아있지 않고 바닥만 드러낸 채 4천여년 동안 겪었던 역사의 추억을 감추듯 잡초와 흙더미인 채 남아있다.

바벨탑은 오늘도 여전히 인간의 양심의 허무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되어 있다.

# 滿洲의 가작크村

## Travels of Kajack Village in China

朱命錄 / (주)인원건축사사무소

### 1. 滿洲國務院 建築局

8.15前 滿洲國務院 建築局에 재직시의 이야기인데 처음보는 생소한 기구명칭일 것이므로 本題에 들어가기전에 건축국의 기구기능과 만주국의 구성과 그때의 현황 등에 대하여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건축국은 원래 국무원 營繕需品局으로서 일본정부 대장성의 營繕管財局과 유사한 관청인데 당초기구는 서무과 제1공무처 제2공무처 需品處로 되어 있었다.

1940년 기구개편으로 국무원 건축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수품처가 떨어져나가고 기구도 서무과, 제1공무처, 제2공무처 任政處로 되었으며 국장 밑에 直屬부서로서 서무, 인사, 회계, 용도를 관장하는 서무과가 있고 그외의 부서로서는 上記와 같은데 處에는 科, 科에는 股가 있었다.

그 당시의 만주국에서는 한국의 部에 해당하는 部와 處에 해당하는 局과 課에 해당하는 科와 係에 해당하는 股가 있었다. 국무원이라 함은 內閣을 말하며 정부기구는 한국과 비슷하나 외무국(외무부에 해당함)이라던지 건축국같은 기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총리대신 직속으로 되어 있었다. 또 총리대신 직속으로는 일본의 內閣官房格인 總務廳이 있었는데 이 총무청장관(일본의 官房長官에 해당)은 일본인으로서 만주정부 사실상의 최고위 실권자로 군림하고 있었으며(各部에는 명목상 大臣級만 중국인이고 실권은 次官인 일본인 수중에 있고 各部마다 전직원의 85%이상인 일본인이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자리의 하나인 경제부의 차관자리에는 수년전에 故人이 된 한일협력회장이며 그전에는 日本首相을 지낸 바도 있는 岸(기시)信介氏였는데 이

사람은 東大 金時計組의 수재로써 군부의 강력한 추천으로 부임해 와 있다는 소문이었다.

건축국의 제2공무처에는 '宮殿造營科'란 것도 있어서 마지막 황제로 유명해진 부의황제의 宮殿 신축과 營繕業務도 관장하고 있었으며 전국 건축공무원의 人事權도 장악하고 있었다. 건축국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자면 전직원의 95%정도가 일본인들로서 일본의 중앙관청이나 지방관청에서 차출됐거나 거기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자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었으며 東京帝大 建築科 出身들을 머리와 척추로 하고 그들을 손발로 하여 全 만주국의 건축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큰 규모의 官廳이었다.

滿洲國의 그 당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가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약 5배이고 대량으로 매장된 양질의 유무연탄과 철, 동 텅스텐, 망간, 동등이 무진장이며 근래에는 전에는 발견 못했던 석유까지 대량 생산되어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하며 거기다가 직경 1m가 넘는 紅松 및 길이 9m가 넘는 낙엽송들의 산림대가 홍안령에는 樹海를 이루고 있다. 또 발전과 船便輸送을 가능케 하는 큰 강물과 비옥한 농토와 농산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이 세계적인 자원의 보고에 90년전부터 눈독을 들인 일본이 교활한 공작과 무력으로써 만주를 손아귀에 넣었다. (2次大戰終戰時 일본인들은 사할린, 대만, 사이판, 괌 등의 南洋諸島와 남북 한국을 잃은 것은 체념할 수가 있으나 만주를 잃은 것은 애석하고 원통하다고 했었다)

만주국 창건의 주역인 일본군부(육군)가 일본의 생명선인 만주국을 조속히 建設해야 된다고 하며 일본본토에도 없는 야심적인 기구(건축국)를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건축국의 한 간부집단잔치에 동료들과 초대받고 가서 들은적이 있다. 그래서인지 관동군참모제4과의 젊은 영관급 장교들이 건축국에 들르기라도 하면 40, 50대의 科 處長들이 예의 바르게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表題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는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하나, 말이 나온김에 敷衍해서 말 하겠다.

關東軍, 세계에 100만 강군으로 알려진 野戰軍으로서 이 관동군에 겁을 먹은 미국이 소련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38선이 생기게 됐다는 설이 있다.

參謀 第四課라는 곳은 新京의(長春) 사령부내에 있었으며 만주국의 정책을 일일이 체크하고 간섭하는 기구로서 그때의 참모장은 後日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케 하여 2차대전 참전을 강인하게 결정하고 終戰 수습개월전까지 陸軍大臣과 總理大臣을 겸직하고 공포정치로 全 日本을 호령했던 먼노날이라고 별명이 붙은 東條英機이다. 이 자가 參謀長으로 있는 동안은

植田이라는 사령관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기밀비지출을 철저히 억제하는 바람에 사령관의 사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前職은 關東軍 헌병사령관이었고 군국주의의 공수분사인데 戰犯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上記 건축국에 末席으로 재직시 소속과에서 後學을 위해서 白系 러시아인들이 집단생활하고 있는 「가작크」村을 견학 간다기에 일행에 끼어서 견학하고 그 이색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생활풍습에 느끼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 하고자 한다.

## 2. 「가작크」村의 생활방식 및 주택구조

「가작크」村이라 함은 저 有名한 「가작크」騎兵을 연상 할 줄 안다 과연 그런 유래가 있었다.

소련 공산혁명 당시 국외로 추방 또는 도망쳐 나온 황족, 貴族軍의 고급장교와 지주 고급관리와 재산가층으로서 미처 구라파쪽으로 피신 못한 일부인들이 군신또는 가족동반으로 만주 땅으로 넘어 왔다는 것이다. 즉 밀입국을 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 러시아인들은 무국자이며 일본인들은 이들을 白系 러시아인이라고 通稱하고 있었다.

이들의 생활수준은 일본인을 능가하는 고수준이었다. 그러나 만주로 넘어 와서는 이미 무력하고 빈 털털였기 때문에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도 추방당하기 전에는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죽을 고생과 육체노동 이라도 해야만 호구지책이라도 취할 수 있는 처지였다고 했다.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안정을 되찾은 이들은 별채업 목축과 농업, 수렵모피업, 기계공, 운전수, 약품상, 러시아식당 밀크홀 겸 제과업, 카바레, 서양여자만 고용한 유락 등의 직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가 본 「가작크」村은 목축농업과 수렵모피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었다. 이 마을의 創村當時 「가작크」騎兵대대 장교출신 몇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이 마을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작크」村이라 호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건축국의 소재지인 新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러시아 케일과 위스키, 초콜릿의 맛이 어찌나 좋은지 그만 반해 버렸었다. 나만이 아니고 구미 각국을 다녀본 日人들도 러시아 케일과 위스키 초콜릿은 世界 정상급으로 꼽고 있었다.

나는 심심하면 獨身寮 친구들과 이 러시아 다방 겸 과자점을 무수히 出入했으며 영양이 많은 러시아스프와 黑빵으로 한끼를 때우는 일도 많았던 것으로 記憶된다. 총각때라서 러시아식다방에 종사하는 18,9세쯤 돼보이는 白色 유니폼을 몸에 찰싹 달라 붙게 착용한 금발의 귀염성있는 白系 러시아인



아가씨들의 천사같은 매력에 끌린 것도 사실이기도 한데 일본인 총각녀석들도 일빠진 상태로 “일본치녀들은 왜 저렇게 호박같이 생겼느냐”고 한탄할 정도로 우아한 美人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이 40세 전후가 되면 왜 그런지 많은 수가 빠꾸샤처럼 뚱보가 되어버리는 데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가작크」村은 신경에서 기차로 7시간쯤 걸리는 할빈역(안중근의사 거사역)에서 대철버스로 1시간 30분쯤 걸리는 교외에 위치해 있었다. 신경이냐 할빈이냐 하면 우리와는 연이 먼 북방의 아득한 타국도시로만 느껴질지 모르나 & 15전에는 부산에서 할빈까지 「열」이란 급행열차가 또한 부산에서 신경까지는 「光」이란 특급열차가 일본 만주 간의 연락을 위해서 매일 왕복하고 있었는데, 이북땅 정주-신의주 구간에서는 열차내에서 고등계 형사들의 검문이 있었고, 신의주역에서는 세관 검사를 받고 철교를 통과 만주 안동역(지금의 원동역)으로 들어 갔으며 서울에서 신경까지는 약 22시간, 할빈까지는 29시간쯤 걸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대련에서 신경까지는 초특급열차가 운행되고 있었는데 일정때 부산-하관간 연락선처럼 일본 구주의 하카다항에서 7천톤급 연락선이 대련항까지 매일 왕복하며 그 연계역할을 했던 열차였다. 이 열차가 통과할 때는 여타 열차에 비해서 월등히 빠르기때문에 북선이면서도 부산발 급행열차등은 중간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통과 후에 운행해야 했었다. 「아시아」라고 불리는 이 열차에는 그때 이미 냉방(미국수입)장치가 돼 있었다. 물론 일본측이

「가자크 차이라 같은  
유명한 「가자크」 建築을  
연상 할 줄 안다.  
소련 공산혁명 당시  
죽어로 추방 또는  
모형이 나온 벌목,  
民族舞의 고급학교와  
재산가동으로서 미처  
구라파쪽으로 피신못한  
일부인들이 군신 또는  
가족중반으로 만주방으로  
넘어 왔다.

경영하는 남만주 철도주식회사(노일전쟁 승리로 일본의 이권으로 확보한 것)의 열차였으나 냉방장치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본토에도 없는 파격적인 것으로서 일본이 만주국의 건설과 통치에 얼마나 야심적으로 심혈을倾注하고 있었는지를 이 일례를 보더라도 짐작이 갈 것이다.

「가자크」촌에 도착하니 미리 연락이 되어 있었는데 노령의 그러나 건장한 일본말을 약간 할 줄 아는 러시아인 촌장이 맞아 주었으며 곧 바로 한 목축농가에 안내 되었다.

젖소 8마리와 닭, 오리 40여마리를 기르며, 한편 물오리와 꿩 기타 동물의 수렵으로(만주는 세계적인 수렵지임) 생계를 유지해 간다고 했는데 그 당시 겨울철이면 꿩과 물오리, 매추리 등 수렵품이 자연 동태 상태로 수십화차분씩 시베리아 철도편으로 구라파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으니 생계에 보탬이 됐을 것으로 짐작 됐다. 가족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4인 가족이었으며 부업으로 오리털 침구와 동물의 剝製도 해서 판다고 했다. 넉넉치는 못하나 먹고 살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았다.

「가자크」촌의 가족은 낙엽송  $\phi 30\text{cm}$ 내외의 井자형 통나무집이었으며 내부 칸막이는 전혀 없고 210cm 높이의 천장은 명애를 걸고 3cm 두께의 천장판자를 깔고 「다웰트」를 천 위에 진흙과 석탄(생석탄석을 불화시킨 것으로서 접착력이 있으므로 모래와 섞어서 쌓기물탈로도 많이 쓰임)에 쇠털여물을 섞어서 이긴 것을 30cm 두께로 깔아서 마감지워 놓았는데 이것은 겨울철 실내의 열 도파를 막아주는 방한천장이었으며 표면은 상당히 단단히 굳어 있었다.

지붕은 지붕동자를 세우고 처마도리와 증도리를 걸고 급경사지게 12mm 홍송판자를 5층으로 이어 놓았는데 판자의 폭은 120mm 정도이고 판자의 양가장에는 1cm폭의 물흐름 홈이 판자길이 끝까지 파져 있으며 각 판자층이 물이 새지 않도록 각각 어긋나게 포개져 있었다. 얼핏보면 허술하게 보이면서도 풍부한 목재 자원을 지혜롭게 “잘도 이용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양측 합각부분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붕은 흡사 우산을 받치고 있는 꼴이다.

동측 합각 부분에는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지붕 밑은 우리 한옥으로 말하자면 양쪽이 터져 있는 다락처럼 되어 있다고 하겠다.

실내 바닥은 방한 때문에 36mm 정도의 두꺼운 판자를 깔고 붉으스레한 유성 도료를 발라놓았는데 판자의 이음새도 전혀 안보이게 마치 「리노름」을 깔아 놓은 듯이 보였으며 마루 밑에는 동서측에 한개씩의

취 구멍처럼 생긴 환기통이 설치 되어 있었으며 유리창은 남과 북측 벽에 각각 2개씩 설치 되어 있는데 창외의 방한 공간의 폭이 180mm 정도되는 2중창틀로써 남측창은 북측창에 비해 2배가량 크게 설치 되어 있었다. 이 창들에는 각각 외부에 판자 덮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문틀이나 창틀의 벽체와의 접촉부에는 「울」(쇠털을 카펫 처럼 20mm 두께로 짜아 놓은 것으로서 건축공사 시공때는 외벽측 나무문틀이나 창틀 뒷면에 부착시켜서 들목의 수축 팽창과 방한에 대비하는 쇠털천)도 부착시켜 놓았다고 하며 방한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다. 출입문은 동측에 하나 있는데 바람막이문과 80cm 간격을 두고 2중문이며 외부문의 두께는 70mm나 됐으며 문의 상부의 유리는 내외부에 각각 유리를 끼워서 2중이며, 내측 문은 45mm 두께에 상부에는 한장유리로 끼어 있었다.

통나무벽 내외부는 바람막이와 방한을 위해서 통나무 사이를 삼나무 겹질로 마치 배 밑창처럼 완고하게 매꿔 놓았으며 벽면에는 방한용으로 「가오가나대」(옥수수대를 60mm 두께로 압축하여 8번선 줄에 엮어 놓은 것)를 스티로폼을 붙이듯 부착시켜서 마감 지워 있었다.(크기나 역할이 스티로폼과 비슷하나 좀 거칠게 된 제품으로서 원래는 양쪽면에 회죽을 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건물의 기초는 굴착을 하지 않고 맨 바닥에 址臺石처럼 흙벽돌 2B를 「불화석회물탈」로 20cm 높이로 쌓고 그 위에 井자형 원목 통나무집이 얹혀 있다. 방한효율은 「시멘트물탈」보다 「불화석회물탈」이 월등히 좋으며 부착력도 좋아서 중국이나 러시아인들은 추운 지방의 오랜 경험으로 벽돌조적은 거의 이 시공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정식 기초공사를 한다면 어 지방 結氷線이 1.8m이기 때문에 안전선인 2m 깊이가 필요한데 본격적인 건축이 아닐 때는 이것을 생략하고 내개 약식기초로 끝내고 만다.

만주에서 가장 추운 黑河나 하이탈지방에서는 2.5m 깊이의 기초사공을 하며 남만주지방에서는 1.2m 정도의 깊이인데 스티로폼같은 단열방한재도 없고 공간 쌓기도 극소수가 하고 있었으나 보습이 돼 있지 않은 실정이었기 때문에 전 만주를 9구역으로 구분한 방한시공 규정이 있어서 벽돌벽의 두께등의 일람표가 건축국에 비치 되어 있었는데 할빈지방의 벽돌벽 두께는 2B이고 흑하지방은 2.5B였다.

요즘 신문기사로 본다면 시베리아의 우리 민족의 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위도상으로 보아서 黑河線 이남으로 보이므로 기후면에서는 흑하나 할빈지역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술한 것이 참고될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집 내의부를 살펴보고 느낀 것은 대체적으로 부재가 컸으며 좀 거칠고 투박한 감이 없지않으나 완고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실내 중심부에는 다목적 일종의 벽로가 축조되어 있었다. 크기는 135cm×135cm×H90cm정도인데 이것으로 빵도 굽고 국을 끓이기도 하며 또 데우기만 하는 「단빠」를 이용한 장치도 되어있으며 「페치카」 역할도 하며 조리대로도 쓰이게 되어 있다. 연료는 유연탄을 쓰고 있었으며 굴뚝은 한쪽귀에서 직선으로 천장을 뚫고 밖으로 빠져나가 있었다.

개수대는 목재에 함석을 씌운 것으로서 벽로 곁에 놓여 있으며 화장실은 별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목조로서 계란형 구멍이 뚫린 汲取式으로 되어 있었다.

실내에는 작업대 겸 침대가 수개 있는데 겨울철에는 벽로의 사방에다 침대를 가까이 놓고 모두들 발을 열기가 많은 쪽으로 두고 잔다고 하며 어린이가 있을 때는 목재요람을 만들어서 그 안에 어린이를 넣고 눕지않게 벽로의 상면에 놓이게 천장에서 끈으로 달아매어 놓는다고 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초겨울이었는데 벽로 한쪽에는 함석재 한 말크기 통에 우유가 3/4가량 남아 있었다. 이통에는 간접으로 불기가 닿게 되어 있었으며 물이나 차대신 향시 마신다고 하며 한사람이 하루평균 한 되정도를 마신다고 했다.

40세가 넘어보이는 이집 주부는 벽로 위에 書見器를 달아매어 놓고 책을 읽으며 남편이 총으로 잡아 온 물오리털을 침구용과 공예용, 버릴것 등 3종류로 구분하여 뽑고 있었는데 그 효율적인 생활방식에 앞서가는 족속들이란 감이 들었으며 물오리 고기요리도 만들어서 빵오븐칸에 넣어 남편이 돌아올때까지 따끈 따끈하게 유지되도록 해놓고 있었다.

村長의 뜻으로 물오리 고기요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안주로 「보드카」주의 대접을 받았는데 물오리 고기요리가 이렇게 맛있는거냐고 칭찬이 자자했다. 신이난 촌장은 사람을 시켜서 자기집에서 火酒(아부상)와 「페로시끼」(고기와 야채볶은 것을 밀가루 튀김에 말아놓은 것)와 「카루파스」(소세지의 일종인데 크기가 엄지손가락만한 것으로서 돼지창자를 외피로 하고 肉과 脂를 양념과 섞어넣고 열연으로 훈제한 것)를 가져왔는데 이것들의 맛이 또한 일품이어서 주홍을 두구어 놓았다. 짬뽕과 같은 생활이면서도 일상 먹고 사는 이 세가지만의 음식의 질이나 맛으로도 혁명전의 러시아호족들의 생활수준을 엿볼수가 있었으며 우리 민족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옛날에는 대다수가 가난했기때문에 주·식 다같이 질이나 맛보다는 양, 즉, 배부르게 먹는

것만이 능사처럼 되어있었으며 양이 많고 굵직굵직하게 돼있는 음식으로 빨리 배를 채우기를 좋아하며 식사때는 말도 안하고 부지런히 먹기만 하는 습관이었는데 그내들은 우리와는 달리 수년 또는 수십년 묵은 술과 맛있는 음식을 여러가지 만들어서 대회를 나누며 긴시간 즐겁게 먹고 인생을 즐기는 식도락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촌장의 설명으로 짐작할 수가 있었다.

물론 공산화 이전의 露帝때의 상류층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옛날 「모스크바의 밤은 길어서」의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이 호화찬란한 문화와 생활풍습이 전수되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며 그때도 서민의 생활수준은 낮은편이었다고 하며 현재의 소련서민의 일상생활수준도 형편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해서 이미 잘 알고있는 터이다.

실내에 있는 의자수가 부족하여 작업대 겸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데 거기 놓여있는 아불카바에 탄천으로 큰 토끼모양이 붙어있기에 왜 이렇게 큰토끼모양을 붙여 놓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주부가 깔깔웃으면서 남편이 담배를 물고 술에 골아떨어져서 자다가 태워버렸는데 그냥 때우자니 보기 흉할것 같아서 탄천으로 토끼모양을 만들어서 때워놓았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모두들 자기네 집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을 것인지 비교하며 생각하고 있는 표정들이었으며 그중에는 머리를 몇번이고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다. 이집 밖에는 토굴 방공호같은 것이 있었는데 큰돌들을 뜨겁게 하여 담을 때는 「사우나」로 필란드 古式 옥실장치라고 했다. 영하15℃~35℃나 되는 겨울철을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더니 아너지는 집에서 지내나, 남자들은 방한복을 단단히 입고 수렵이나 별채를 해서 돈을 번다고 했으며 겨울생활은 야채, 곡물 등을 얼지 않게 지하실이나 별도의 토굴에 보관하며 육류의 공급은 영하 8~9℃의 겨울에 각호마다 큰 소한마리씩을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토박내어 앞서 설명한 합각부가 터져있는 다락에 올려놓으면 늦은 봄철까지 자연냉동 상태로 얼어있다는 것이며 꺼내다가 되면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톱으로 잘라다가 요리해먹는다고 했다.

### 3. 이국정취가 물씬풍기는 도시 할빈

여기서 인종근의사의 거사로 유명한 이땅 할빈을 자세히 소개하겠다. 나도 5~6개월 체류한 적이 있는데 중국땅에서는 특히하게 이국정취가 물씬풍기는 도시다.

첫 인상은 중국땅이란 것을 잊을정도로 구라파화 되어있다. 건물, 가로, 강변 할 것 없이 영화에서

이쪽의 생활수준은 일선민을 놀라우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창로 넘어와서는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도 수평당하기 전에는 상당히 보기도 귀했던 쪽을 고생기 육체노동 이라도 해야만 요구되리라해도 말할 수 있는 처지였다.

이들은 법치정, 국책과 농업, 수질보존, 기자촌, 문화수, 야생생, 러시아어, 제지업, 지하자원 등의 직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었다.

보는 구라파도시 그대로다. 그도 그럴 것이 노일전쟁전 대련근처의 여순에 大海軍基地를 설치하고 육군으로는 할빈, 심양, 장춘 등 주요도시를 장악하고 이것을 배경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無言으로 위협하며 부동항과 아시아 진출을 노렸던 공산혁명전의 露帝가 할빈을 제2의 모스크바로 만들 작정으로 마음먹고 건설한 도시라고 하며 모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위락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인지 변화기의 건물에는 거의가 지하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지하실들의 태반이 빠짐 댄스홀이거나 나체쇼장, 경음악식당 또는 이것 저것 잠빵식의 업체들로 꽂차있으며 금발미인들의 유곽도 있어서 소문을 듣고 호기심으로 할빈을 찾는 관광객들로 매일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도시를 빠르게 발전시키려면 술과 여자가 있어야 되며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금속발전책이라는 말은 군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었으며 또 실제로 奧地개발의 필요가 있을때는 일본의 요정 겸 유곽을 먼저 들여보내는 일본의 수법이였었는데 여기 할빈도 특무기관의 총본부도 있고하니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고 특히 白系러시아인 등의 외국인의 뒤에는 특무요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니까 군의 특수공작이 있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여름철에 할빈을 상징하는 송화강쪽에 올라서면 강의 중심부에 섬이 있고 짙은 녹색 숲속에 구라파식 양옥별장들이 각양각색으로 서있으며 나도 할빈에 처음 왔을때의 경험인데 이 멋진 별장들과 강물과 떠있는 백색 유람선과 숲의 녹색이 기가막히게 잘조화되어 곧 무슨 좋은일이라도 생길 것만 같은 낭만적인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야나나 다름까 근처의 벤취에 앉아있던 금발의 백색미인이 은어같은 몸매를 발랄하게 움직이며 다가온다.

틀림없이 소문에 들던 「스택끼걸」이로구나 하고 손을 올리니까 양어깨를 치켜올리며 웃음이 터질 것같은 표정으로 「아루끼마센?」 일본말로 걸지않으시겠어요? 하며 팔장을 끼라고 내민다. 고개를 약간 숙여주고 긴눈썹의 파란눈으로 대답을 간지럽게 재촉한다. 마음에 들거든 나꿔채어 즐겨라

하던 惡友의 말도있고 해서 팔장을 끼고 강둑을 거닐기 시작했다. 일본말을 자기내 고등학교에서 배웠다고 하였는데 발음은 좋지 않으나 보통대화에는 별지장이 없을정도로 구사했다. 10분정도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 두배의 팀을 주며 가라고하니까 아쉬운듯 눈을 예쁘게 흘기며 「아리가도」를 두번 연발하고 생긋웃으며 사라졌다. 이들은 대개가 러시아계고등학교 고학년생으로서 학비나 생활이 넉넉치못하니까 「아르바이트」로 소위 「스택끼걸」이라는 일종의 알뜰안내원 노릇을 하여 벌어들인다고 하며 몸은 팔지않는다고 들었는데 인생에는 항시 뒷구멍이 있는 법이니 알수 없는 일이기도하다. 또 이들과 日軍기관과는 어떤 관계인지는 알 필요도 없었다.

할빈을 동경하여 관광오는 일본인의 대다수가 금발미인과의 一夜甘夢을 목적으로 찾아오는데 소문만 듣고 송화강둑에서 「스택끼걸」과 만나서 그 청아한 미모와 알뜰하게 친절히 해주니까 됐구나하고 얼이빠지고 행여나 하는 기대감에서 고급포도주에 맛있는 음식을 일류호텔로 데리고가서 사먹이고 댄스홀에 가서 신이나게 춤을 추고 이제 다 익었겠지하고 기준액의 몇배의 팀을 주게되나, 「라스트탱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너무늦어서 부모님에게서 꾸지람들겠다고 인정사정없이 싸이 싸이 해버린다는 것이다. 잔뜩벼르다가 닭뿔던 개풀이 되고, 죽기전에 백인여자를 한번만이라도...하는 것이 평생소원인데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순간이니 죽지도 못할 지경이다.

울분을 참으려고하니 세포조직에 이상이 생겨서 암으로 변할 염려가 있게된다. 만부득이 파란눈 족속에의 복수도 겸하여 금발들만 모여사는 레스링도장에 택시를 잡아타고 찾아가서 한껏 맘을 빼버려야 억지암의 염려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주책없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으니 이정도로 해두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바야흐로 만주나 시베리아로 진출할 기회도 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어떤기회는 이 글이 다소나마 참고가 된다면 다행으로 여기겠다.

□정정합니다□

지난 5월호(통권253호)에 게재되었던 “공동사회를 위한 建築”(李廷根) 내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P.74 영문제목 : Community Architecture  
→Architecture and Community
- P.76 우측 첫째줄 사라지고→살아지고
- P.78 우측 33째줄 대폭발→빅뱅
- P.79 좌측 23째줄 대폭발→빅뱅
- P.81 우측 19, 26째줄 결연속→결연결속

“會員名簿” 電話番號를 訂正합니다.

- <서울지부>  
李鍾萬/녹야·현익·백 중합건축사사무소  
(사무실)586-7707
- 韓昌鎭/(주)한정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사무실)279-4415
- <경기지부>  
姜明求/금복건축사사무소 (사무실) (0345)82-0901

#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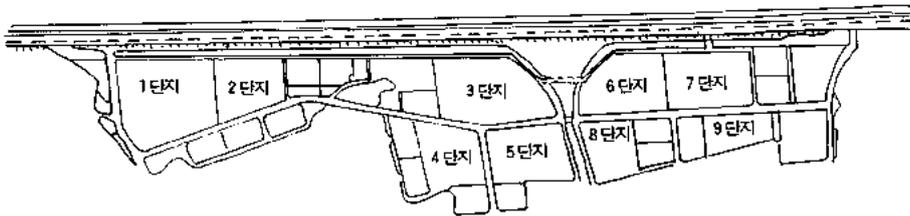
## 서울 가양지구 시영아파트 현상설계 경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5월 서민주거안정과 환경개선을 위해 실시한 강서구 가양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시영아파트 현상설계의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2개 지구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현상설계에서는 총 19개 건축사 사무소가 응모하여 2, 4, 5단지 A지구에서는 아키프랜건축사, 6, 8, 9단지의 설계권을 부여받았다.

한편 우수작에서는 서울진우시공건축사(A지구, 2단지설계권부여)과 정안건축사(B지구, 9단지설계권부여)가 선정되었다.

현상설계시 제시된 설계지침과 당선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공모대상

- A 지구(2, 4, 5단지)
  - 2단지-근로자복지주택  
대지면적/46,490㎡(14,065)  
건립규모/1,60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단위규모/전용면적 10, 12, 15평형
  - 4단지-영구임대주택  
대지면적/41,320㎡(12,500평형)  
건립규모/1,99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단위규모/전용면적 7, 9, 12평형
  - 5단지-영구임대주택  
대지면적/53,190㎡(16,090평형)  
건립규모/2,4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단위규모/전용면적 7, 9, 12평형
- B 지구(6, 8, 9단지)
  - 6단지-분양주택  
대지면적/50,580㎡(15,300평형)  
건립규모/1,45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단위규모/전용면적 12, 15, 18평형
  - 8단지-장기임대주택  
대지면적/31,660㎡(9,570평)  
건립규모/1,09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단위규모/전용면적 10, 12, 15평형
  - 5단지-장기 및 사원용 임대주택  
대지면적/55,240㎡(16,710평)  
건립규모/장기임대 910세대이상 및  
사원용임대 1,000세대이상과  
부대복리시설  
단위규모/전용면적 10, 12, 15평형

### ■ 입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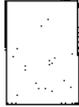
- 지형 : 서울시 도심으로부터 서측 10~12km 거리에 위치하며, 한강변의 미개발지로써 올림픽대교 건설로 형성된 폐천부지. 최고표고 8.5m, 최저표고 0.8m
- 수문 : 본지구와 접한 한강의 홍수위는 12.2m~12.6m(200년빈도). 지구내 2개의 수문 위치
- 지장물 : 가옥 및 부대시설 27동, 공장 및 부대시설 4동, 사무용건축물 5동이 분포

### ■ 단위세대

각 평형별 면적은 전용면적을 말하며 지정된 평수의 5% 범위내에서 초과계획이 가능하다. 각평형 공히 침실을 2개이상으로 하되 15평이상 평형의 거실은 침실로 겸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이 경우 침실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7평, 9평, 10평, 12평형 임대주택은 확장 및 병합을 고려해야 하며 다른 평형끼리의 병합도 가능하다.

### ■ 단지계획

2, 4, 5, 8, 9단지내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을 가능한 한 중앙에 배치하고 단지내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지내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관리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층수는 15층(옥탑제외)이하로 하고 세대수는 지정된 수의 3%이내 범위에서 초과 배치가 가능하다. 중복도형 및 타워형 배치계획은 가급적 지양한다.



(주)아키프랜종합건축사사무소案  
(대표 : 김우성)

C  
O  
M  
P  
E  
T  
I  
T  
I  
O  
N

■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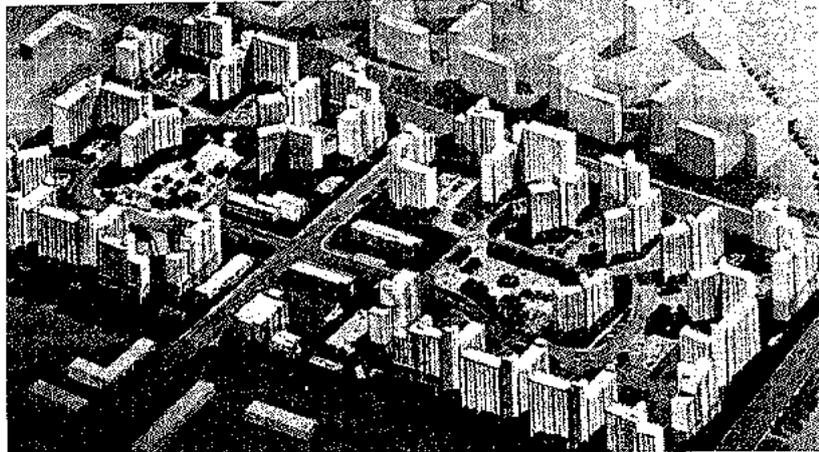
○2단지  
 건축면적/ 8,480㎡(2,565평)  
 연 면 적/102,225㎡(30,977평)  
 건 폐 율/18.2%  
 용 적 륜/203%  
 세 대 수/10평형-484호,  
 12평형-647호,  
 15평형-499호

○4단지  
 건축면적/ 8,300㎡(2,515평)  
 연 면 적/83,535㎡(25,314평)  
 건 폐 율/20.0%  
 용 적 륜/188%  
 세 대 수/ 7평형-1,492호,  
 9평형-300호,  
 12평형-235호

○5단지  
 건축면적/ 10,990㎡(3,330평)  
 연 면 적/113,130㎡(34,282평)  
 건 폐 율/20.7%  
 용 적 륜/194%  
 세 대 수/ 7평형-1,813호,  
 9평형-366호,  
 12평형-262호



2단지 투시도



4·5단지 투시도

1. 현황분석

가. 현황분석-2단지

- 올림픽대로의 통과 교통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거환경 침해
- 지구내 동-서 간선도로 및 장래건설될 지하철 3호선과의 연계 환승체계 구축
- 주변에 공원, 학교, 사회복지 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음.
- 공원 및 한강등과 접하여 일 조와 전망이 양호함

나. 현황분석-4,5단

- 올림픽대로와의 연계위한 통과도로(폭 40m), 공장, 상업용 지등이 인접하여 소음등 주거환경 침해우려
- 지역간 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하철 5호선과 인접하여 대중 교통 수단의 접근이 양호함

- 주변에 공원, 학교, 근린공공 시설, 상업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음.
- 생산녹지 및 지구내 공원, 탐 산, 한강등과 접하여 일조와 전망이 양호함.

2. 계획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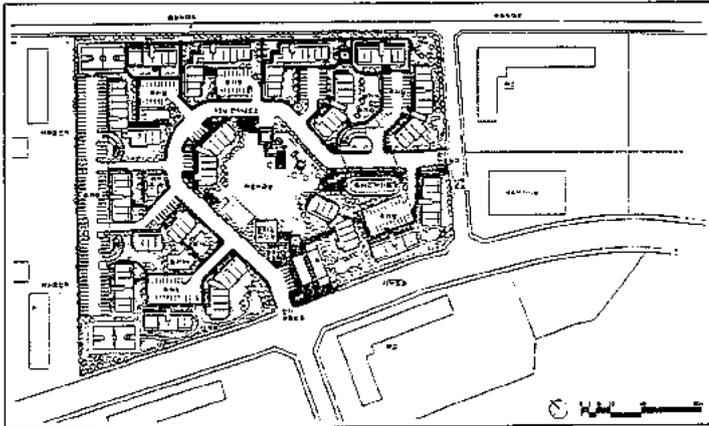
- 도시구조와 대지주변 현황을 고려한 변화있는 배치
- 오픈스페이스의 다양성 및 연속적인 체계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녹도체계 구성
- 작은 덩어리의 주거블럭 형성에 따른 영역성 추구

- 다양한 단위세대 평면형의 수직, 수평 혼합 조합에 따른 특 징있는 주거동 입면 창출
- 수요자의 장래의 변화에 대응 한 가변성 있는 단위 평면개발
- 시민 주거의 질적 향상 및 공동주거 생활의 거주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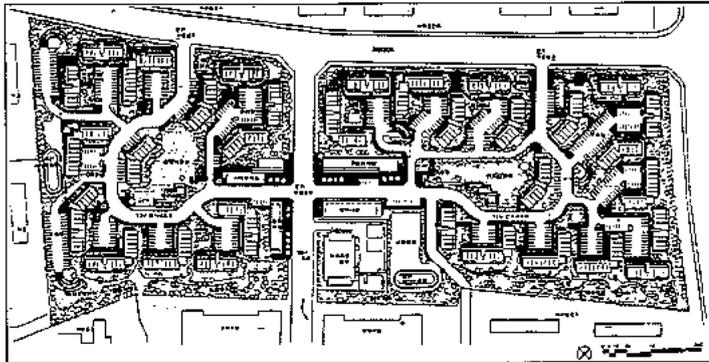
3. 단지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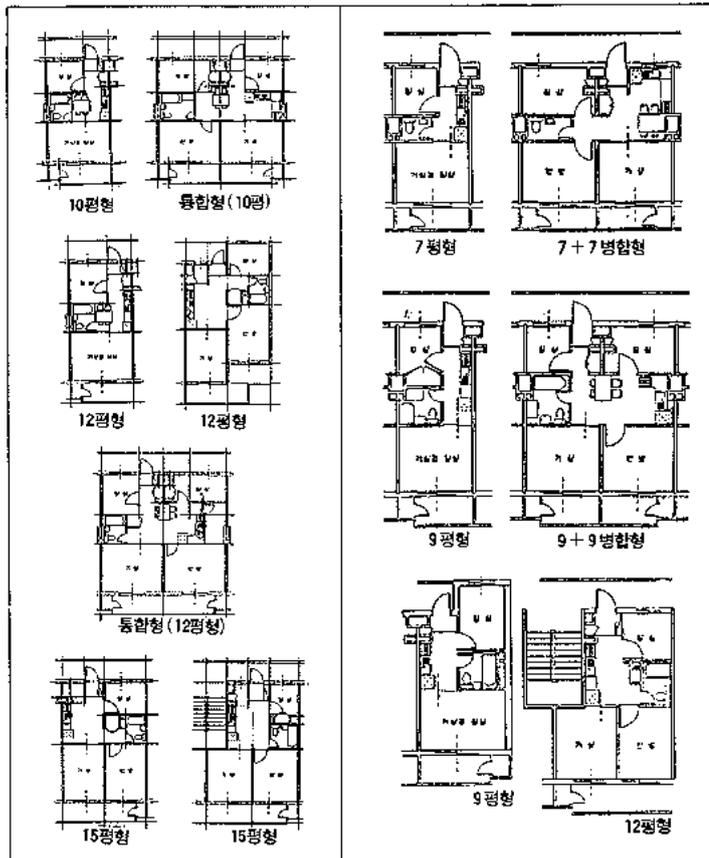
- 도시구조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도시인접부는 격자형(15층)내부는 교유의 개념에 의한 주거동(12~13층)배치, 어린이 공원 및 중심녹지는 단지 중앙부에 주거동은 단지 외곽부에 배치하는 중정형 토지활용 개념



2단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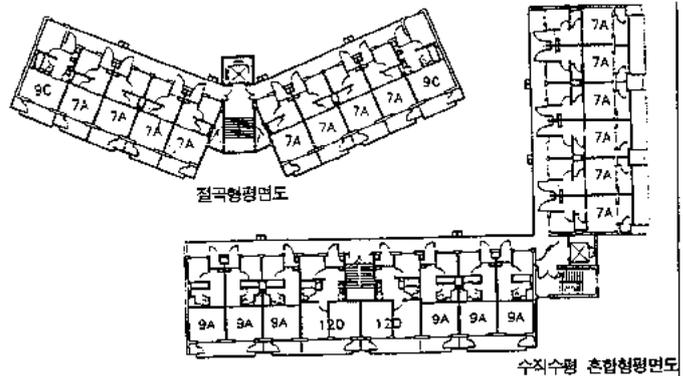
4·5단지 배치도



2단지

단위주호 평면도

4,5단지



질곡형 평면도

수직수평 혼합형 평면도

- 단지 출입구에 판매시설 및 사회 복지관을 설치하여 저소득자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며 이를 어린이공원으로 연결하여지는 단지중앙축 형성
- 중앙 어린이공원은 여러 연령층의 옥외활동에 적합하도록 다양성 부여
- 각 주거블럭 출입부분에 진입 포켓 설치 및 옥내외 전이공간으로서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이용 및 감시가 용이한 어린이놀이터 설치
- 단지 외곽부는 산책로로 연결되는 놀이공간, 운동공간, 휴게공간을 배치하고 주차장은 주거블럭 후면 영구음영지와 단지 외곽부에 배치

스페이스까지는 가로형 광장으로 강한 중심축을 형성하고 중앙 오픈스페이스에서 각 주거동으로는 규모와 성격이 다른 주거동별 오픈스페이스가 연결되어 외부공간의 위계적 체계구성

- 각 주거동의 외부 공간은 중앙 어린이공원을 향하여 시각적으로 오픈되어 있음으로써 경관 및 일조의 확보와 공간의 유기적 연속성을 도모
- 소형 아파트의 비좁은 내부공간을 수용할 복합기능의 준사적 공간으로서 휴게소 및 놀이터를 각 주동별로 배치

#### 4. 건축계획

##### 가. 아파트

###### 1) 계획의 특징

- 간선도로변의 시각적 개방감과 소음, 내부 오픈스페이스 공간의 연속된 흐름을 위해 단지 중앙부와 단지외곽 모서리부분은 12층으로 층수 변화 시도
- 채광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주거군 구성에 변화를 줄수 있는 매스 계획
- 간선도로변 : 역 T자형
- 내부 : 질곡형
- 평행별 수평, 수직 혼합배치에 의한 입면변화 추주로 저층부의 휴먼스케일감 형성 및 각 주거동 식별성 증대
- 소형 저립주거의 사용자 분석을 통한 단위주호 계획

###### 나. 동선계획

- 주보행자 동선은 단지 주출입구에서 중앙 오픈스페이스를 거쳐 단지 부출입구와 연결되는 차량으로부터 보호된 U자형 녹도 체계 확립(통학로와의 연결 고려)
- 중앙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각주거동에 방사형으로 연결되는 보행자 동선체계
- 자동차 중간선은 단지 중앙축을 통과하도록 하여 차량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단지내 도로율도 낮추도록 함.

###### 다. 오픈스페이스 계획

- 단지 주출입구에서 중앙 오픈



## 종합건축사사무소 우원건축案 (대표 : 문정일+서학종+임형재)

### 1. 계획의 개요

#### 가) 계획의 목표

1) 서민주거안정/환경개선 : 본 주거단지는 도시생활권 지역에 서민주거에 부응하는 양질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주변지역과 균형있는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 각 단지의 유기적인 질서로 주거문화의 발전적인 유형 제시 : 새롭게 시도되는 임대 주거환경에서 심리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단지내의 사회적 환경조성과 각 단지의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일체화된 체계로 형성한다.

3) 옥외환경/균질한 공간 : 입주자의 다양한 주생활환경에 따른 확립화의 탈피를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적당히 군집된 동과동 사이의 커뮤니티를 갖고 인간적인 활동공간으로서 균질한 성격을 부여한다.

#### 4) 계획지침

- 각 평형별 2개 이상 침실 확보
- 각 세대별 화장실겸욕실 확보
- 10평형 12평형 임대주택은 확장형 및 병합형 설계를 고려
- 공용면적의 최소화를 고려한 수직 수평동선이 되도록 하고 경비동 관리시설은 사후관리비를 감안 적정규모 및 배치 고려
- 쾌적한 옥외공간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녹지면적 증대
- 주차시설은 관리범위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
- 층수는 15층 이하로 계획

### 2. 단지계획

#### 가) 토지이용계획

##### 1) 고밀도 주거계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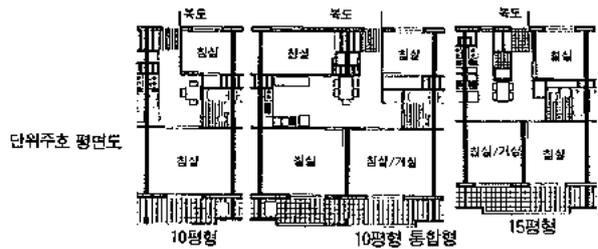
• 단지전체 주거밀도의 분석결과 중밀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유효면적이 협소하여 녹지를 작은 규모로 분산하기 보다는 근



6,8단지 루시도



9단지 루시도



린공원과 연계하여 주거 클러스터를 따른 녹도를 형성하여 연계된 오픈 스페이스를 할애  
2) 완충녹지  
• 단지의 프라이버시를 높여주고 도로의 소음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완충적 역할담당  
3) 공간의 위계성 추구

• 진입부에 상가등 공적영역을 구성하며 단지내외부 관계의 차단성을 극복하여 녹도를 따르는 공간의 위계성을 단계적으로 추구  
•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사이에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한다.  
4) 일조축의 극대화  
• 일조시간 길도록 배치축 형성

### ■ 설계개요

#### ○6단지

건축면적/ 7,255.69㎡(2,198.69평)  
연 면 적/99,853.51㎡(30,258.64평)  
건 폐 율/14.344%  
용 적 륜/182.946%  
세 대 수/12평형-432호,  
15평형-594호,  
18평형-43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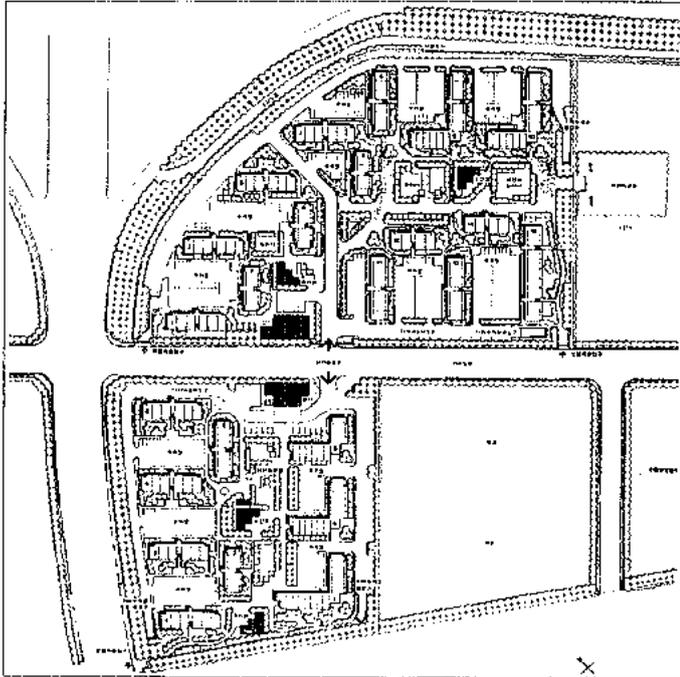
#### ○8단지

건축면적/ 4,729.75㎡(1,433.26평)  
연 면 적/62,585.44㎡(18,965.28평)  
건 폐 율/14.93%  
용 적 륜/181.65%  
세 대 수/10평형-480호,  
12평형-330호,  
15평형-3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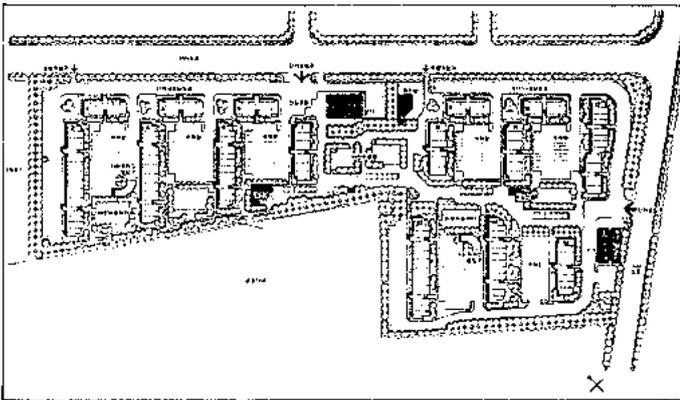
#### ○9단지

건축면적/ 8,304.21㎡(2,516.43평)  
연 면 적/111,826.56㎡(33,886.84평)  
건 폐 율/15.03%  
용 적 륜/183.967%  
세 대 수/10평형-573호,  
12평형-764호,  
15평형-57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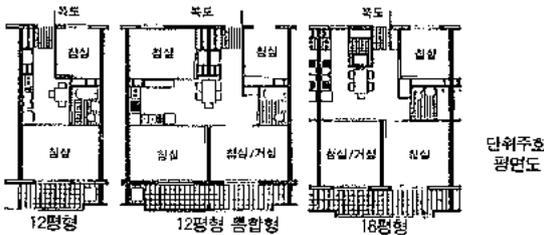
C  
O  
M  
P  
E  
T  
I  
T  
I  
O  
N



6·8단지 배치도



9단지 배치도



단위주호 평면도

**나) 교통계획**

- 1) 독립된 보행체계
  - 단지안에는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각 주거동이 앞마당과 뒷마당을 서로 다른 성격의 2가지 유형으로 구별한다.
- 2) 주차계획
  - 각 마을마다의 필요한 주차공

간을 각각의 영역에 확보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여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다.

**3) 산책로**

- 단지의외곽 및 완충녹지에 산책로를 두어 휴식공간 및 서비스 동선체계 확립

**4) 피로티**

- 1층 현관부분은 피로티로 처리하여 전후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동과 동을 연결하여 보행동선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유도

**다) 오픈스페이스 계획**

- 1) 녹지체계
  - 남동, 남서향의 주동배치로 내부녹지가 자연광을 충분히 받는 공간으로 구성하며, 각주동 사이에 이루어지는 내부녹지와 녹도의 오픈스페이스가 연속된 체계를 확보하여 단지전체가 녹지에 연결된 연속감, 개방감을 느끼도록 계획하였다.
- 2) 휴식공간/어린이놀이터
  - 단지전체의 적절한 위치에 휴식공간 및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을 균등하게 분포배치하여 어린이놀이터 공간은 각 세대의 거실이나 부엌의 창문을 통해 주부들이 어린이놀이터를 감독할 수 있게 해결함.
- 3) 개방성
  - 건물간의 폐쇄공간을 뚫고서 각 세대에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도로에 직교한 배치개념을 도입하여 단지의부와의 개방감을 더욱 변화있게 처리

**3. 건축계획**

**가) 계획개념**

- 조망/일조-남동, 남서의 균일한 조건확보
- 단순한 외관처리
- 보차분리에 의한 서비스 동선
- 명쾌한 색채 계획
- 마을단위 그룹의 인지성 확보
- 소형아파트의 고급화
- 고유면적의 최소화
- 1층 피로티 공간(주거동 진입부)

**나) 주동계획**

- 1) 마을구성 개념 도입
  - 각 마을이 되는 2~3동의 주

거군은 내부에 휴게공간인 안마당이 있고 내외부 공간의 차단성을 극복하여 1층 부분 현관을 피로티로하여 공간의 위계성을 시도하였다.

**2) 균질한 공간을 갖는 건물의 집합**

- 도시개발측면에서 획일적인 건물배치를 탈피하고 변화있는 양상을 보여 주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적당히 균질된 동과 동사이의 커뮤니티를 갖고 인간적인 활동공간으로써의 균질한 성격을 부여하였다.

**다) 단위주호계획**

- 1) 선택성 장래 변화 고려
  -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주거심리 요구와 소형아파트의 고급화에 적합한 유형을 개발하고 장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확장형, 병합형을 고려하여 개량에 따른 슬림화방지
  - 소형 서민주택에 개방성, 융통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칸막이 벽을 줄여 실용성있는 평면구성
- 2) 경제성
  - 가로, 세로 방향의 벽을 일치시켜 벽량의 감소로 인한 공사비 절감효과

**라)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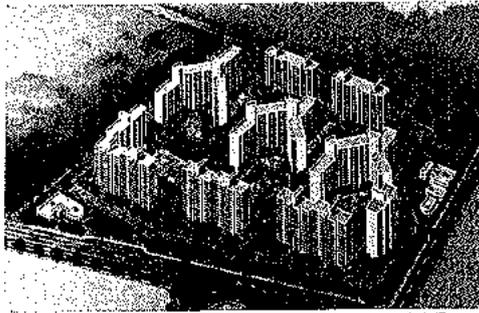
- 1) 형태변화
  - 획일화된 입면에 수직적 부분요소를 계획
  - 가 주거유형의 변화에 알맞은 모듈 도입으로 통일된 질서와 입면상 각각의 요소들의 조화를 유도함
- 2) 색채계획
  - 도시환경의 시각적 효과를 부여코자 자연을 기초로하여 변화추구
  -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관관계를 내향적 공간구조에 부응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디자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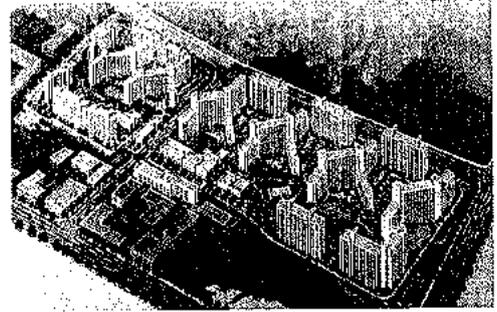
#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진우·시공案 (대표 : 한현오)

## ■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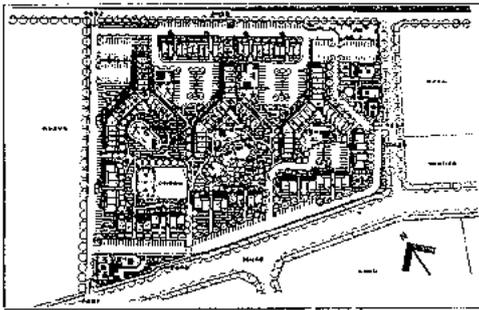
- 2단지  
건축면적/ 7,077.56㎡(2,140평)  
연 면 적/99,570.8㎡+2,633.4㎡  
건 폐 율/15%  
용 적 륜/214%  
세 대 수/10평형-473호,12평형-670호  
15평형-480호
- 4단지  
건축면적/5,817.8㎡(1,759.8평)  
연 면 적/8,385.3㎡+4,930.5㎡  
건 폐 율/14%  
용 적 륜/204%  
세 대 수/ 7평형-1,493호,9평형-300호  
12평형-240호
- 5단지  
건축면적/ 7,953.5㎡(2,405.9평)  
연 면 적/105,174.6㎡+15,519.2㎡  
건 폐 율/15%  
용 적 륜/198%  
세 대 수/ 7평형-1,811호,  
9평형-330호,12평형-3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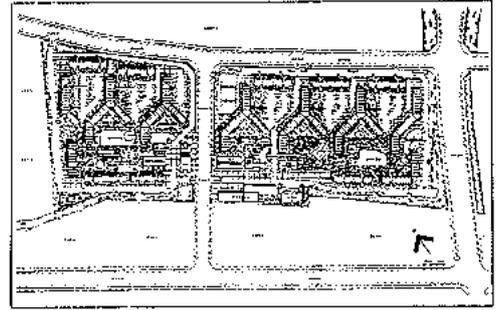
2단지 루시도



4·5단지 루시도



2단지 배치도



4·5단지 배치도

## 1. 계획개념

- 입지여건에 대응하여 특징있는 단지경관 창출
-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공간 및 옥외공간 구성
- 환경여건의 확실성 저감을 위한 주거용 적용
- 공공시설과 옥외공간의 평등한 이익편의 보장
- 이용권역에 따른 옥외시설 설치로 옥외활동의 다양성 제공

## 2. 현황분석

### 가) 문제점

- 올림픽 대로변에 면함으로써 소음,공해등 주거환경침해 우려
- 주변의 개발상황이 공장지대로 뒬에 따른 주거성 저하
- 공항에 가까운 지역으로 인한 주거성의 저하
- 매립지로 인한 시공상 어려움

### 나. 잠재력

- 한강변에 인접하므로 인한 오픈스페이스의 제공
- 계획적 개발로 인한 서부지역의 개발촉진 및 주거지 제공

- 생활여건시설(학교, 공원, 상업시설등)의 완비로 좋은 주거환경의 보장.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단지내 동선체계 수립
- 공간의 위계와 보행동선의 결절점 또는 축상에 시설물 및 공간확보
- 옥외공간은 주보행공간, 단위주동공간으로 구분하고 각 공간에 적합한 옥외시설 설치
- 배치의 향은 남동-남서향 범위로 하고 공간의 폐쇄성을 지양할 수 있는 I형, Y형, L형을 적절히 혼합배치
- 건물의 층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움 탈피

## 3. 단지계획

### 가. 토지이용 및 시설물배치 계획

- 단지중앙부는 옥외활동공간, 외곽부에 주거공간으로 배치
- 단지입구에는 판매시설등 편의시설 배치
- 단지중앙부에는 놀이터, 소운동장 배치

- 각 단위 주공간에는 휴게소 설치
- 단지외곽과 주거동 잉구음영 공간에 주차장 배치

## 나. 동선계획

- 자동차 주간선은 단지외곽에 루프형으로 배치하고, 서비스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연결
- 보행자 전용도로는 단지 중앙에 주간선을 설치하고, 주간선과 각 주동을 연결하는 보조간선 설치.

## 다. 오픈스페이스 계획

- 보행자전용도로에 놀이터설치
- 일조요건에 양호한 주동 안접부에 휴게소 설치
- 놀이공간을 이용계층에 따라 놀이시설공간과 운동공간으로 다양화

## 4. 건축계획

### 가. 아파트

- 1) 계획개념 및 특징
- 외곽지역의 소음, 연속된 공간의 흐름 및 내부의 위요된 공

- 간에 대응하는 주거형개발
- 외곽면 주거형: I형
- 내부 주거형: Y형, L형
- 공간의 연속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일부 주거동을 피로티화하여 일체화된 동선계획수립
- 고밀화된 주거단지 속에서도 단순함 속에 변화감을 줄 수 있도록 주거동의 층수변화 유도 (보행자 전용공간 부분-층수를 낮춰 계획)
- 주거동의 형태는 단순하게 하며, 단위세대의 균등한 거주성 확보를 위해 층세대 및 1층세대에 대한 계획적 배려
- 층세대: 일부 개구부 및 단열재 보강
- 1층세대: 세대별 개인정원 계획
- 병합형과 확장형을 고려하여 구조벽의 위치
- PD 및 AD 등의 실비계획 고려

### 나. 부대복리시설 계획

- 1) 영구임대지구(5단지): 아파트형 공장, 유치원
- 2) 근로자복지지구(2단지): 판매시설, 유치원, 노인정, 관리소



## 정안종합건축사사무소案 (대표 : 조병관)

### 1. 계획의 목적

- 최소 주거 면적 : 최대 Open Space
- 최대 인구 밀도 : 집약적 녹지 및 교통체계
- Open Space의 집약 : 효율적 교통체계
- 공사비에 대한 고려 : 구조 및 설비 System 개발 연구

### 가. 주거의 합리성

- 가변적 생활 양식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유형 개발

### 나. 주거의 경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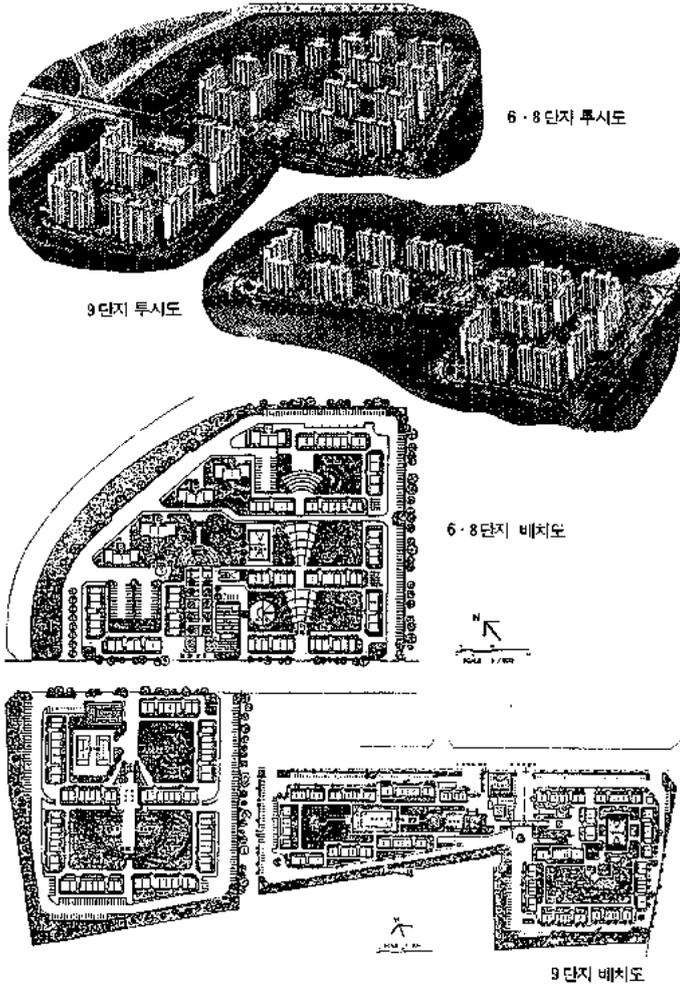
- 입주자의 기회균등 제공 : 병합형, 분리형
- 단위세대의 기본적 요구 충족 : 거실과 식당 분리
- 불리한 세대 보상 모색 : 최소의 공유면적 고려
- 토지이용의 효율성 개고 : 동선체계 정비 및 녹지 확보 주차장 격리

### 다. 주거의 쾌적성

- Open Space 최대 보장
- 효율적인 동선체계 확립
- 부대시설의 최대 확보
- 주차시설의 충족

### 라. 주거의 독자성

- 1) 획일적 단지 개념에서 탈피
  -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배치 : 중정형 배치
  - 주민의식을 위한 공유공간 확보 : 계단실 5층마다 1개실
  - 지하공간을 독서실, 에어로빅, 바둑실, 서예실, 탁아소 등 가타생활 학습 공간으로 활용
- 2) Open Space의 다양성 확보
  - 주출입 동선에 이미지 부여 : 진입광장, 보행광장에서 동선 배분 가능
  - Land Scaping 형식의 중정식 조경으로 환경의 공원화 조성과 산책로 및 놀이터의 공동 형성



### 설계개요

○6단지 건축면적/ 7,210㎡(2,184.85평) 연 면 적/108,157.5㎡(32,775평) 건 폐 율/14.24% 용 적 륜/213.8%	건 폐 율/14.8% 용 적 륜/220.0% 세 대 수/1,080호
○8단지 건축면적/ 4,686㎡(1,420평) 연 면 적/70,290㎡(21,300평)	○9단지 건축면적/8,222.5㎡(2,491.667평) 연 면 적/123,337.5㎡(37,375평) 건 폐 율/14.2% 용 적 륜/223.3% 세 대 수/1,920호

### 창출

- 보차의 철저한 분리로서 쾌적하며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
- 3) 커뮤니티의 위계성 제공
  - 진입 → 광장 → 중정 → 주거로 이어지는 단계적 조성으로 입주자간의 부의식적인 마주침속에서 친숙함을 느끼게 함.
  - Green 과 보행자간의 상호관계는 관리와 이용이 체계적 효율성을 부여한다.

### 2. 기본구상

#### 가. 오픈스페이스

- 커뮤니티에 대한 영역성을 형성하는 랜드마크로서 작용
- 변화되는 동선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단지차원의 이미지 부여
- Open Space에 따른 농선의 집약과 분산

#### 나. 주거 및 커뮤니티

- 1) 가족 규모의 변화에 따른 주거유형 개발
  - 분리형과 병합형 평면 조합
- 2) 사회적, 시각적 접촉기회 제공
  - 감찰 및 조망이 가능한 배치
  - 오픈스페이스를 통한 이웃의 식 형성
  - 어린이 고려한 놀이시설 확보

#### 다. 세대 배분 계획

세대를 배분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근거하여 주거유형을 조합함과 동시에 이웃을 구성할 수 있는 유사한 생활 양식과 가족 구성 규모가 비슷한 거주자들이 모일수 있도록 유도한다.

### 3. 계획의 사안

#### 가. 토지이용 계획

- 1) 로타리 진입시, 오픈된 시각을 위하여 타워형의 독립형 아파트의 개발
- 2) 엔크로우저 배치형태에 의한 중정공간 확보와 통과도로 배제에 의한 최대 확보
- 3) 도로측에 의한 자연적 배치 - 획일적 그라드 형식에서 탈피

#### 나. 교통계획

- 1) 안 밖 개념에 의한 보차 분리
- 2) 보행로(산책로) 주변을 어린이 공원으로 활용하여 주거공간 외 효율적 녹지공간 확보
- 3) 자전거 도로로 활용

#### 다. 오픈스페이스

- 1) 기존의 획일적 단지개념 탈피
- 2) 단절된 외부공간의 연결 - 피로티, 브릿지, 지하통로
- 3) 커뮤니티의 장 - 동선 체계의 확립(동선 분류 기능)
- 4) 단지 차원의 독자성 부여 - 상징성 있는 조형물 및 조경 환경

# 全文改正 建築法 (案)

## 제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위생·방화 등 안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용에 供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차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3.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가스, 급수, 配水, 排水, 환기, 난방, 냉방, 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나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계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우편물수취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를 말한다.
4.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당해 층고의 2분의 1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은 당해 신고의 3분의 2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거실"이라 함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間壁·셋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

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8.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9. "방화구조"라 함은 철강물탈바르기, 회반죽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0. "불연재료"라 함은 콘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불탈, 회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1.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도로"라 함은 보행 또는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4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기재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다만, 지형적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구조 및 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
- 나. 건축허가시 시장(서울특별시시장·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14.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

수선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5.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16.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이나 건축설비의 설치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17.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8.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9. "설계변경"이라 함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한 설계도서를 준공전에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도시계획구역·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지역 및 취약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②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의 규정은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 부지내에 있는 운전보조시설, 참선교, 플랫폼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시장·직할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군수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적용의 특례) ①시장·군수는 이 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이후 주민공람을 거쳐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공업용지사업의 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및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또는 시,군의 조례(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한다)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배제) ①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에 대하여는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를 축조할 때에는 민법 제2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층공사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거나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에 방수를 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에 수반되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건축위원회) ①건설부장관과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설계의 심사나 조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감독)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9조(건축등허가) ①도시계획구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구역이 아닌 곳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허가대상인 건축물의 규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격·구조의 건축물 또는 실비를 가진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허가의 수수료)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건축허가등의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등신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이 경우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축허가 및 신고시 복합만원처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제47조 제2항 및 제49조에 의한 공사용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 및 공사물설치신고
2.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3.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4.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4항에 의한 오수정화 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
5.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6.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
7.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 등록신청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9.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0.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공급신청

1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

13.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협의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15.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법시설의 설치

16.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제13조(설계변경 등)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및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설계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건축허가제한) ①건설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방 또는 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경우에는 목적·기간 대상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구역에서의 건축제한) ①시장 또는 군수는 재해가 있는 시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울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의 기간 그 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비상재해가 있는 구역내에 있어서는 재해로 인하여 파괴된 건축물의 수선이나 응급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물의 설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제17조(설계도서의 관리) ①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공사 기간동안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에 설계도서를 유지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의 감리) ①건축주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구분·대상·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감리자 당해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축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감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⑤건축주가 당해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소규모건축물에 시공자등록) ①건설업법 제4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지정하여 시공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건축물을 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가 시공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오차범위)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대지의 측량과 시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까지 이

를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착공신고)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3일전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당해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22조(중간검사)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및 절차등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단속할 수 없다.

제23조(건축물 사용승인등) ①건축주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에게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시키지 못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사용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허가 및 사용승인등의 민간기관위임등) ①시장·군수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따른 현장조사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등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사현장의 위해의 방지) ①건축공사의 시공자는 해당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낙하물, 건축물이나 공사용공작물의 도괴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9조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협의 및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대형건축물의 사전예고)건축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제9조 제1항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등에 따라 인접주민에게 건축설계를 예고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건축허가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8조(건축물대장)시장·군수는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건축물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건축설비, 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형태 및 용도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상태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유지관리상태의 조사에 따른 절차 및 방법등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용도변경)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제31조(건축감시원) ①시장·군수는 위반건축물의 방지를 위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건축허가업무에 종사하는 시·군의 공무원중 건축직 5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건축법령 위반사항에 관하여 시법경찰관리의 지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32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①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건축공사의 수급인,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증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진기·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법령에 의한 영업기타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주택에 한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標職를 해당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3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①시장 또는 군수는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3장 내지 제4장에 위반하게 됨으로써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청문)시장 또는 군수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주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보고 및 검사등) ①건설부장관이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은 건축물의 건축주·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건축설비 기타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심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검사나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승인 및 인가)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51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2.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3. 제40조, 제47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제37조(건축물의 멸실신고)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하는 경우 멸실하기 3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에 의한 멸실의 경우에는 멸실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제38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 및 높이 건축물의 치마·천정 및 바닥높이나 건축물의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건폐율)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이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건폐율”이라 한다)은 용도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0조(용적율)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용적율”이라 한다)은 용도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제41조(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내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시장·군수는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구역을 높이 제한 배제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동구역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광장·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⑤전용주거지역내에서의 건축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높이는 그 건축물로부터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44조(대지의 안전등) 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에서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습한 토지의 출수와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 할 때에는 성토·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지에서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하수구 또는 저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손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등)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할 때에는 당해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46조(대지안의 조경)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해방지 또는 조경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시장·군수는 용도지역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공지 또는 통로가 있어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 또는 차고의 대지가 인접하는 도로의 폭,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도로안의 건축제한)건축물을 짓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벽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와 관련된 법령에 의해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로서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이나 공용 또는 공공용의 건축물로서 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도로(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건축선의 지정) ①건축선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폭에 미달 되는 폭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평균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측에 유수지, 하천, 철도 등 선로부경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수지등이 있는 도로경계선에서 소요폭에 상당하는 평균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지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선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라 할지라도 건축선의 수직선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장 건축물의 구조

제53조(구조내력) ①건축물의 자중·적재하중·적설·풍압·도압·수압·지진 기타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건축물의 내화구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밀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방화벽)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 구획의 연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건설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간판·광고탑·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자붕위에 설치한 것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것은 외벽의 개구부로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구조에 의한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57조(건축재료의 품질) ①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으로 하되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 이어야 한다.

제58조(건축물의 내장) 5층 이상인 건축물, 의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옥내부분의 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지하층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지하층의 규모,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장 건축물의 설비

제60조(건축설비기준 등)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 구조의 제한, 거주자의 채광 및 환기면적, 천정 및 바닥의 높이, 바닥의 방습방법, 개구부, 계단 및 변소의 구조, 피뢰설치, 방화벽, 방화구획의 구조와 건축설비의 설치 및 건축물의 용도별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온돌의 구조등)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과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2조(승강기)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비상급수설비의 설치)** ①건축주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운동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쓰레기오물처리장, 묘지관련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에는 건축설비로서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비상급수설비에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4조(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장 지역 및 지구내의 건축물의 용도허용등

**제65조(용도지역 및 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허용등)** ①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이하 "지역 및 지구"라 한다)내의 건축물의 용도허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지역·지구지정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공원, 유원지의 경역 또는 그예정지내에 있어서는 공원 또는 유원지의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제66조(건축물의 대지가 구역·지역 또는 지구에 걸칠 때의 조치)** ①대지가 이 법에 규정하는 대지, 구조, 건축설비 또는 용도에 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방화지구를 제외한다)의 내외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와 과반이 속하는 구역·지역 또는 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관지역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가 구역·지역 또는 구역내외에 걸치는 경우 과반 이상의 대지에 대한 건축물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는 과반 이상이 속하는 해당 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배 이내의 대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개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방화지구의 구역에 걸친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구역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외에 있고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그 방화벽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도시설계의 수립 및 작성등)** ①도시미관증진 및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규정된 구역내에서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한 장기종합적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계획등을 구체화하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규모·용도·형태 등 활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할 때에는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제65조의 규정은 도시설계 내용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할 때에는 30일간의 일반의 공람과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할 때에는 당해도시설계에 도시계획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⑥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공고할 때에는 10년마다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당해 도시설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특별사업구역내에서 계획적 개발)** ①건설부장관은 주거환경의 향상과 토

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등에 대하여는 제41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전에 당해 주택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승인,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도심지등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설치하여 통행인 등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개공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39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0조(재해위험구역)** ①시장 또는 군수는 해일, 高潮, 出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 구역을 재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재해위험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장 보 칙

**제71조(가설건축물)** 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임시적 가설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예정도로 안에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5장의 규정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4장 내지 제8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옹벽 및 공작물 등예의 준용)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제73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절차)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1. 건축물이 시공중에 있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
2. 건축물이 사실상 완공된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미이행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1회 부과 및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하도록 고발조치 후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 조치

## 제10장 벌 칙

제74조(벌칙)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9조, 제52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내수선하는 건축주 및 시공자(건축주 및 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다.

제7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제1항 제4항 또는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도시계획구역외에서 제9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내수선한 건축주 및 시공자
3. 제22조, 제29조, 제1항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44조 제4항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

5. 제71조 제1항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한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
  6.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관계규정에 위반하게 실시한가
- 제76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21조, 제23조 제1항 또는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25조, 제45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
4.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77조(과태료) ①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다음의 과태료(위반사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많은 과태료에 과한다)를 과한다.

1. 건축물이 이 법에 의한 권패를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한 금액에 위반된 것을 곱한 금액 이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에 적용되지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②과태료를 처분받고도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30일마다 새로운 위법건축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위법건축물이 발생할 때마다 건축주등에 대하여 시정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하지 아니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 경우 1년에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17조 제2항 또는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상태의 결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한다)가 부과, 징수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의 방치 및 철거등을 위한 장비의 구입등 건축행위발진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8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사무에 관하여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감지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본 개정(안)의 주요 개정 방향 해석은 본지 36p 건축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회 참조.

# 6.25

## 40周年을 맞으며

올해로 6.25가 발발한지 40주년이다. 소련과 東區의 냉전체제는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계의 유례없는 이념의 실험장으로 남아있다. 그동안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서로의 노력을 소홀히 함이 없지않다. 그 결과 南北은 極端化의 길을 걸어왔고 DMZ는 우리의 정신 문화면에도 그어져 있다.

흔히 6.25동란을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점에서 우리는 최근의 東·西獨의 통일윤칙임과 달리 우리의 분단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베를린 상벽은 있었지만 전쟁으로 인한 같은 민족간의 뿌리깊은 적대감의 심화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양상은 달라진다.

우리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남북대화의 창구를 열고 통일을 위한 대화 노력을 기울였으나 좀처럼 성의를 보이지 않았던 북측은 작금의 세계정세의 변화에 초조해진 나머지 남북대화요, 군축이요 하면서 대화 재개를 제의하면서도 저들의 범죄행위를 自認하지 않고 糊塗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분간 범죄행위를 속일수는 있어도 똑같은 범죄를 再演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켜야 한다. 개방된 사회, 자유사회에서는 적어도 거짓이 통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남북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단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전제이다. 통일의 성취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이시점에서 음모설과 같은 초기의 전쟁기원설은 폐기되어야 하며 반공주의적 시각만 고집하는 것은 역사나 정신문화적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6.25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여러가지이지만 특히 한민족의 전통성화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南北은 같은 역사와 문화를 갖고 사고유형도 똑같았지만 6.25와 분단으로 인해

정반대의 체제가 고착됨에 따라 가치와 규범, 그리고 언어마저 달라져 이질감의 팽배는 심각하다.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도 조선의 유교사회적 전통성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상당수 보존했으나, 6.25로 인해 산산히 부서졌다. 따라서 우리에게 統一이란 말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統合이란 용어를 써야 마땅할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는 분단이전에 바이마르공화국시대라는 체제의 공유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 가능하였으며 統一이란 말이 합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6.25는 외래 이데올로기의 대립 또는 사상적 갈등이라고 얘기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소련과 동구공산권을 보면 마르크스주의는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이 물질이 아닌 인간적인 마르크스주의로 개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6.25때 대립했던 그 이념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싸우게 된다면 그것은 허상을 가지고 싸우는 셈이다. 이제까지의 공산주의는 스탈린식 독재체제를 통해 「인민공화국」이란 이름과는 달리 인민의 존재를 무시해 왔으나 소련의 고르바초프등장 이후 소련은 물론 동구권의 자유화물결은 가속화되어 스스로 체제의 잘못을 인정하며 인간의 존재를 중시하는 체제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지난 40년간의 1차 시험기를 지나서 체제의 2차 시험기로 들어간 것으로 본다. 北의 공산독재체제는 물론 우리의 자본주의도 자체개혁을 시도하지 않으면 2차 시험기에도 통일의 실험은 요원할 것이다. 동·서독의 경우 서독이 농독을 흡수할 만큼의 성숙한 체제의 조정어진 상태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6.25는 우리 민족에게 서로다른 체제의 실험을 격게되었다. 이제는 지난 40년간의 실험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웠는지 음미해보고 우리의 思考를 어떻게 유연하게 해야할 지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梁元錫  
대한건축사협회

# 5월 전국도서신고현황

##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狀態)

(단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분	1989년도	1990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1,807,568	1,883,823	76,255	4.22%
	부산지부	414,316	788,459	374,143	90.30%
	대구지부	330,883	608,965	278,082	84.04%
	광주지부	230,571	331,702	101,131	43.86%
	대전지부	409,826	476,483	66,657	16.26%
	경기지부	1,419,405	2,935,777	1,516,372	106.83%
	강원지부	298,699	356,998	58,299	19.52%
	충북지부	452,252	500,200	47,948	10.60%
감소지역	충남지부	294,490	380,651	86,161	29.26%
	인천지부	1,063,908	649,178	(434,730)	-40.11%
	전북지부	340,686	325,608	(15,078)	-4.43%
	전남지부	577,014	424,127	(152,887)	-26.50%
	경북지부	999,914	652,580	(347,334)	-34.74%
	경남지부	1,204,756	1,180,203	(24,553)	-2.04%
	제주지부	161,312	115,119	(46,193)	-28.64%
합계	10,025,600	11,609,873	1,584,273	15.80%	

##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增減狀態)

(단면적기준)

(단위/㎡)

종별	4월분	5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2,280,772	1,670,736	(610,036)	-26.75%
다세대주택	469,222	579,272	110,050	23.45%
연립주택	195,912	136,141	(59,771)	-30.51%
아파트	4,395,162	3,582,651	(812,511)	-18.49%
근린생활시설	2,798,534	2,357,851	(440,683)	-15.75%
종교시설	99,945	125,406	25,461	25.48%
의료시설	20,581	7,272	(13,309)	-64.67%
교육연구시설	142,896	397,392	254,496	178.10%
업무시설	757,984	838,062	80,078	10.56%
숙박시설	387,088	147,353	(239,735)	-61.93%
공장	1,023,446	1,036,190	12,744	1.25%
기타	602,975	731,547	128,572	21.32%
계	13,174,517	11,609,873	(1,564,644)	-11.83%

##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5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3,712	3,822	1,822,061	141	147	61,762	0	0	0	3,853	3,969	1,883,823
부산지부	1,499	1,737	705,832	347	403	50,507	49	53	32,120	1,895	2,193	788,459
대구지부	1,005	1,027	527,302	619	624	72,844	36	36	8,819	1,660	1,687	608,965
인천지부	919	1,071	608,092	55	68	37,064	20	22	4,022	994	1,161	649,178
광주지부	509	550	294,645	184	191	33,453	10	10	3,604	703	751	331,702
대전지부	435	479	430,302	62	63	17,950	122	125	28,231	619	667	476,483
경기지부	3,214	3,552	2,680,466	300	331	190,467	86	92	64,844	3,600	3,975	2,935,777
강원지부	666	754	282,686	191	223	70,708	14	16	3,604	871	993	356,998
충북지부	762	835	370,493	145	169	50,345	74	74	79,362	981	1,078	500,200
충남지부	608	625	322,562	140	140	54,183	30	30	3,906	778	795	380,651
전북지부	481	542	291,600	127	137	29,330	20	21	4,678	628	700	325,608
전남지부	679	770	376,691	187	208	31,336	46	46	16,100	912	1,024	424,127
경북지부	938	1,087	483,741	236	303	157,908	24	24	10,931	1,198	1,414	652,580
경남지부	1,807	2,037	1,040,609	396	450	128,451	31	32	11,143	2,234	2,519	1,180,203
제주지부	243	279	107,020	66	68	8,099	0	0	0	309	347	115,119
합계	17,477	19,167	10,344,102	3,196	3,525	994,407	562	5810	271,364	21,235	23,273	11,609,873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5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24,603	25,007	10,487,812	603	629	349,963	0	0	0	25,206	25,636	10,837,775
부산지부	6,194	7,467	4,715,222	1,481	1,662	272,674	258	272	195,055	7,933	9,401	5,182,951
대구지부	4,736	4,915	2,064,392	1,823	1,897	246,101	159	159	40,792	6,718	6,971	2,351,285
인천지부	3,884	4,506	2,673,159	268	368	122,107	109	140	46,405	4,261	5,014	2,841,671
광주지부	2,069	2,307	1,601,419	734	785	131,212	72	72	26,031	2,875	3,164	1,758,662
대전지부	2,200	2,375	1,910,223	266	267	71,127	393	397	97,210	2,859	3,039	2,078,560
경기지부	17,068	18,455	10,716,329	1,274	1,412	649,189	404	410	300,437	18,746	20,277	11,665,955
강원지부	2,583	3,032	1,712,840	646	743	215,513	86	92	20,536	3,315	3,867	1,948,889
충북지부	3,321	3,729	1,396,837	577	654	294,179	201	206	143,643	4,099	4,589	1,834,659
충남지부	2,430	2,562	1,560,392	540	546	219,591	117	117	24,440	3,087	3,225	1,804,423
전북지부	2,084	2,374	1,454,666	489	541	140,065	125	126	33,021	2,698	3,041	1,627,752
전남지부	2,719	3,152	1,754,962	839	957	223,733	98	98	39,632	3,656	4,207	2,018,327
경북지부	4,104	4,754	2,105,382	1,153	1,320	552,219	134	134	104,006	5,391	6,208	2,761,607
경남지부	6,993	7,937	4,400,083	1,802	2,015	516,675	179	182	126,934	8,974	10,134	5,043,692
제주지부	871	975	272,933	172	175	26,938	0	0	0	1,352	1,497	414,990
합 계	85,859	93,547	48,826,651	12,667	13,971	4,031,286	2,335	2,405	1,198,142	101,170	110,270	54,171,198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5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9,075	9,252	1,554,966	1,606	1,645	106,458	109	109	9,312	10,790	11,006	1,670,736
다 세 대 주 택	1,846	1,977	572,278	98	102	6,603	4	4	391	1,948	2,083	579,272
연 립 주 택	102	126	132,473	7	7	1,793	1	1	1,875	110	134	136,141
아 파 트	248	905	3,530,138	20	25	30,356	3	3	22,157	271	933	3,582,661
근린생활시설	4,357	4,504	2,123,668	626	647	129,366	261	261	104,817	5,244	5,412	2,357,851
종 교 시 설	110	117	61,721	75	83	37,634	9	11	26,051	194	211	125,406
의 료 시 설	4	4	1,211	5	5	5,685	2	2	376	11	11	7,272
교육연구시설	48	80	220,351	92	103	163,297	16	19	13,744	156	202	397,392
업 무 시 설	247	266	793,132	71	73	36,721	13	13	8,209	331	352	838,062
숙 박 시 설	100	103	132,899	22	22	9,089	14	14	5,365	136	139	147,353
공 장	544	861	702,495	238	388	299,069	43	55	34,626	825	1,304	1,036,190
기 타	796	972	518,770	336	425	168,336	87	89	44,441	1,219	1,486	731,547
합 계	17,477	19,167	10,344,102	3,196	3,525	994,407	562	581	271,364	21,235	23,273	11,609,873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5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46,013	46,690	8,233,326	6,164	6,335	446,043	282	282	21,503	52,459	53,307	8,700,872
다 세 대 주 택	8,711	9,216	2,441,584	569	576	42,326	26	26	1,912	9,306	9,818	2,485,822
연 립 주 택	431	615	732,548	13	15	5,671	4	4	2,156	448	634	740,375
아 파 트	1,049	4,210	16,451,259	62	86	171,256	12	13	35,886	1,123	4,309	16,658,401
근린생활시설	22,339	22,797	11,064,161	2,533	2,594	551,158	1,135	1,142	385,753	26,007	26,533	12,001,072
종 교 시 설	444	502	278,332	258	294	105,230	30	34	52,600	732	830	436,162
의 료 시 설	34	38	59,820	38	44	39,474	18	18	13,202	90	100	112,496
교육연구시설	167	257	563,709	263	318	447,918	129	138	55,006	559	713	1,066,633
업 무 시 설	952	999	2,915,111	254	263	211,920	48	48	38,567	1,254	1,310	3,165,598
숙 박 시 설	542	585	1,152,786	124	127	46,623	62	62	155,611	728	774	1,355,020
공 장	2,348	3,951	3,226,224	1,136	1,738	1,360,784	246	275	296,160	3,730	5,964	4,883,168
기 타	3,072	3,966	1,814,811	1,319	1,649	610,982	343	363	139,786	4,734	5,978	2,565,579
합 계	86,102	93,826	48,933,671	12,733	14,039	4,039,385	2,335	2,405	1,198,142	101,170	110,270	54,171,198

## 제6회 理事會 개최

本協會 '90 제6회 理事會가 宋基德 회장의 주재로 지난 19일 본협회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작품전시회 개최 개선(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협의 하였다.

이날 협의된 주요 안건의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주지부 직원 정원 조정  
- 8급직원 1명을 증원키로 함.
- ◆ 작품전시회 개최방식 개선

— 매년 가을철에 개최하던 작품 전시회를 전국건축사대회기간에 병행하는 한편 대회명칭을 “○년도 한국건축대전”으로 개칭하여 회원·신인·학생작품은 물론 최신 자재정보를 위한 우수건축자재전을 기획하여 종합적인 건축전으로 발전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은 관련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확정키로 함.

## 鄭淳虎 상근부회장 就任

鄭淳虎 신임상근부회장의 就任式이 지난 1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宋基德 회장을 비롯한 본협회 임직원과 건설부 유원규 도시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鄭淳虎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25년의 역사와 3천5백여 회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大협회 상근부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며 여러 회원들의 업적을 되새기며 오랜 공식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회장님을 보필하면서 협회의 명예를 提高하고, 건축사의 사회적지위를 높이며 권익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아끼지않고 바치고자 한다」고 취임소감을 피력하고 협회의 대정부 관계강화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 ◀ 新任 鄭淳虎 常勤副會長 주요 경력

- 1939년 2월 全南 和順 出生
- 行政考試 14회 합격
- 77년~80년 건설부 건설기획관, 토지구장
- 80년~83년 이리 국토관리청장
- 83년~84년 건설부 주택국장
- 85년~88년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 88년~90년 국립지리원장



新任 鄭淳虎 常勤 副會長 취임식

## 서울特別市支部 (會長 李永熙)

### 산업기지 견학

서울지부(회장 李永熙)는 지난 6월22일 한국가스공사 초청으로 회원 30여명이 평택 LNG

회장, 역대지부회장이 참석하여 현장소장(윤재덕)의 안내로 건축물설계시 난방설비부문에 대한 설명회와 LNG 실험등 시설물을 견학하였다.

이날 견학은 지부임원, 분소



서울지부 산업기지 견학



대전지부 건축디자인 캠프

大田直轄市支部(會長 康祐植)

제2차 건축디자인 캠프 개최

大田지부(회장 康祐植)는 지난 25일부터 7월 2일까지 8일간 복원대학에서 제2차 건축디자인 캠프를 개최하였다.

〈도심지 유아를 위한 놀이공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건축디자인 캠프에서는 대전지역 5개대학 건축과 3,4학년 학생 4명씩 모두 20명이 참여하여 7박 8일동안 숙식을 같이 하며 주어진 주제를 놓고 토론과 설계실무를

공동으로 언타하였으며 설계 분야에 뜻을 가진 학생들에게 실제 상황에서 공동으로 설계하는 연수의 기회를 줌으로써 건축실무와 교육을 긴밀하게 연계시켜 건축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대학간의 설계 프로그램의 교환과 발전의 기회를 가지며 이를 대전지역의 건축협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기위해 개최되고 있다.

慶尙南道支部(會長 金東準)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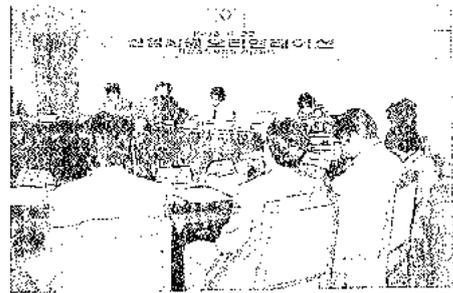
全南지부(회장 金東準)는 지난 22일 지부 회의실에서 신입회원 19명에 대하여 지부 근황 설명, 인화단결, 품위보전 및 대

사회적 역할제고, 창의적이고 상의있는 업무 수행으로 긍지창출등의 내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시행하였다.

慶南支部 직할분소 현판식

慶南지부(회장 金東準) 직할분소(창원시 중앙동 95-4 소재)의 현판식이 지부 임직원 및 관

내회원, 창원시 건축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거행되어 업무에 들어갔다.



경남지부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京畿道支部(會長 李一濶)

敬老小宴 개최

京畿지부(회장 李一濶)는 지난 20, 21일 양일간 수안고온천 및 충주호에서 만65세이상 회원

33명에 대한 敬老小宴행사를 개최하였다.

全羅南道支部(會長 金仁模)

敬老小宴 개최

全南지부(회장 金仁模)는 지난 5월 29일 도내 승주군 소재 공작산장에서 65세이상 원로회

원을 위한 敬老小宴을 개최하고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경남지부  
경로소연



원로회원 소연회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지부

경기지부  
경로소연

濟州道支部(會長 李世院)

건축조례집 발간

濟州지부(회장 李世院)는 관내 시군 건축조례 및 각종 행정지침을 모두 망라한 총 292페이지 4×6배판 건축조례집을 가제식으로 발간하여 회원 업무에 활용토록 배부하였다.

지난 5월 30일자로 발간된 건

축조례집은 소속회원외에도 관계 행정부서와 분회회를 비롯하여 전국 시도지부에 배부하였으며 제주지부에서는 앞으로 개정 또는 보완되는 사항은 모두 인쇄하여 기재된절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新入會員

NEWLY ADMITTED MEMBER



李鍾春(59年)  
경동공전 건축  
기암건축  
경북 울진 읍내 82-24  
82-1526



鄭秉泳(52年)  
제주실전 건축  
아신건축  
경남 양산 남부 473-5  
84-8686



鄭雲永(38年)  
한양대 건축공  
신세대건축(종합)  
서울 용산 한남 638-130  
795-2499



金榮勳(42年)  
한양대 건축  
스페셜건축  
서울 서초 서초 1578-4  
586-2865



河鎭洙(58年)  
서울대 건축  
송·수목(종합)  
서울 강남 논현 241-3  
542-4644



孟俊浩(59年)  
전국대 건축공  
아트피아건축  
서울 강동 성내 455-13  
483-9068, 9617



徐俠敎(58年)  
동의공전 건축  
한일·서진·미래(종합)  
경남 마산 중성 78-7  
48-4200~1



權寧球(56年)  
서울산업대 건축공  
진성·대전(종합)  
서울 관악 봉천 1595-4  
885-4620



宋璣浩(52年)  
부산공대 건축공  
신라건축  
경남 진해 어동 138-14  
44-7531



黃瑩浩(57年)  
전남대 건축공  
코아건축  
전남 목포 용당 960-211  
73-7494



崔鍾仁(53年)  
연세대 건축공  
태두건축  
서울 용산 이촌 302-79  
790-0144~5



許宰寧(59年)  
부산공전 건축  
미림·아성·영진(종합)  
울산 남구 달동 874-5  
74-2050



薛溶贊(56年)  
충남대 건축공  
칸건축  
대전 중구 대흥 210  
254-3119



沈載德(54年)  
연세대학원, MICHIGAN대  
태두건축  
서울 용산 이촌 302-79  
790-0144~5



權敬實(52年)  
창신공고 건축  
한울(종합)  
경남 창원 중앙 85-6  
81-3311, 89-8300



裴孝淑(58年)  
홍익대 건축, 서울대학원  
송·수목(종합)  
서울 강남 논현 241-3  
542-4644



南智圓(57年)  
부산대 건축, 同대학원  
유니온·옥미·맥(종합)  
부산 동래 거제 121-14  
866-7888



白昌福(61年)  
창신공고 건축  
한울(종합)  
경남 창원 중앙 85-6  
81-3311, 89-8300



林秉宣(53年)  
홍익고등전문학교  
신림건축  
서울 은평 녹번 155-17  
359-2621



金正訓(58年)  
조신대 건축공  
고려건축  
제주 이도 2동 1168-1  
55-5464



李丙旭(58年)  
창신공고 건축  
온누리건축  
경남 마산 산호 199-18  
41-9794



李孟龍(60年)  
부산대 건축  
피아건축  
서울 강남 청담 124-18  
543-3795



金燦佑(57年)  
한양대 건축공  
원모임건축  
서울 성동 구의 254-54  
447-2352~3